

제 1 장 청소년인권의 역사와 구성

1. 청소년인권의 역사

1) 인권을 위한 국제적 노력

현재 국제사회에서 인권의 중요한 기준으로 통용되는 ‘세계인권선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B규약), 그리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오랜 역사적 논쟁의 산물이다. 청소년은 인간의 한사람으로서 인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연령 때문에 가정과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서 인권을 가지게 된다.

국제사회에서 ‘청소년의 인권’만을 따로 규정한 규약이나 협약은 별도로 없고 청소년의 인권은 ‘아동의 권리’속에서 논의되어 왔다.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아동은 18세미만인데, 여기에는 사회통념적으로 생각하는 대부분의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나이 어린 아동과 비교적 성인에 가까운 청소년을 하나의 범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청소년의 권리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역사적 논쟁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전세계 아동의 마그나카르타”라고 불리워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 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은 1989년이었지만, 아동의 인권사상은 상당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아동의 인권사상은 근대 인권사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정태수, 1991, 26-28).

인권 사상은 멀리 그리이스의 소피스트 철학에서 그 맹아를 찾아볼 수 있지만, 근대적 의미의 인권사상은 전제 군주와 평민간의 역사적 투쟁의 산물이다. 영국에서 존왕의 왕권을 제한한 대헌장(Magna Charta, 1215), 찰스 1세의 폭정에 항거한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 1628), 그리고 명예 혁명기에 시민의 자유를 법제화한 권리장전(Bill of Right, 1689)은 인권보장의 기초가 되었다. 17세기 말엽 영국에서 일어난 자유·민권 사상은 록크와 루소 등에 의하여 그 이론적 기반이 확립되었고, 이것이 실정법인 권리로서 보장을 받게된 것은 미국의 독립선언(1776)과 프랑스 인권선언(1789)에 의해서이다. 이 두 선언문은 당시 자연법적 계약설에 바탕을 둔 18세기 계몽사상의 산물로 근대시민사회 건설과 세계 인권사상 발달의 주춧돌이 되었다).

시민의 인권이 확인·선언된 것은 18세기 후반이었지만, 당시에 아동과 청소년은

-
- 1) 미국의 독립선언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어떠한 양도도 할 수 없는 권리를 받았다. 그리고 그 중에는 생명·자유 및 행복추구가 들어 있다.는 것을 자명한 이치라고 믿는다”라고 선언하였고, 프랑스 인권선언은 제1조에서 “인간은 출생과 생존에 있어서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선언하였다. 이 두 선언은 자유, 평등, 국민주권을 기본원리로 하는 근대 민주주의적 인권사상의 전형적인 표현이다(정태수, 1991: 27).

일반적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인식되지는 않았다. 당시 시민은 남세의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성인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성인 여성조차 오랫동안 참정권을 가지지 못하였다. 참정권이 없는 아동과 청소년이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상은 계몽사상가인 루소에 의해서 전개되었다. 그는 당시 프랑스 사회가 ‘어린이’를 ‘어린 인간’으로 보지 않고 ‘작은 어른’ 또는 ‘어른의 축소판’으로 취급하고 인간성을 무시하며 형식적인 교육에 한데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인간으로서의 아동 고유의 가치와 인권을 주장하였다²⁾. 이러한 루소의 교육사상은 페스탈로찌, 프로벨 등 근대교육 사상가들을 통하여 더욱 발전되었고, 학습의 주체로서 아동의 인간성이 존중되었다.

이러한 인권사상의 발전에 힘입어 아동의 권리가 국제적 문서로 된 것은 1924년 국제연맹 총회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을 채택함으로써 공식화되었다³⁾. 이 선언은 전문과 5개조의 본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문에서 “모든 나라의 남녀와 인류가 아동에 대하여 최선의 것을 주어야 할 의무를 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종·국적 또는 신념에 관한 어떠한 사유에도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장할 것을 선언하고 또한 자기의 의무로서 수락한다”고 그 기본이념을 분명히 하였다. 선언의 대상을 일반 남녀로 하고, 아동에 대하여 최선의 것을 주는 것을 인류의 의무라고 인정하는 이 정신은 이후 ‘아동의 권리 선언’(1959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1989년)으로 계승된다.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이 획기적으로 증진될 수 있는 계기는 ‘세계인권선언’에서 찾을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유엔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활동 가운데 하나로써 1948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유엔헌장에 유엔의 목적은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신장시키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에 대한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줌으로써 인류가 이 기준을 성취하도록 하였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5: 5).

세계인권선언은 제2차세계대전으로 대표될 수 있는 기본인권의 광범하고도 가공할 침해에 대한 범지구적 대응과, 다른 하나는 유엔이 창설 당시부터 부여받은 희망과 권위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유엔의 발족과 함께 경제사회이사회는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1945년), 동 위원회는 발족 당시부터 ‘국제권리장전’ 작성에 착수하였다. 경제사회이사회가 이를 긴급 과제로 삼은 이유는 인권의 존중이 세계 평화유지의 기초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즉, 제2차 세계대전은 민주주의 국가 대 전체주의 국가의 싸움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 전체주의 국

2) 루소는 교육소설 ‘에밀’의 서문에서 “도대체 우리들은 어린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은 언제나 어린이 가운데에서 어른을 찾고 있으며 어른이 되기 전에 어린이가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역설했다.

3) 이 선언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지 얼마되지 않은 1924년에 ‘국제아동구호기금’(Save the Children Fund International)이 아동의 복지를 위한 5대원칙을 포함한 ‘제네바선언’으로 발표된 것을 같은 해 9월 26일 제5차 국제연맹 총회에서 추진된 것이다. 이에 앞서, 영국은 1922년에 ‘세계아동헌장’을 선언한 바 있다.

가는 국내적으로 독재정치를 실시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고, 대외적으로는 침략 전쟁을 감행하였다. 이러한 인권 침해와 침략행위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고 세계 각국의 경제적 사회적 협력과 기본적 인권을 존중·확보하는 것이 세계평화의 유지에 있어서 불가결한 요인이라고 절실히 인식되었다. 그러므로 인권의 존중이 세계평화 유지에 기초가 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하여 국제권리장전이 요구되었다. 이 작성과정에서 권리장전은 선언, 규약, 및 실시수단으로 나뉘게 되었는데 그중 ‘선언’부분이 1948년 12월 10일에 세계인권선언으로 채택되었다(정태수, 1991: 38-39).

‘아동의 권리 선언’은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신장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국제문서이다. 본디 유엔은 창설직후인 1946년부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헌장’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였지만 13년이 지난 1959년 11월 20일에 ‘아동의 권리 선언’을 채택하였다. 이처럼 아동의 권리선언이 늦어진 것은 세계인권선언과의 중복성문제, 그리고 같은 기간에 인권위원회가 ‘국제인권규약’의 초안을 작성하는 일에 전념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아동의 권리 선언은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의 원칙과 정신에 입각해서 작성되었지만, 많은 나라들은 세계인권선언과 별도로 ‘아동의 권리’만을 떼어서 단독으로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이기도 했다(정태수, 1991: 42-49).

1951년의 제7회 인권위원회의 의제로 상정된 ‘사회위원회의 안’이 처음 실질적으로 심의된 것은 1957년 제13회 인권의위원회에서이다. 세월이 흘러 국제적 여론은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규약은 아동이라는 특수한 집단의 이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어서 아동의 보호라는 점에서는 불충분하다는 것, 그리고 아동은 법의 주체가면서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동의 권리’를 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견해가 각국의 대표들에게 공유되었다.

당시에 논쟁점이 된 것은 이 문서를 ‘협약’으로 할 것인가, 단순히 ‘선언’으로 할 것인가라는 점이었다. 폴란드 등 일부 국가는 권리의 열거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을 의무화하기 위하여 조약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다른 나라들은 ‘협약’화는 각국의 법적·사회적 상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곤란하므로 ‘선언’에 그쳐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원회는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언으로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반적 원칙만 간결하게 선언할 것인지, 권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준수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할 지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기도 하였다. 심의과정에서 “법을 제정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고 아동의 성장을 가능케하는 기회와 편의를 법률로 부여해야 한다”는 것과, “가정이 없는 아동에 대한 사회와 공적 기관에 특별한 보호의무를 지워야 한다”는 것들을 주장하는 폴란드의 수정안은 모두 가결되어 인권위원회안에 수용되었다. 이것은 아동의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한 중요한 수정이었다.

이 선언은 전문과 10개조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네바 선언에 비교할 때 한층 상세하고 넓은 관점에서 그 내용을 확대·개선한 것이다. 기본 정신은 성장 도상에 있는 아동, 즉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인권의 보장과 실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와 배려를 해야 할 필요성을 선언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 선언은 아동을 단순한 구제나 보호의 대상으로서 뿐 아니라 인권이나 자유의 주체로서 파악하려고 하는 자세를 보인 점은 주목할만 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선언’은 아동의 인권선언 사상 획기적인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선언’이란 원래 의사를 밝힌다는 뜻에 불과하므로 세계인권선언이나 아동의 권리선언이 그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선언’ 내용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는 움직임이 대두되었다. 인권위원회는 당초 권리장전의 작성 과정에서 선언, 협약, 실시수단으로 3분하였는데, 이미 선포된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협약화하는 과정에서 권리의 여러 성질에 따라 두가지 규약으로 나뉘게 되었다. 그 하나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흔히 A규약이라 부른다), 다른 하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흔히 B규약이라 부른다)이다. 그리고 B규약에 대해서는 특별히 실시방법을 정한 ‘선택의정서’(C규약)가 작성되어서 세가지 모두 1966년 12월 16일 제21회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A규약은 전문과 5장 31조로 되어 있고, B규약은 전문과 6장 53조로 되어 있다. 이중 권리의 실재를 규정한 조항은 전자는 15조까지, 후자는 27조까지 이고, 나머지는 모두 협약을 실행하는데 관련된 규정이다. C규약은 전문과 14조로 되어 있는데 모두 B규약의 절차관계 규약이다. 이러한 국제인권규약은 세계인권선언에서 선언한 기본권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산물로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장차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만드는데 선구가 되었다.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선언’에서 ‘협약’으로 바꾼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오랫동안의 논쟁을 거쳐서 채택되었다. 국제인권규약이 발효된 1976년 유엔총회에서는 아동의 권리 선언 20주년인 1979년을 ‘국제아동의 해’로 결정하였다. 이 국제아동의 해는 아동의 인권 실현을 촉진할 목적으로 한 결정되었고, 아동의 권리협약의 채택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정태수, 1991: 54-65). 1978년 폴란드 정부는 유엔인권위원회에 아동의 권리선언을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협약’으로 만들 것을 제안하고, 협약 원안을 첨부한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이 결의안의 제출로 규약화 작업이 급속하게 진전되었고, 인권위원회는 수정안을 국제아동의 해에 협약으로 채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논의과정에서 많은 나라들은 아동의 권리선언을 단순히 협약으로 바꾸는 것에 의문을 표시하고 국제아동의 해를 계기로 진행중인 여러가지 아동문제에 대한 연구 성과를 기다려서 협약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서 인권위원회는 1979년부터 협약의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매년 인권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협약초안을 심의하였다. 심의과정에서 전반부(1980~1983년)에는 전문과 가족관계 조항을 심의하는데 중점이 주어졌는데, 가족제도를 둘러싼 각국의 다양한 제도나 관행을 조정하는 문제, 친권문제, 그리고 이민이나 난민문제 등이 논쟁거리가 되었다. 1984년부터 시작된 후반부 심의과정에서 아동관은 큰 변화가 생겼다. 아동을 권리향유의 주체로 파악하는 아동관에서 권리행사의 주체로 인식하는 아동관으로 변화되었다. 그 단적인 예가 아동의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관한 조항이고, 또한 매스미디어에 대한 아동의 접근에 관한 조항이다. 아울러, 1988년 2월에 완성된 초안은 아동의 권리를 둘러싼 국제 동

항에 입각해서 협약을 보다 세계적·현실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여론이 수렴되었다. 마침내 인권위원회의 초안은 경제사회이사회의 심의와, 총회 제3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전원 일치의 찬성으로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1990년 9월 2일부터 국제법으로서 발효되고 있다.

2) 인권을 위한 한국의 노력

우리나라에서 처음 아동의 권리를 선언한 것은 ‘제네바선언’(1924년)보다 한 해 앞선 1923년이였다. 당시 우리는 주권을 일본에게 빼앗긴 가운데에서도 민족의 새싹인 어린이를 사랑하고 씩씩하게 키우기 위하여 ‘어린이날’을 제정하였다. 바로 그해 5월 1일 어린이날 기념식장에서 ‘소년운동협회’가 소년운동선언에서 ‘아동의 권리 공약 3장’을 선포하였다⁴⁾. 그 내용은 어린이에게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하고, 14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무상 또는 유상 노동을 폐지하며, 어린이에게 배우고 놀 수 있는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도록 역설한 것이다. 어린이에 대한 인격적 대우, 연소노동의 금지, 적절한 교육과 여가시설의 제공등의 정신은 이후 ‘어린이헌장’(1975년)과 ‘청소년헌장’(1990년)으로 이어졌다. 어린이헌장은 제네바선언, 아동의 권리 공약 3장, 그리고 세계아동의 권리선언의 내용을 종합하여 전문과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고, 청소년헌장은 전문과 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어린이헌장과 청소년헌장은 선언적 의미가 강하고,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청소년헌장은 “국가는 청소년을 사랑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다. 배움터와 일터를 고루 갖추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 개개인을 각별히 보호하여 적응하고 자립하도록 이끈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가 이를 태만히 하더라도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 청소년헌장이 제정됐다고 해서 청소년의 권리가 증진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당위적 주장으로서 ‘선언’의 의미를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자 우리나라에서도 협약가입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외무부와 유엔아동기금한국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협약의 내용과 국내법의 상충여부를 검토하고 부처간 의견조정을 거쳐 1990년에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에 비준하였다. 한국 정부는 비준과정에서 3개조항을 유보하였다. 유보조항은 부모와의 면접교섭 유지권(9조 3항), 입양허가(21조 가항), 상소권보장(40조 2항 나호 5) 등인데, 이 조항은 국내법과 배치되기 때문이다⁵⁾.

국제조약은 헌법에 의해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할 때,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1996년 2월말 현재 187개국에 비준한 국제조약이기⁶⁾ 때문에 국내

4) 윤석중, “축사”, 국제연합아동기금 편,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전국대회, 1989, p. 8.

5) 한국의 협약 비준과정과 유보조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정태수의 [아동의 권리협약](1991)을 참고할 것.

6) 나머지 국가에서도 미국과 스위스는 비준의향을 보이면서 협약에 서명했고, 북아일랜드, 오만, 소말리아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연합이 아직 협약에 비준도 서명도 하지 않고 있다.

법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헌법은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 통상 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 조약, 국가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60조). 그런데, 외무부는 이 협약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면서 “국회동의 불요”라고 하였고, 이 협약은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만으로 비준되었지만,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헌법 제6조).

2. 청소년인권의 구성

1) 제네바선언의 구성

청소년인권의 구성과 내용은 역사적 산물이다. 청소년인권에 대한 최초의 국제적 문서인 ‘제네바선언’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까지를 간략히 살펴보면 권리의 내용이 풍부해지고 보다 확고해짐을 알 수 있다.

제네바선언의 본문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적 발달에 필요한 여러 수단을 가져야 한다(제1조); 굶주린 아동은 음식, 병을 앓고 있는 아동은 치료, 발달이 늦은 아동은 도움을 받아야 하고, 비행을 저지른 아동은 갱생되고, 고아와 부랑아는 주거를 얻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제2조); 아동은 위험한 때에는 먼저 구제를 받아야 한다(제3조); 아동은 생계를 세울 수 있는 지위에 놓이고, 또한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제4조); 아동은 그 재능을 인류 동포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받쳐야 한다는 자각 밑에서 육성되어야 한다(제5조).

제네바선언은 전문에서 “아동은 최선의 것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서보다도 불우한 조건 하에 있는 아동에게 특별한 보호를 해야 한다는 시혜적 성격이 농후했다(정태수, 1991: 34). 제네바선언에서 아동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했다기 보다는 소득, 보건, 교육, 주거, 고용 등에서 사회적 욕구가 있는 아동과,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아동을 적극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규정한 것이다.

2) 세계인권선언의 구성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의 권리를 규정한 것이므로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는 세계인권선언의 구성내용을 반영한다. 세계인권선언은 전문과 본문 30개조로 이루어졌다. 전문은 8개의 단락으로 이루어 지는데, 그중에 인간의 존엄과 권리가 세계의 자유정의 및 평화의 기초라는 것, 인권의 무시와 경멸이 야만 행위를 가져오고, 언론·신앙의 자유가 있고 공포와 결핍이 없는 세계가 사람들의 최고 소원이라는 것, 법의 지배로 인권을 보장한다는 것, 국민간의 우호관계의 발전, 기본적 인권·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남녀의 동권, 생활수준의 향상,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 세계인권선언의 지도·교육 및 점진적 조치 등이 선언되어 있다. 본문 30개 조항은 자유권적 기본권(제1조~제21조)과 사회권적 기본권(제22조~ 제30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유권적 기본권에는 자유 평등(제1조), 차별금지(제2조), 생명·자유·신체의 안전(제3조), 노예·고역의 금지(제4조), 고문·잔학한 처우·형벌의 금지(제5조), 사람으로 인정받을 권리(제6조), 법 앞의 평등(제7조), 기본권의 침해 구제(제8조), 인신의 보호(제9조), 공개 재판(제10조), 죄형 법정주의(제11조), 프라이버시 등의 보호(제12조), 이전·거주의 자유(제13조), 피난권(제14조), 국적을 가질 권리(제15조), 혼인·가정을 가질 권리(제16조), 재산 소유권(제17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제18조), 표현의 자유(제19조), 집회·결사의 자유(제20조), 참정권(제21조) 등이 있다. 사회권적 기본권에는 사회보장권(제22조), 노동권(제23조), 휴식·여가권(제24조), 생활보호·모자보호(제25조), 교육권(제26조), 문화생활권(제27조), 권리와자유를 실현하는 질서의 권리(제28조),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존중과 권리의 제한(제29조), 권리와 자유의 파괴 금지(제30조) 등이 있다.

세계인권선언을 국제협약의 수준으로 끌어올린 A규약과 B규약은 그 전문에서 유엔헌장의 기본원칙,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본문에서도 두 규약은 기본적인 내용에서 같다. 즉, 국민의 자결권을 규정하고(제1조), 규약에 정해진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야할 당사국의 일반적인 의무(제2조), 공공의 복지를 위한 관점에서 인권제한의 한계(제4조), 인간의 권리와 자유의 파괴 내지는 부당한 제한의 금지(제5조)를 규정한 부분은 같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두 규약은 각각 구체적인 권리내용을 열거하고 있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에서는 근로권(제7조), 노동조합의 결성·가입권(제8조),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제9조), 가정과 혼인의 보호 및 산모의 특별한 보호(제10조),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제11조), 심신의 건강을 누릴 권리(제12조), 문화적 활동에 관한 권리(제15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13조에서는 당사국은 모든 사람의 ‘교육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고, “교육이 인격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발달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이러한 교육의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초등교육의 무상·의무제, 중등·고등교육의 의무제 도입과 개방, 연구·장학 제도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에서는 “모든 사람에 대한 무상·초등의무 교육 원칙을 점진적으로 행하기 위한 세부 실천 계획을 2년내에 입안·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B규약)에서는 생명권·사형의 금지(제6조), 고문과 잔학한 형벌금지(제7조), 노예제와 강제노동의 금지(제9조), 형사 피고인에 대한 인도적 처우(제10조),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구금의 금지(제11조), 이동·거주·출국의 자유(제12조), 외국인 추방의 금지(제13조), 공정한 공개재판 청구권(제14조), 죄형 법정주의·형벌 불소급의 원칙(제15조),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제16조),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제17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제18조), 의견·

표현의 권리(제19조), 전쟁 등 적의있는 선동의 금지(제20조), 평화적 집회의 권리(제21조), 결사의 권리(제22조), 가정과 혼인을 보호받을 권리(제23조), 미성년자의 보호받을 권리, 성명과 국적을 가질 권리(제24조), 참정권(제25조), 법 앞의 평등(제26조), 소수 민족의 독자적 문화를 누릴 권리(제27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3)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구성

세계인권선언과 별도로 특별히 아동의 인권은 ‘아동의 권리선언’에 의해서 강조되었다. 이 선언의 전문은 모두 6개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유엔헌장의 기본원칙(제1단락), 세계인권선언의 정신 확인(제2단락),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한 아동의 법률상 특별 보호(제3단락), 특별보호는 국제적 선언과 국제기구의 규약으로 인정(제4단락), 아동에 대한 최선의 의무(제5단락), 모든 개인과 집단은 아동의 권리의 인식과 준수를 위한 노력(제6단락) 등을 강조하였다. 본문은 모든 아동의 차별금지(제1조), 아동의 최선의 이익(제2조), 성명과 국적을 가질 권리(제3조),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을 권리(제4조), 장애아동의 특별한 치료·교육·보호(제5조), 가정보호와 가정이 없는 아동의 특별보호(제6조), 교육을 받을 권리(제7조), 맨 먼저 보호와 구제를 받을 권리(제8조), 모든 형태와 학대와 연소고용의 금지(제9조), 모든 형태의 차별적 관행으로부터 보호(제10조) 등을 규정하였다. 아동의 권리 선언은 일부 국가가 주장한 것처럼 ‘조약’이 되지는 못하였지만, 제네바 선언에 비교할 때 아동의 권리가 매우 구체적으로 정리되고,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제정’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선언의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많은 사항들이 이후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실현되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전문과 54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은 3부로 나뉘어져 있다. 제1부는 협약의 실체인 아동의 권리 조항(제1조~제41조), 제2부는 유엔인권위원회와 당사국의 관계규정(제42조 ~ 제45조), 제3부는 협약가입 등 절차와 협약 개정절차에 관한 규정(제46조 ~ 제54조) 등이다.

일본 법정대학 교수인 永井憲一은 이 협약을 크게 1)총칙, 2)국제적 인격권과 시민적 자유, 3)아동으로서 양육되고, 보호될 권리와 사회경제적 및 문화적 권리, 4)절차규정으로 분류한 바 있다.

(1) 총칙

1. 권리보장의 원칙

- 아동의 정의(제1조)
- 차별의 금지(제2조)
- 아동의 최선의 이익(제3조)
- 부모의 지도의 존중(제5조)

2. 조약의 적용

- 가맹국의 실시 의무(제4조)

- 기존의 권리보장(제41조)

(2) 국제적 인격권과 시민적 자유

1. 국제적 인격권

- 생명의 존중, 생존과 발달을 확보할 권리(제6조)
-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 부모를 알고 양육받을 권리(제7조)
- 주체성의 보전(제8조)
- 부모로부터의 분리금지와 분리된 경우의 아동의 권리(제9조)
- 가족과의 재회를 위한 출입국의 자유(제10조)
- 국외불법이송 및 불반환의 금지(제11조)
- 의견표명권(제12조)

2. 정신적 자유

- 표현·정보의 자유(제13조)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제14조)
- 집회·결사의 자유(제15조)
- 프라이버시와 명예의 보호(제16조)
- 매스미디어에 대한 접근의 권리(제17조)

3. 인신의 자유

- 사형·고문 등의 금지,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의 적절한 취급(제37조)
- 아동의 사법절차에 관한 권리(제40조)

(3) 아동으로서 양육되고, 보호될 권리와 사회경제적 및 문화적 권리

1. 부모에 의한 양육과 국가의 원조

- 부모의 제1차적 양육책임과 이에 대한 국가의 원조(제18조)
- 부모에 의한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의 보호(제19조)
- 가족이 없는 아동의 양호와 원조(제20조)
- 입양(제21조)
- 난민인 아동의 보호와 원조(제22조)

2. 건강과 의료, 생존·발달과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 장애아의 권리(제23조)
- 건강과 의료에 대한 권리(제24조)
- 정기적인 의료진료를 받을 권리(제25조)
-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제26조)
- 생존·발달에 필요한 생활조건을 확보할 권리(제27조)

3. 교육과 문화에 관한 권리

- 교육에 관한 권리(제28조)
- 교육의 목적(제29조)
- 소수자·선주민의 아동의 언어등의 문화에 관한 권리(제30조)
- 휴식 및 여가, 놀이, 문화적·예술적 생활에의 참가(제31조)

4. 아동으로서 보호될 권리

- 경제적 착취와 유해노동으로부터의 보호(제32조)
- 마약, 향정신성 약품으로부터의 보호(제33조)
-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로부터의 보호(제34조)
- 아동의 유괴·매매·거래의 방지(제35조)
- 기타의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의 보호(제36조)
- 무력분쟁에 있어서의 아동의 보호(제38조)
- 희생당한 아동의 심신의 회복과 사회복귀(제39조)

(4) 절차 규정

- 조약의 홍보의무(제42조)
- 아동의 권리위원회의 설치(제43조)
- 가맹국의 보고의무(제44조)
- 위원회의 작업방법(제45조)
- 서명(제46조)
- 비준(제47조)
- 가입(제48조)
- 효력발생(제49조)
- 개정(제50조)
- 유보(제51조)
- 폐기(제52조)
- 기탁(제53조)
- 정문(제54조)

4) 이 연구에서 청소년인권의 구성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인권의 구성을 국제인권규약의 일반적인 분류인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 혹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로 대분류하기 보다는 청소년의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청소년은 인간이기 때문에 먼저 1) 생명과 생존에 관한 권리가 필요하고, 배우는 시기이기에 2) 학습 및 문화에 관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청소년이 시민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3) 시민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은 가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4) 양육과 보호에 관한 권리, 그리고 전통적으로 청소년에게 경시되어 온 5) 적법절차에 관한 권리로 분류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각 분야별 인권상황에 관심을 가지면서 청소년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청소년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 2 장 생명과 생존에 관한 권리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생명과 생존에 관한 권리는 건강과 의료, 생존·발달과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에서 찾을 수 있다. 구체적인 관련 조항을 보면, 생명의 존중, 생존과 발달을 확보할 권리(제6조), 장애아의 권리(제23조), 건강과 의료에 대한 권리(제24조), 정기적인 의료진료를 받을 권리(제25조),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제26조), 생존·발달에 필요한 생활조건을 확보할 권리(제27조) 등이 있다.

생명과 생존에 관한 권리의 수준은 이 분야에서 통용되고 있는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준인 신생아 및 5세이하 어린이의 사망율, 5세이하 어린이의 체중미달율, 산모의 사망율 등에서 우리나라 아동은 양호한 수준이다.

유니세프(국제연합아동기금)가 발표한 ‘국가발전백서’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의 아동과 산모의 사망율은 빈곤과 내전등으로 선진국의 1백~2백배에 이른다. 산모의 임신·출산 도중 사망률은 극심한 빈곤·내전을 겪고 있는 시에라리온이 무려 10만명당 1천8백명이고, 아프가니스탄(1천 7백명)·나이지리아(1천명) 등도 선진국(10명 안팎)의 1백~2백배에 이르는 높은 산모사망률을 기록했다. 반면 노르웨이는 6명, 호주는 9명이었으며 한국은 30명이었다. 어린이 1천명당 5세 이하 유아 사망자수는 니제르가 3백명 수준으로 가장 높고 에티오피아·앙골라·아프가니스탄이 2백명, 세네갈·수단·방글라데시·캄보디아·인도·아이티가 1백명, 필리핀·니카라과·브라질이 50명, 벨로루시·루마니아가 20명 수준이었다. 반면 독일은 7명, 한국은 9명이었다(유니세프, 1996: 52~53).

우리나라의 수준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가에 비교할 때는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국민총생산을 고려할 때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다. 각국의 국민총생산에 비추어본 기대치와 실제를 비교한 지표를 비교하면 한국은 5세이하 사망율이 기대치가 20인데 비교하여 실제는 9로 +11이고, 5학년에 진급하는 어린이의 비율은 기대치가 91%인데 실제는 96%로 +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이 기대치에 약간 미치지 못하고 일본은 기대치 보다 약간 나은 것과 비교된다(유니세프, 1996: 36~37).

그런데, 이러한 지표들은 매우 가난한 나라에서 어린이의 생명과 생존을 보장하려는 노력으로 개발된 것이므로, 한국 청소년의 생명과 생존의 수준을 측정하기에는 적합성이 떨어진다.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된 사회에서 발전을 감시하고 평가하려는 시도는 여러나라에서 시도되어 왔고, 최근 아동복지 관련 분야의 35개 전문가 집단이 예루살렘에 모여 ‘선진산업사회에서의 아동의 복지와 아동의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 회의에서는 국가 빈곤선 이하에서 살고 있는 어린이의 비율, 문자 해독률의 각단계별 청소년의 비율, 10대 출산율, 10대 흡연율, 청소년의 자살율, 상해사망율, 아버지가 없는 결손가정에서 성장한 어린이의 비율과 같은 지표들은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것으로 제안된 바 있다(유니세프, 1996: 43). 이 지표들도 거시적인 생활수준만 알려주고 미시적인 삶의 질을 나타내는데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삶의 질을 대변하는 세부적인

지표를 개발하여야겠지만, 다음 지표는 청소년의 생명과 생존권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될 것이다.

국가별 기대치와의 격차

나라	1인당GNP 달러	5세이하 사망율			5학년에 진급하는 비율		
		실제	기대치	차이	실제	기대치	차이
한국	8,220	9	20	+11	96	91	+5
미국	25,860	10	9	-1	94	97	-3
일본	34,630	6	6	0	100	99	+1

제6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고유의 생명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가능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야 한다.

2.1 태아의 생명권: 태아의 생명권이 크게 침해되고 있다.

태아의 성별이 감별되고 낙태가 만연되어서 인구의 성비불균형이 매우 심각하다. 1996년도에 서울시내 초등학교 입학생은 남자 34만6천4백74명, 여자 30만3천7백57명으로 남자가 12%나 많다. 보건복지부가 추정한 ‘출생성비 현황’에 따르면,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는 1983년 107명, 1985년 110명, 1989년 112명, 1994년 116명으로 성비불균형은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낸 ‘세계속의 한국’에 따르면, 출생 성비가 94년 현재 115.4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수치는 1991년의 미국(104.6), 독일(105.5), 일본(106.0) 등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결혼적령기(남 25-30세, 여 20-25세)의 인구성비는 여자를 1백으로 할 때 남자의 비율이 1994년 116에서 1999년 122, 2010년 129로 각각 추정되어서, 2010년에는 총각 129명중 29명(22%)이 신부감을 구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아는 여아이기 때문에 그 생명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원치않는 임신”이란 이유로 연간 약150만명 가량의 태아가 태어나지도 못하고 인공임신중절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인공임신중절의 경우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제한적인 경우만 허용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별 죄의식 없이 널리 행해지고 있다⁷⁾. 병의원에서 인공임신중

7) 유태환의 조사에 따르면 병의원에서 낙태수술을 받은 여성의 76.7%가 수술한 것을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23.3%만이 후회하거나 죄책감을 느낀다고 밝혀 상당수 여성들이

절 수술을 받은 여성중 산모의 건강이 위험하거나 기형아 출산우려 등과 같이 법적으로 허용된 낙태는 13.4%에 불과하고 나머지 86.6%는 원치않는 임신 등 법으로 허용되지 않은 경우이다.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인구정책을 ‘둘만 낳아 잘기르자’에서 ‘성비 바로잡기’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대한가족계획협회가 금년부터 남아선호로 인한 출생성비 불균형이 사회에 미치는 각종 부작용을 홍보하고, 태아성감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성감별을 하는 병원과 의사를 고발하는 전화신고창구를 주요도시에 신설, 운영하기로 한 것은 시의 적절했다. 보건복지부도 1996년 7월부터 태아 성감별을 하다 적발되면 즉각 의사면허를 취소키로,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개정하였다.

태아성감별과 낙태는 뿌리깊은 남아선호사상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의사의 처벌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개인의 사회화, 가정생활, 교육, 고용, 정치 등 사회생활전반에서 성별불평등을 근원적으로 해소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2.2 청소년자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

자살은 전인류의 10대 사인중의 하나이고 청소년 사망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⁸⁾. 덴마크자살연구소 등 유럽 연구단체들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스칸디나비아 3개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에서는 지난 10여년 동안 특히 남자 청소년들의 자살 시도가 현저하게 늘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의 경우 20세 이하 청소년의 5%가 자살을 꾀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덴마크에서는 지난 20년 사이 자살을 시도한 10대 청소년이 무려 500%나 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국민일보, 1996. 6. 12). 청소년(15~24살)의 자살율을 사망자 10만명중 청소년자살자수로 보면, 아일랜드 11명을 비롯, 핀란드 10명, 러시아 5명, 미국·덴마크 각 6명, 노르웨이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선진국의 남성 청소년 자살 비율은 여성의 4배나 된다.

서유럽 청소년들이 자살을 기도하는 것은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데 따른 스트레스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주된 요인이다. 점차 높아지는 실업률과 함께 이른바 직업의 수준과 직업만족도에 대한 불만이 남자 청소년들의 자살을 부추기고 있다. 전통적으로는 감성적인 소녀들의 자살 시도가 많았으나 이것이 뒤바뀐 것으로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직업을 통해 존재가치와 자아존중감을 가지려는 경향이

낙태에 대해 도덕적으로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낙태수술을 받은 여성중 미혼자의 비율은 18.4%이고, 임신상대자는 애인 76.7%, 동거남 18.3%, 기타 5%였다(일 간스포츠, 1996. 11. 1).

8) 한국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1995년 한해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7,709명으로 같은 해 범죄로 사망한 911명의 8.5배에 해당된다. 자살자의 수는 1994년도에 비해 3.4% 증가한 수치이며 청소년자살도 늘고있는 추세이다(국민일보, 1996. 11. 14).

더 강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 남녀 8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명존중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47.5%가 자살충동을 느꼈고, 특히 서울에 살고 있는 20대인 경우 66.2%나 돼 ‘위험수위’에 이른 것으로 평가됐다. 청소년의 자살충동이 높다는 것은 청소년의 행복도가 낮다는 다른 통계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다. 한국리서치가 전국의 11살 이상 60살 미만 남녀 5천명을 대상으로 연령별 행복도(1백점 만점)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15~17살 66.4점, 18~19살 70.4점, 20~24살 71.8점, 25~29살 75.6점, 40~44살 71.6점 순으로, 입시공부에 시달리는 중·고교 재학시절의 행복도는 가장 낮았다(한겨레신문, 1996. 5. 7).

청소년자살의 주된 요인은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불우한 가정환경, 불건전한 교우관계 등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망된다.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자살로 전이되지 않도록, 24시간 상담하는 ‘위기전화’가 개설되어야 하고, 자살미수자에 대한 정신건강훈련, 성적비판을 줄일 수 있는 대안학교, 그리고 폭넓은 생명존중운동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은 모방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살에 관한 이야기를 언론 등에서 미화보도하지 말아야 한다.

제23조

1. 당사국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아동이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며 적극적 사회참여가 조장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품위있는 생활을 누려야 함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며, 신청에 의하여 그리고 아동의 여건과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사정에 적합한 지원이, 활용가능한 자원의 범위내에서, 이를 받을 만한 아동과 그의 양육책임자에게 제공될 것을 장려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3. 장애아동의 특별한 곤란을 인식하며, 본조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지원은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재원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장애아동의 가능한 한 전면적인 사회동참과 문화적, 정신적 발전을 포함한 개인적 발전의 달성에 공헌하는 방법으로 그 아동이 교육, 훈련, 건강관리지원, 재활지원, 취업준비 및 오락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4. 당사국은 국제협력의 정신에 입각하여, 그리고 다음 분야에서의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경험을 확대하기 위하여, 재활, 교육 및 직업보도 방법에 관한 정보의 보급 및 이용을 포함하여, 예방의학분야 및 장애아동에 대한 의학적, 심리적, 기능적 처치분야에 있어서의 적절한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2.3 장애인의 삶의 질: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동등의 권리를 가지면서,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장애인은 정상인과 좀더 가깝게 살 수 있도록 국제적 노력을 펴고 있는데, 1993년 유엔총회에서는 ‘장애인의 기회 균등화에 관한 표준규칙’을 채택한 바 있다. 이 표준규칙은 시민의 이해증진, 의료보호, 재활, 지원 서비스, 접근성(물리적 환경에 대한 접근성,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접근성), 교육, 고용, 소득보장과 사회보장, 가족생활과 개체의 완전성, 문화, 여가와 스포츠, 종교, 정보와 연구, 정책결정과 기회·입법·경제정책, 사업의 조정, 장애인 단체, 전문인력의 훈련, 기본규칙에 규정된 장애인 정책의 실천 여부에 관한 감시와 평가, 기술적 경제적 협조, 국제협력 등 22개 사항에 관한 규칙을 국가의 임무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장애인의 생활권, 교육권, 근로권, 이동권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권리를 확보하는데 매우 인색하다. 관련 법령으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특수교육진흥법등이 있지만, 이것들은 장애인의 권리를 규정한 것이라기 보다는 국가나 자치단체등의 복지프로그램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장애청소년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애청소년은 생활터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특별히 중증장애인은 생활과 교육을 한공간에서 할 수 밖에 없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장애인시설이 설치되기 어렵다. 주민들은 “자녀교육상 좋지 않다”거나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지도자로 자처하는 정치인들은 이들의 표를 의식하여 데모대의 편을 드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서울에서만도 7개 장애아학교가 건물 신축이나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모두 인근 주민의 반발 때문에 몇년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장애청소년이 생활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은 가능한 주택가에 위치하거나 적어도 주거지역과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야 하므로 부지를 확보하고 원활히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⁹⁾.

주민도 장애아 껴안았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닥쳐 자칫 무산될 뻔 했던 장애인 특수학교 신축 공사가 학교쪽의 끈질긴 설득 끝에 오해를 풀 주민들의 협조로 3년 만에 마침내 착공을 보게 됐다.

9) 교육부는 특수학교 설립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장애아 학교의 설립이나 건축공사를 방해하는 사람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나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내용을 골자한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한겨레신문, 1996. 7. 8).

정신지체아 특수학교인 서울 광장동 다니엘학교(교장 이영창)는 22일 오전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에서 지역 주민들을 초청한 가운데 2천3백평 규모의 교사 신축공사 착공식을 한다.

이 학교는 건물이 지은 지 20년이 넘어 낡고 교실이 비좁은데다 교통 혼잡에 따른 사고위험까지 겹치자 지난 93년 가을 이전방침을 세웠다. 학교는 이에 따라 시변두리 10여곳을 상대로 옮길 터를 사들이려 했으나 가는 곳마다 주민 반대로 포기해야 했다.

학교는 12번째 시도 끝에 지난해 4월 내곡동 헌인마을에 터 6천여평을 겨우 사들였지만 주민 반발은 이곳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주민들은 특수학교가 들어서면 마을 인상이 나빠지고 교통이 혼잡해질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서초구청으로 물려가 항의농성을 벌이고 시교육청에 진정서를 내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이 학교 김경래(68) 이사장 등 학교 관계자들은 이 마을 80여가구 주민에게 일일히 편지를 보내 “한번만 학교를 찾아와 아이들과 자원봉사자들의 티없는 모습을 봐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학교운동장과 도서관, 병원 등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겠다고 끈질기게 설득을 계속했다.

이런 노력이 거둬들여 주민 몇몇이 학교를 찾았고, 이들의 설득으로 반발이 조금씩 누그러지면서, 마침내 지난달 14일 조남호 서초구청장의 중재 아래 김 이사장과 주민 대표가 학교 신축에 합의하는 악수를 하게 된 것이다.

이영창 교장은 “정신지체아들과 가까이서 함께 지내다 보면 자녀의 심성이 나빠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기가 가장 어려웠다”고 말하고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자녀들에게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더없이 좋은 교육이 된다고 설득했다”고 그간의 어려움을 회고했다.

주민 대표인 김진기 헌인마을 회장은 “처음 이전계획이 알려질 때만 해도 주민 대부분이 특수학교를 혐오시설로만 생각했지만 이제 그런 생각을 갖는 주민은 거의 없다”며 “건물이 완공돼 아이들이 즐겁게 뛰노는 모습을 어서 빨리 보고싶다”고 말했다.

이 학교는 지난 55년 미국인 다니엘에 의해 교아원으로 설립돼, 현재 정신장애아 5백여명이 초·중·고 교육과정을 배우는 특수교육시설이며 이중 1백여명은 교아로 학교에서 숙식을 하고 있다<한겨레신문 1996. 6. 22>.

장애청소년은 장애유형과 그 수준별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 1995년도부터 장애인특례 입학제도로 장애인이 대학을 취학할 수 있는 기회는 상당히 열려있지만, 정작 장애인이 다니는 특수학교에서는 대학입학에 필요한 교과목을 별로 가르치지 못하여 정원에 미달하고 있다. 모든 특수학교가 직업교육위주의 실업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7시간의 수업중 입시에 도움이 되는 보통교과 과정은 3시간밖에 없다¹⁰⁾. 결국 특수학교 학생들은 실업계 과정의 학교교육을 통해 취업에 나서든지,

10) 청각장애학교는 보통 교과와 전문교과 과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종 2백16단위중 최소 1백 4단위의 전문교과과정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학교 교육과는 별도의 입시공부를 해야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내신을 감안해 직업 교육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학진학을 원하는 장애학생들은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장애가 있는 청소년도 다양한 소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일반학교에서는 장애학생을 위한 특별과정을 만들고¹¹⁾,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¹²⁾, 특수학교도 일반계과정과 실업계과정으로 세분화하고, 특수학교의 설립을 장려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특례입학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장애인 학생이 강의실과 각종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캠퍼스에서 '이동의 자유'를

특례입학제도를 통해 대학생이 된 장애인들이 학교측에 '자유롭게 교육받을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연세대 장애인 학생들의 모임인 '게르니카'(회장 권순완·국문2·뇌성마비 2급) 회원들이 학교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 학교측과 학생들을 상대로 홍보작업을 했다. 이들이 만든 보고서는 굳이 큰 돈을 들이거나 학칙을 바꾸지 않아도 약간의 관심만 기울이면 장애인 학생들이 겪는 대부분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장애인 학생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이동의 자유'. 장애인 특례입학이라는 거창한 구호를 대외적으로 내걸었으나 내면적으로는 이들이 캠퍼스를 자유롭게

- 11) 어느 중학교 운동장에서 체육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보았다. 그런데 열심히 달리는 학생들과 약간 떨어진 곳에 다리가 불편한듯한 장애학생이 멍하니 앉아있었다. 그런 모습은 나에게 전혀 낯설지 않은 풍경이었다. 나도 장애인으로 학교다닐 때 겪은 일이기 때문이다.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을 보고 우리의 무관심·무대처에 슬프고 한심스러운 기분만 들 뿐이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의 체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두고 장애학생들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짜인 프로그램에 따라 체육실습을 받도록 해야 한다. 학교마다 배치하지는 못해도 여러 학교를 담당하는 전문교사를 두어 현재의 없느니만 못한 장애학생의 체육시간을 내설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중앙일보, 1995. 5. 10. 독자페이지).
- 12) '정보의 바다'라고 일컬어지는 인터넷의 장애관련 자료들을 정리한 '장애인을 위한 인터넷'이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백남중 재활부장에 의해서 출간되었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1장에는 인터넷 접속방법과 검색엔진, 시각장애인들이 웹브라우저인 링스를 사용하여 검색하는 방법, 2장에는 장애영역별 인터넷 사이트, 3장에는 장애 주제별 인터넷 사이트를 수록하고 있으며 4장에는 장애에 관련된 리스트서브와 유즈넷 사이트를 정리하여 총 2백65개의 사이트를 실었다. 또한 부록으로 시각장애인의 인터넷 접속에 관한 설명을 첨가하여 인터넷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각장애인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장애인복지신문, 1996. 6. 7).

돌아다닐 최소한의 자유도 보장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회원 김형수씨(22·국문2·뇌성마비2)는 “승강기 없는 고층 강의실 출입은 일반 학생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고 차량이 통행하는 백양로에는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들은 학교측에 고층강의실을 피할 수 있도록 수강신청 우선권과 백양로에 차도와 인도를 구별할 수 있는 점자블록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도서관에서 장애인 학생들에 한해 대리대출을 허용하고 손이 불편하거나 앞을 볼 수 없는 장애인에게는 시험시간을 연장해 줄 것도 요구조건에 포함시켰다. 회장 권씨는 “중앙도서관 외부에는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지만 내부로 통하는 출입구는 휠체어통행이 불가능하다”며 학교측의 전시행정적인 장애인시설을 꼬집었다(국민일보, 1996. 5. 23).

제24조

1. 당사국은 도달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건강관리지원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유아와 아동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
 - 나. 기초건강관리의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관리의 제공을 보장하는 조치,
 - 다. 환경오염의 위험과 손해를 감안하면서, 기초건강관리 체계 내에서 무엇보다도 용이하게 이용가능한 기술의 적용과 충분한 영양식 및 깨끗한 음료수의 제공 등을 통하여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하기 위한 조치,
 - 라. 산모를 위하여 출산 전후의 적절한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조치,
 - 마. 모든 사회구성원, 특히 부모와 아동은 아동의 건강과 영양, 모유 수유의 이익, 위생 및 환경정화 그리고 사고예방에 관한 기초지식의 활용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받고, 교육을 받으며, 지원을 받을 것을 확보하는 조치,
 - 바. 예방적 건강관리, 부모를 위한 지도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과 편의를 발전시키는 조치
3. 당사국은 아동의 건강을 해치는 전통관습을 폐지하기 위하여 모든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본 조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제25조 당사국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관리, 보호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관계당국에 의하여 양육지정 조치된 아동이, 제공되는 치료 및 양육지정과 관련된 여타 모든 사정을 정기적으로 심사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4 전장권: 책걸상이 맞지 않아 학생의 허리가 휘고 있다.

상당수 중고등학생은 책걸상 높이가 맞지 않아서 허리통증에 시달리고 있다. 대구 파티마병원이 최근 대구 시내 고교 3년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학생의 67.9%, 여학생의 78.8%가 요통을 경험했고, 이중 80% 이상이 요통으로 인해 공부에 지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¹³⁾. 이러한 수치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 학생의 10~50%보다 훨씬 높다. 몸에 맞지 않는 책걸상문제는 학생과 교사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제기돼 왔고 전문가집단에 의해서 실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연세대 재활의학교실도 1995년 서울 강남지역 여고 1학년생을 대상으로 척추방사선검사를 한 결과 등이 구부정한 학생이 전체의 52%이고 12.4%의 학생은 당장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상태였다. 고교생들이 요통을 앓는 원인으로 불편한 책걸상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장시간 앉아서 공부함으로써 요추에 가해지는 과중한 부담, 운동시간 부족으로 요추의 기능이 저하된 탓이다.

한국공업규격(KS)용 고교생 책상의 평균 높이는 72.5센티, 의자는 43.2센티 정도인데, 일선고교에서 사용중인 책상은 65~69센티, 의자는 44~46센티로 규격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책걸상의 높이 균형도 무시되고 있다. 교육부가 매년 교체하는 책·걸상의 수는 초중고교를 합쳐 40~80만조로 전체 8백여만조의 고작 5~10%에 불과하여서, 10년이상 걸쳐 교체하는 책·걸상이 학생들 몸에 맞지 않는다.

책·걸상을 학생들의 체격에 맞는 것으로 하루빨리 교체하고¹⁴⁾ 학교에 사물함을 설치해 무거운 책가방으로부터 아이들을 해방시키는 것도 시급히 해야 할 일이다. 아울러, 허리를 편안하게 하는 자세교육, 몸풀기 운동 및 허리강화운동, 책걸상 개선과 등받침 활용 등을 학교교육에서 다루어야 한다.

2.5 만성질환자의 생존권: 만성정신질환자의 생존권이 방치되어 있다.

현대사회에서 적절히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중 만성정신질환자의 생존권은 거의 방치되어 있다. 정신진환의 경우 치료가 쉽지 않고 재발되는 경우가 많은데도 현재 대부분의 만성정신질환자는 가정에 방치되거나 폐쇄병동 혹은 정신요양시설에 유치되어 있다.

13) 중앙일보 취재진이 1996년 5월에 서울S고교 3학년 남녀 각 1개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책·걸상이 몸에 맞지 않아 통증을 느낀다”는 학생이 전체 95명의 88.4%인 84명이나 됐다. 여학생은 더 심해 42명 가운데 41명이 허리와 목·허벅지등에 만성적인 신경통을 호소했다. 항상 허리를 굽히고 앉아야 하는게 원인이라는 것이다(중앙일보, 1996. 5. 28).

14) 한 시민은 학생의 체격에 맞지 않는 책걸상을 바꾸기 위해서, 교육당국은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즉, 고등학교의 낮은 책걸상을 골라서 중학교로 보내고 중학교의 것은 초등학교로 보낸다. 그것을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사용하도록 하면 큰 예산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동아일보, 1996. 6. 8. 독자편지).

만성정신질환자가 살고 있는 ‘정신요양원’은 인권 사각지대로 자주 거론되고 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은 환자를 폐쇄된 공간에 수용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건강진단’이 필수적인데도 대부분의 환자가 처음 들어올 때 건강진단을 하지 않고 입원한다. 보건복지부가 1996년 10월 국회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정부가 지원하는 전국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28곳에 대해 지도·점검을 한 결과 많은 요양시설들의 위생관리가 불량했고, 분기별로 1회이상 열게되어 있는 인권옹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환자들의 인권도 제대로 옹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제인권보, 1996. 10. 15).

현재 전국적으로 12만명쯤 추산되는 만성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사회응용훈련에 가장 좋은 형태로 꼽히는 그룹홈시범 모델은 두곳에 불과하다. 가정집에서 생활하며 치료하는 치료프로그램인 그룹홈(공동거주)은 환자와 그 가족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¹⁵⁾.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한 그룹홈은 병원 치료보다 경제적이고, 환자에게 자유가 있어 환자 인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상적인 치료프로그램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청소년 중에서 만성질환자는 얼마나 되고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일제 조사해서 이들도 생존권을 누릴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2.6 학교안전사고: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이 부실하다.

학교 교육중 사고를 당하는 학생이 많다. 교육부와 15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 따르면 1995년에 유치원·초·중·고등학교내에서 8천3백67건의 사고가 발생되어서 하루 평균 23건, 학생 1만명당 9.7명이 사고를 당한 셈이다. 사고내용은 부상이 대부분(99.5%)이었으나 사망(25건), 장애(18건)에 이른 경우도 있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 39%, 초등학교생 30.9%, 고교생 30%이다¹⁶⁾.

학생들은 아직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데다 학급과 교사당 학생수가 많아 사고가

15) 한 그룹홈의 하루 일과는 오전 6-7시 기상, 8시 아침식사, 오후 6시 식사, 오후 7시30분 치료약 복용, 밤 9-11시 취침 등으로 짜여있다. 낮 동안은 사회복지관에서 지원하는 재활치료프로그램(월, 수,금요일)에 참석하거나 이곳을 방문한 천주교 자원봉사자와 함께 시장보기, 요리실습(목요일)을 한다. 나머지 요일은 관리자와 상의해 빨래, 비디오회시청, 외출 등을 한다.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데도 정부의 국고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거비용, 살림비용을 모두 환자 가족들이 떠맡아야 하는데, 한 사람이 한달에 내는 돈이 50만원선이다. 또 재활치료 제공과 시범사업을 전담하는 간호사를 배치한 것이 고작이어서 개선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한겨레신문, 1996. 4. 4).

16) 학교 사고는 체육시간(4,270건, 51%)에 가장 많이 났고, 다음은 휴식시간 (1,691건, 20.4%), 교과수업중 (558건, 6.7%), 교외활동중 (527건, 6.3%), 청소시간중(490건, 5.8건), 실험실습중 (179건, 2.1%) 등의 순이며, 상당부분(83%)이 학생의 부주의로 발생했다. 지난 91~95년 공립학교의 학생 사고와 관련, 책임소재·보상금 등의 문제로 1백건의 소송이 벌어졌다(중앙일보 1996. 4. 23).

날 가능성이 크지만 사고 뒤처리에 문제가 많다. 시도별로 학교안전공제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기금 조성이 사실상 학생들의 부담이어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해 보상액도 현실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보상 한도액은 대체로 5천만원, 지난해 건당 평균 보상액은 34만여원이었다. 안전공제회의 작년말 현재 기금은 4백 36억여원으로 이중 35%인 1백 54억여원(4만6천여건)이 보상금으로 지급됐다. 이 때문에 안전공제회가 보상보다는 기금조성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함께 받고 있다(한겨레신문, 1996. 6. 16).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안전교육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에서 보건교육은 실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대학교가 전국 초등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보건교육 실태를 설문조사하고 초등학교 보건관련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학부모의 83%는 ‘어린이 스스로 경험하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답했지만, 학생은 53%가 교과서로만 배웠다. 또한 교과서 외에 다양한 학습자료를 활용한 교사도 12%에 불과했다. 교육내용도 상당부분 실생활이나 학생들이 알기 원하는 것과 동떨어져 있다. 학생들이 보건교육에서 가장 배우고 싶은 내용은 안전사고 예방, 응급조치, 남녀 신체구조, 질병예방등의 순이지만 실제 가르치는 것은 주로 기생충, 시력, 치아건강등에 치우쳐 있다(중앙일보, 1996. 7. 4).

교육부가 97학년도부터 교편을 ‘안전보건’교과로 바꾸고 예절과 질서교육, 산업 및 교통안전, 화재예방, 위생 및 간호, 응급처치 요령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아울러, 학교에서 사고가 날 때에는 적절히 보상할 수 있도록 “학교사고 보상 보험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2.7 교통사고: 교통사고 세계1위, 보행권이 위협받고 있다.

녹색교통운동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행자가 선진국에 비해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이 최고 1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⁷⁾. 보행자 교통사고 지수는 한국을 1백으로 볼때 일본은 26.8, 영국 20.0, 미국 19.8, 독일 17.6, 호주 16.9, 캐나다 15.7, 이탈리아 14.7, 스웨덴 9.7, 네덜란드 8.7로 한국의 보행자가 가장 위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행자의 사고율이 높은 이유는 운전자 위주의 교통운영체계 때문이다. 예컨대, 음주운전 등 중과실 10개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의 가해자는 종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권이 면제된다는 도로교통법은 인명경시풍조를 반영한다. 또한 미관확보를 위해 만든 ‘건축선 후퇴부’(건축법이 강제하는 건축물·도로간 폭)가 차량통행로와 불법주차장으로 변해 버렸고, 횡단보도를 점점 지하도나 육교

17) 1996년판 [일본 교통안전백서](총무청 발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률(연간 전체 교통사고사망자중 보행사망자 비율)은 94년 현재 전체 교통사고사망자 1만 87명의 43.18%인 4천3백56명이었다. 이같은 사망률은 미국(13.45%), 일본(27.67%), 네덜란드(11.74%)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이에따라 인구 10만명당 보행자 사망자수는 우리나라가 9.88명으로 최하위인 네덜란드(0.96명)보다 12배, 2위의 일본(2.82명)보다 3.5배나 많았다(중앙일보, 1996. 8. 13).

로 바뀌 자동차 위주의 도로운영을 하다보니 보행자들의 교통권이 크게 상실되고 있다. 그중 이동권의 피해자는 장애인과 어린이, 청소년, 노인이다(시민의 신문, 1996. 5. 6).

어린이교통안전연구소가 1995년부터 1996년 2월까지 14개월동안 전국 15개 시도 초등학교주변 통학로에서 발생한 14세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5백42건을 분석한 결과,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보다는 길을 걷다가 당한 사고중에서도 건널목 사고가 56.8%로 운전자들이 우선 멈춤이나 주의운전을 하면 상당수의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남녀별 사상자수는 여자보다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은 남자(61%)가 더 많은 교통사고를 당했다. 시간대별로는 학교나 유치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인 오후 2-6시에 발생한 사고가 전체의 45%를 차지, 통학로에 보행로와 차도경계선을 그려 넣거나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등의 보호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동아일보 1996. 5. 13).

선진국에서도 어린이와 청소년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 그중 뉴질랜드는 '스쿨패트롤'을 통해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고 있다¹⁸⁾. 우리나라 초등학교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녹색어머니회나 보이스카우트의 교통정리와 비슷한데, 스쿨패트롤의 지시를 어기고 횡단보도를 그냥 지나는 운전자에게는 범칙금과 벌점통지서가 날아가고, 상습적인 위반자는 경찰서에 출두, 조사를 받은 뒤 면허정지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뉴질랜드가 스쿨패트롤에 적극적인 이유는 교통안전에 관한 선진국인데도 어린이 사고율이 높기 때문이다. 교통사고로 숨진 5-14세 어린이는 10만명당 7.3명으로 사망원인 2위인 암(4.3명)에 비해 1.7배 높다.

한국(95년)과 뉴질랜드(94년) 교통사고 비교

	한 국	뉴질랜드
총인구	44, 851, 000명	3, 577, 200명
교통사고 사망자수	10, 323명	580명
어린이 사망	788명	45명
교통사고 부상자수	331, 747명	16, 600명
어린이 부상	33, 850명	1, 528명

18) 스쿨패트롤은 1920년대 미국에서 시작, 호주를 거쳐 1931년 뉴질랜드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전국적으로 7백개 학교에서 7만여명의 학생이 자원봉사중이다. 이들은 모두 고학년중에서만 선발된다. 스쿨패트롤의 가장 큰 특징은 승용차에 대한 단속권한이 도로교통법에 명시돼 있다는 점이다. 유니폼과 장비사용요령 등 구체적인 운영방법도 지난 1994년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됐다. 메뉴얼은 경찰과 교통안전청 교사연합회 교장연합회 버스조합 등 9개기관이 함께 제작했다. 한편, 30분간 통행차량 1백대 미만, 차량과 보행자수를 곱한 숫자가 5천미만인 곳에선 스쿨패트롤 대신 '교통과수꾼' 제도를 운영한다. 임무는 비슷하지만 차량통행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을 뿐이다(동아일보 1996. 6. 1).

호주는 학교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설치를 의무화, 차량속도를 40키로미터로 제한, 학생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등으로 사고를 줄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통통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면서, 보행특화공간(건널목, 학교주변, 주거지, 공공시설 주변, 근린생활권 등)을 획정, 보행의 연속적 흐름이 도시전체 도로에 보장되도록 도시계획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¹⁹⁾.

아울러,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사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시민교통환경센터가 발표한 ‘교통사고장애아의 사회적응에 대한 연구보고’에 따르면 어린이의 경우 피해가 일반 성인들보다 심각하고 후유증도 크지만 보험료를 산정할 때 노동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돼 보상비가 매우 낮다. 피해보상의 현실화와 책임보험범위의 확대, 장애학생을 위한 학교내 편의시설개선 등이 절실하다.

제27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는 능력과 재정의 범위내에서 아동 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확보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3. 당사국은 국내 여건과 재원의 범위내에서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가 이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 영양, 의복 및 주거에 대하여 물질적 보조 및 지원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자로부터 아동양육비의 회수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있는 자가 아동이 거주하는 국가와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당사국은 국제협약의 가입이나 그러한 협약의 체결은 물론 다른 적절한 조치의 강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2.8 성적발달: 초기 성경험과 문란한 성관계로 성적 발달이 왜곡되고 있다.

청소년의 성경험율이 상승하고, 성경험이 있는 대부분의 청소년이 문란한 성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서울시내 남녀고교생의 성행태를

19)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교통사고 없애기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경찰이 관내 학생들에게 교통사고 방지 특강, 교회·사찰에서 신도의 계도,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가스충전소·주유소 등에서 교통안전수칙 녹음테이프의 제공, 학생·주민을 찾아다니며 교통관련 민원의 접수, 주민들이 요구한 과속방지턱·교통표지판 등 교통관련 시설물의 즉시 설치하거나 고쳤다. 이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한달 평균 4~7명에 달하던 사망자수가 5~6월에 한명도 없고, 1백명을 상회하던 중상자도 53명으로 격감했다(중앙일보 1996. 6. 8).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남학생 16.7%, 여학생 5.4%가 성경험이 있고²⁰⁾, 3학년생의 경우 남학생 26.6%, 여학생 6.6%가 성경험이 있었다. 성경험이 있는 경우 2명 이상의 이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학생은 81%이고, 여학생은 66.2%를 차지했다(국민일보, 1996. 5. 25).

청소년의 성경험율이 높아지는 것은 국제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청소년은 음란 비디오나 폭력적인 영상매체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올바른 성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심각해지는 청소년 성문제를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풀기 위해서, 한국여성민우회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의식과 부모의 지침을 각각 10가지 수칙으로 발표한 바 있다. 청소년수칙중에서 “이성친구의 성적자유결정권을 존중한다”는 것은 인권차원에서 시급히 뿌리내려야 할 규범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칙으로 “자신의 의사는 분명하게 하고 이성친구의 ‘거절’은 거절로 받아들이는”을 부가하고 있다. 또한 부모의 수칙에서는 “자녀의 이성교제를 인정하고 상호 인격적인 만남이 되도록 돕는다”를 포함시켜서 자녀의 이성교제를 일방적으로 금지하거나 규제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도울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제26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자국 국내법에 따라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혜택은 아동 및 아동에 대한 부양책임자의 재력과 상황은 물론 아동에 의하여 직접 행하여지거나 또는 아동을 대신하여 행하여지는 혜택의 신청과 관련된 여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한 경우에 부여되어야 한다.

2.9 사회보장: 청소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하다.

국내총생산(GDP)에 비교한 정부의 사회보장부담금의 비율은 지난해 2.5%로 선진국에 비해 훨씬 낮으며, 특히 1993년까지는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최근에는 제자리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프랑스는 이 비율이 19.6%였고, 이탈리아는 17.7%, 독일은 15.1%, 일본은 9.8%였다(한겨레신문, 1996. 6. 7).

정부의 사회보장부담금이 낮은 이유는 지나치게 많은 국방비의 부담과 국민의 생존과 보호에 관한 업무를 생명보험회사와 같은 사보험에 떠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부모의 재정상태와 관계없이 일정한 액수를 어린이와 청소년의 양육비로 지급하여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아동수당’이 우리나라에는 없다. 국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고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20) 남학생의 경우 1명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응답자는 3.2%, 2명 4.7%, 3명 3.5%, 4명 1.6%, 5명 이상 4%등이고, 여학생은 1명만 상대한 경우 1.8%, 2명 0.9%, 3명 0.6%, 4명 0.4%, 5명이상 1.7%로 조사됐다.

제 3 장 학습과 문화에 관한 권리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학습과 문화에 관한 권리는 교육에 관한 권리(제28조), 교육의 목적(제29조), 소수자·원(선)주민 아동의 언어등의 문화에 관한 권리(제30조), 휴식 및 여가, 놀이, 문화적·예술적 생활에의 참가(제31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의 학습과 문화에 관한 권리의 수준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흔히 사용되는 취학률과 문맹율은 다른 나라보다도 높다. 국제연합아동기금의 ‘국가발전백서’(1996)에 따르면, 5학년에 진급하는 어린이의 비율은 한국이 96%로 일본(10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미국(94%)보다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환경과 문화생활에 관련된 또 다른 지표를 보면 한국은 매우 낮은 수준의 나라이다.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는 33명으로 프랑스(12명)의 2.75배, 선진국평균(17명)의 1.94배이고, 중상위 소득국가 평균(24명) 보다도 9명씩이나 많다. 학급당 학생수는 더욱 많아서, 1995년도 현재 초등학교는 36.4명, 중학교는 48.2명, 일반고는 48명이다. 지나치게 많은 학생수로 학생의 수준에 맞는 개별화된 학습지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국정교과서로 학생들에게 획일적으로 가르침으로써 다양한 것을 배워야 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원천적으로 제약하고 있다.

제28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 나.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료교육의 도입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다.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라.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마. 학교에의 정기적 출석과 탈락률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특히 전세계의 무지와 문맹의 퇴치에 기여하고, 과학적, 기술적 지식과 현대적 교육방법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에 관련되는 사

항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3.1 과중한 사교육비: 무상의무교육인 초등교육에서 공교육비보다 사교육비가 더 많다.

아동과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이를 무상으로 실시하는 것은 선진국에서 보편화되어 있고, 우리나라 헌법도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이고 무상으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유치원과 초·중고교생 1인당 사교육비가 공교육비를 크게 앞질러 교육비구조의 왜곡이 심하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95년도 한국의 교육지표'에 따르면 94년 학생 1명당 사교육비는 유치원이 1백24만원, 초등 1백35만원, 중학 1백53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같은 해 공교육비인 초등 1백19만원, 중학 1백18만원보다 오히려 많은 것이다.

이처럼 사교육비가 많은 것은 무상의무교육을 표방한 초등학교에서도 오랫동안 육성회비를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²¹⁾, 교과과정에 필요한 각종물품을 학습자가 준비해야하고, 방과후 학교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서 학생들이 각종 사설학원에 다니기 때문이다. 또한, 학습지와 부교재 채택 수수료와 같은 교육계의 고질적인 부조리가 사교육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학기초와 학년초에 이뤄지는 학습지와 부교재 채택시 책 가격 총액의 약 20~25%의 수수료를 받는데 학습지는 담임이, 부교재는 각 교과담임이 수수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 공교육비는 사교육비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한국(95년)이 초등 1천8백10달러 중등 1천7백70달러인데 비해 OECD 평균(92년)은 초등 4천1백70달러 중등 5천1백70달러로 한국은 OECD 평균의 3분의 1수준이었다(조선일보, 1996. 4. 1).

교육비중에서 사교육비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계층은 교육비의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고, 특히 집을 떠나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있는 농촌에서는 교육비의 부담이 더욱 크다²²⁾. 따라서, 지나치게 많은 사교육비를 줄이고 맞벌이

21) 교육부는 서울·부산 등 6대 도시 1천1백41개 국·공립 초등학교에서 거두고 있는 육성회비를 97학년도부터 폐지하고 사립학교는 가능한한 수업료에 포함시킬 것을 권장한다고 발표했다. 육성회비는 지난 1970년부터 학부모의 자진협찬 형식으로 전국에서 시행된 후 72년 도서·벽지, 77년 농어촌, 78년 읍 이하 지역, 79년 6대 도시 이외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폐지했다(중앙일보, 1996. 6. 14).

22)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중학생 이상의 자녀를 둔 전국 85개 농촌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촌 자녀의 이혼 취약이 농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결과에 따르면 집을 떠나 유학하는 대학생 이상 자녀를 둔 농가의 연간 교육비는 8백25만2천원으로 전체 가계비 1천2백29만4천원의 67.1%를 차지했다. 또 집을 떠나 있는 고교생 자녀가정은 교육비가 가계비의 45.9%, 중학생이 있는 가정은 32.4%를 각각 차지했으며 자녀 교육비

부부 자녀의 생활지도를 위해서는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나 교내 과외를 실시해야 한다. 영어회화와 컴퓨터, 태권도, 예체능 실습 등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종목부터 실시하고, 교원발령 대기자와 외부강사, 일정 자격을 갖춘 학부모나 기능기술 보유자, 지역사회 인사 등을 강사로 활용하면 될 것이다.

서울 고교교장 30% “촌지 받을 수도 있다”

3분의 1이 넘는 서울시내 일선 고등학교 교장들은 교육 현장의 가장 심각한 부조리로 ‘촌지’ 주고 받기를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우에 따라서 촌지를 받을 수 있다고 대답한 교장은 30%가 넘었다.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시내 전체 2백72개 공·사립 고등학교 교장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현장에 남아있는 부조리를 묻는 질문에 촌지 수수가 37.8%로 가장 많이 많았으며, 그 다음은 부교재 채택 관련(29.3%), 교복·수학여행·수련경비 관련 등(11.3%), 회계집행(10.7%) 차례였다. 이밖에 인사 및 성적관리, 기부금 관련 부조리도 지적됐다.

촌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성의 표시는 받을 수 있다’가 18.9%, ‘금액을 구분해 선별적으로 받을 수 있다’가 11.7%씩 나타나 경우에 따라 받을 수 있다는 대답이 30.6%에 이르렀다. ‘절대로 받아선 안된다’는 69.4%였다.

한편 교육 관련 비리를 막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99.1%가 ‘개인의 의식 전환 미흡’을 꼽았고, 사정이나 감사활동 미흡은 겨우 0.9%에 불과했다. <한겨레신문, 1996. 10. 17>

3.2 문맹율: 사실상의 문맹자가 줄지 않고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완전취학률에 가깝지만 사실상 문맹자는 줄지 않고 있다. 중학생이 한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거나 기본셈 능력이 없는 학생이 적지 않다. 서울시교육청의 기초학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글을 제대로 못읽고 일상실용문을 쓰지 못하는 학생이 전체의 0.6%(3,099명), 덧셈·뺄셈·곱셈·나눗셈 등 기본셈을 제대로 못하는 학생이 0.8%(4,527명)에 이른다²³⁾. 이들은 초등학교 과정에서 가정과 학교의 관심 부족으로 상급학년이나 상급학교 진급·진학에 필요한 학력을 길러주지

마련을 위해 농가의 76.5%가 농협이나 마을 금고·친척등에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중앙일보, 1996. 4. 28).

23)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전체 중학생의 0.8%인 3,019명이 아직도 한글을 깨치지 못하고 있으며 구구법을 모르는 학생도 0.9%인 3,301명에 달한다. 지난해에 비해 한글을 모르는 학생은 2.6%가 줄어든 것이나 구구법을 모르는 학생은 80.1%가 늘어난 것이다(문화일보, 1996. 6. 26).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초등학교 의무교육 과정에서는 법적으로 유급이 불가능해 기본적인 학력부진 학생도 자동적으로 진급·진학하는 것이 큰 이유이다. 학습부진아에 대해 기초학력을 신장시키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개별지도 또는 소집단 지도를 해야 한다. 또한, 영재는 월반제도로 조기진학을 유도하듯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은 보충학습으로 정상적인 학생들과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급제도를 도입하고, 학습능력이 부진한 학생을 위한 특별학습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기 때문에 편법으로 자녀를 유급시킨 교사가 징계받는 사건이 나기도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는 초·중등학교의 1, 2학년에서 기초학력이 미달된 아동에 대한 재수학의 기회가 전무한 실정을 감안해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합의한 경우에 한해 유급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아들 생활부 고친 교사아버지 징계

성실하고 유능한 교사로 인정받아온 서울 S초등학교 변모(46)교사가 최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아들(11)의 '자진 유급'을 위해 전학과정에서 생활기록부를 고쳤다는 게 징계사유였다. 변교사가 다른 학교에 다니던 아들을 자신이 재직중인 학교로 전학시킨 것은 94년 말. 당시 3학년이던 아들은 학습부진아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었다.

변교사는 아들을 위해선 한해 유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고 이를 위해 아들의 생활기록부에서 3학년 기록을 지워버렸다. 현행 교육법과 교육법 시행령상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교육은 유급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칙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다행히 아들은 이듬해 3학년을 다시 다니면서 학교생활에 잘 적응했고 공부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어 올해 4학년으로 진급, 재학중이다.

그러나 뒤늦게 생활기록부 변조 사실이 드러나 변교사는 지역교육청 징계위를 거쳐 시교육청 중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논란끝에 이례적으로 정상이 참작돼 경징계인 견책을 받았다.

변교사 사건을 계기로 일선 교육계에서는 초등학교에도 학습부진아를 위한 유급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중앙일보, 1996. 5. 9).

한편, 한글도 못읽는 학생들 가운데 상당수는 뇌에서 장애를 일으킨 부분만 찾아내 바로잡아 주면 거의 완치가 가능한 난독증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있다. 난독증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한데도 우리의 경우는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 예컨대, 프랑스에서는 학교마다 배치돼 있는 심리전문가가 10세 이전에 그 사실을 발견하기 때문에 대개 1~2년 정도 치료하면 정상으로 회복된다고 한다. 특히 5~6세 무렵에 난독증을 발견하면 치료기간도 수개월 정도로 줄어들지만 10세가 되도록 난독증이란 사실을 몰라 치료하지 못하면 평생 문맹신세를 면치 못하게 된다. 우리나라

라에는 난독증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 조차 거의 없는 실정이다. 사실상의 문맹자를 줄이기 위한 예방과 치료대책이 요망된다.

3.3 중퇴율: 등교를 거부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다양성이 결여된 교육과정,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학교환경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많은 학생들은 학업을 포기하고 급기야는 학교가는 것을 거부한다. 혹은 학교에서 금지하는 가출, 약물오남용, 폭력행위 등을 하여 징계를 받고 학교를 중퇴하거나 퇴학당하기도 한다. 이렇게 학교를 중퇴한 중고등학생은 지난 한해동안 7만5천여명이었다.

중퇴생중 일부는 사설학원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취업을 준비하기도 하지만 비행청소년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청,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중퇴한 중고생을 복교시키는 운동을 하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 지난해 학교를 그만둔 중고생 6,797명중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방문면접을 한 결과 1,086명이 복교를 희망했고, 인성교육 등을 거쳐서 복교가 확정된 사람은 170명이라는 사실에서 볼 때 중퇴는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 중퇴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처벌위주의 상벌제도를 시급히 개선하여야겠지만, 고민이나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상담을 통해서 조기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경제적 빈곤, 가정결손 등 가정문제나, 약물오남용, 가출, 성문제 등을 가진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회복지사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을 뿐이다. 학생의 고충을 이해하고 당면문제를 해결을 하도록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하는 학교사회사업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3.4 일상화된 체벌: 교사에 의한 학생폭력이 관습화되어 있다.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학생의 체벌이 만연되어 있다. 교육법 어디에도 “체벌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지만, 교직을 “교편”(敎鞭)을 잡는다”고 표현할 정도로 교육과 ‘회초리’는 피할 수 없는 관계로 인식된 전통으로 체벌은 만연되어 있다.

최근에는 “교사체벌도 일종의 폭력이므로 사랑의 때로 미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체벌이 설사 쓸만한 교육방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상책은 아니고 말로 해서 듣지 않을 때나 쓸 하책에 불과하다. ‘사랑의 때’라지만 일종의 폭력이고, 다만 목적이 교육적이라는 점에서 정당성이 주장될 뿐이다. 이제는 목적 뿐만 아니라 수단·방법에 관해서도 좀 생각해 봐야 한다. 더욱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학교폭력이 학교에서의 체벌과 관련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

아울러 교사의 체벌로 인한 소송사건도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총에 따르면 1995년 한해 동안 교총에 접수된 사례 가운데 학교 안전사고 및 체벌로 인한

피해사례는 모두 18건으로 이는 총 사례(53건)의 34%에 해당한다. 이같은 비율은 94년 22%(총59건중 13건), 91년 8.7%(23건중 2건) 등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이다. 학교안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건은 잡음을 우려해 가급적 숨겨온 교육계의 관행에 비추어 이같은 사례는 병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요망된다. 먼저 교육법에서 체벌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징계의 한 수단으로 허용할 경우에는 그 규정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명시한다. 각급학교의 학칙에도 체벌을 할 수 있는 경우와 체벌방법을 상세히 규정해서 체벌이 교사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인권의 사각지대 학교현장

아이들은 말한다. “우리들에게 무슨 인권이랄 게 있느냐”고 우리 사회 전반에 인권 존중에 취약한 구조이지만 학교는 그 중에서도 ‘인권의 사각지대’로 꼽힌다. 통제와 타율이 지배하는 공간에서 일상화된 체벌은 ‘사랑의 때’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지 오래다. 교사 개인의 진심과 무관하게 그것은 폭력일 따름이다. (중략)

많은 학생들이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가장 심각하게 지적하는 일은 ‘체벌’에 관한 것이다. 징계가 보다 심각하긴 하나 비교적 소수 학생들에게 국한된 문제인데 반해 체벌은 거의 모든 학생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모임의 학생들은 체벌 이야기가 나오자 막힌 붓물 쏟아지듯 했다.

“학교에서 가장 불만은 당연히 선생님들이 때리는 거죠. 우리, 국어 선생님들에게부터 기술 선생님까지 모두 다 이야기 해봐요. 정말 할 이야기 많아요.”(서울 Y중 2년 K군)

“필드하키 채로 엉덩이 때리는 거 정말 너무 아파요. 쇠파이프에 검은 테이프를 감아 때리는 선생님도 있어요. 몽둥이로 배를 찌시기도 하고 대걸레자루가 부러진다니까요. 이젠 ‘사랑의 때’가 아니고 거의 ‘죽음의 때’예요(서울 B중 2년 H군)

“애들 숙제 안해오면 선생님이 반장한테 때리라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반장도 살살 때리면 지가 맞으니까 인정사정 없이 때리죠. 저는 나중에 교사가 되고 싶어요. 교사가 돼가지고 애들을 갖고 놀고 싶어요 괜히 열 받으면 ‘너 나와’ 그래서 때릴 수도 있고 좋잖아요.”(서울 Y중 2년 K군)

체벌에 관한 한 아이들은 벌떼처럼 할 말이 많다. 체벌은 학생과 교사의 인간 관계를 황폐하게 만드는 가장 독소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컴퓨터 통신에 실린 교사의 폭력에 대한 내용을 보면 그 적대감의 정도가 이미 어찌 해볼 도리가 없을 정도로 깊어 구구절절 읽기가 민망할 지경이다.

우리나라 교육전통에서 체벌은 광범위하게 용인돼 왔다. 그러나 교사와 학생 간의 인격적인 만남, 신뢰가 결여될 수 밖에 없는 교육현실에서 체벌은 효과적

이지 않고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더욱 왜곡시킬 뿐이다.

이런 통제와 규제 속에서는 학생들의 자치문화도 싹들 여지가 거의 없다. 경북여고 고아무개 교사(30)는 이렇게 말한다.

“옛날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의욕이 꺾였던 제 경우와 비교하면 요즘 학생들은 처음에는 상당히 활기칩니다. 그런데 교장, 교감 선생님들은 그런 분위기를 ‘들떠있고 종잡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공부 이외의 일에는 관심을 갖지 말라’며 학생들의 의견이나 건의사항을 묵살합니다. 학생회 간부들이 건의사항을 학교측에 전달하면 쫓겨 박으며 ‘무슨 학생회가 힘이 있는 줄 알고 그러는 모양인데 너희들은 공부나 열심히 해라’며 무시를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니까 학급회의 시간에도 아이들은 무슨 말을 하려고 안합니다.

학교 안팎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은 것은 고사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펼치지도 못한다. 이런 풍토가 아동을 주체가 아닌 일방적 권위관계에서의 수동적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 주체로서 자율을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학생들은 조금이라도 자유가 허용될 경우 무질서를 드러낸다. 감독교사 없는 자율학습시간의 혼란처럼. 그러면 교사들은 ‘너희는 어쩔 수가 없다. 맞지 않으면 말이 안통한다’며 다시 통제의 고삐를 더욱 죄게 된다. 이것이 ‘수동’과 ‘통제’의 악순환이 빚어내는, 부끄럽지만 외면할 수 없는 우리의 학교 현실이다<우리교육 중등용, 1995-5, 39-41면>.

3.5 열악한 학교환경: 기본적인 교육여건조차 갖추지 못한 학교가 적지 않다.

학교가 학습공간으로서 최소한의 여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개교를 하거나 도로의 개설, 공업단지의 조성 등으로 주변환경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이전하지 않아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된 곳이 적지 않다.

사회 각 분야에서 최첨단을 추구하고 있지만 학교는 여전히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딱딱하기 그지없는 나무 책상에 나무의자, 거의 개방되지않는 특별활동실, 먼지투성이의 교실, 지저분한 화장실, 책창고에 불과한 도서관 등은 고쳐지지 않고 있다. 학교에 사물함 하나만 설치해도 치마정장에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다니는 우스꽝스런 모습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²⁴⁾.

심지어 교사를 날림으로 지어서 안전성이 의심스러운 경우도 있다.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개교한 경기도내 초·중·고교 가운데 일부 학교 재학생들이 날림공사로 진통을 겪고 있다. 벽면 균열로 빗물이 새기 일췌인데다 운동장은 곳곳이 침하돼 진흙 수렁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이다. 게다가 증축공사가 진행중인 학교는

24) 대전시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생 책가방 무게는 평균 4.18, 중학생은 6.1, 고등학생은 7.57킬로그램이었다. 특히 각종 참고서와 도시락 두개까지 싸가지고 다니는 고3 남학생들의 책가방은 무려 8.4킬로그램으로 쌀 한말 무게보다 무거웠다(중앙일보, 1996. 10. 9).

각종 장비와 건축자재가 곳곳에 쌓여있어 학생들이 안전사고 위험속에 방치돼있다 (중앙일보, 1996. 6. 22). 날림공사가 만연된 것은 학교건축물의 건설단가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 교실의 먼지나 소음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3.6 장서율: 학교도서관에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신간도서가 없다.

학교도서관이 방치되고 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제공해야 할 도서관이 교육당국의 무관심과 입시교육에 밀려 자율학습실로, 기껏해야 책 보관창고로 전락한지 오래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학생들은 교과서와 참고서를 제외한 책을 거의 읽지 않는다²⁵⁾. 그래도 고교는 98.3%가 도서실이 있지만, 초등학교는 각각 62.4%, 84.9%(95년 교육통계)에 그치고 있다. 학교도서관의 평균 장서수는 초등 3,944권, 중학교 3,482권, 고교 4,528권으로 선진외국의 절반수준도 안된다.

일본은 1백%의 중-고교와 99.8%의 소학교(초등학교)가 도서관을 갖추고 있다. 도서관당 평균 장서수도 소학교 6,833권, 중학 8,012권, 고교 20,988권으로 우리나라 평균의 2~5배다. 사서교사를 포함한 도서관 직원수는 평균 초-중 1.9명, 고교가 3.9명이다.

미국의 학교도서관은 종래의 도서외에 비디오, 슬라이드, CD-ROM, 음반 등 각종 시청각 자료와 첨단매체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 문헌자료실, 영상자료실, 컴퓨터학습실, 시청각실 등이 종합적으로 갖추어져 있다. 도서관 명칭도 종합교육정보관(School Library Media Center)으로 바뀌고 있다. 사서교사뿐 아니라, 미디어전문가, 실기교사, 사무보조원 등도 배치돼 있다. 미국 초중고교 도서관의 평균 장서수(90년 현재)는 초등 7,386권, 중학 9,697권, 고교 13,954권이다. 고교의 경우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평균 42개, 비디오자료는 평균 63개였다.

이처럼 도서관의 장서가 적은 것은 이에 대한 투자가 낮기 때문이다. 1995년 도서실 평균 예산액은 초-중-고교별로 260만원-310만원인데, 실제로 도서를 구입하는데 쓰이는 비용은 이보다 적다. 체계적인 도서관 이용법을 가르치는 사서교사가 고교(전국 2천25개교)는 모두 126명, 중학교(2,691개교)는 36명, 초등학교는 아예 없다(조선일보, 1996. 4. 1). 학교도서관을 책창고가 아닌 정보의 산실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연간 도서구입비를 학생 1인당 1만원내외와 같이 대폭 상향조정하고, 전문사서를 배치하며, 책 뿐만 아니라 비디오테이프, 슬라이드, 시디롬 등 영상음향매체를 함께 수집-보관-대출하여야 할 것이다.

제29조

25)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10.3%가 한해(1996년)동안 책을 한권도 읽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다섯권 이상 읽은 학생은 35.7%에 불과하고 30.6%는 1~2권, 24%는 3~4권이며, 평균 3~4권의 책을 읽는다고 응답했다(중앙일보, 1996. 10. 12).

1.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 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 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
 - 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헌장에 내포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계발
 - 다. 자신의 부모, 문화적 주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계발
 - 라. 아동이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 마.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계발
2. 본조 또는 제28조의 여하한 부분도 개인 및 단체가, 언제나 본조 제1항에 규정된 원칙들을 준수하고 당해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이 국가에 의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조건하에,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3.7 교과서의 국정화: 교육내용의 국가통제로 학습의 다양성을 추구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법(제157조 제1항)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에 교과용도서(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졌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것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교과용도서(교)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교과용도서란 학생용의 주된 교재인 교과서, 교사용의 주된 교재인 지도서를 의미한다. 그중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것을 “1종 교과서” 또는 “1종 지도서”라고 하고 교육부장관이 검정한 것은 “2종 교과서” 또는 “2종 지도서”라고 한다. 그런데 초등학교의 모든 교과서와 지도서, 중학교의 교과목 중 국어, 도덕, 국사, 고등학교의 교과목 중 국어, 국민윤리, 국사의 교과서와 지도서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1종 교과서와 지도서만 사용할 수 있고 그밖에도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교과목에 대하여 1종 교과서와 지도서를 사용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²⁶⁾ 이와 같은 장치로 정부는 학교교육의 내용을 획일적으로 통제하며 교과용도서의 집필과 출판에 관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92, 111-112).

교과서를 국정화한 것은 교과서가 국민교육에 기본이 되는 책이기 때문에 그 내용과 질을 관리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목표와 함께 부당한 정권을 정당화하고, 국민의 권리 침해를 합리화하려는 시도와 관련되어 보인다. 국정교과서만 인정되는 국사, 도덕, 국민윤리 등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의 내용이 대폭 수정되고 있는

26)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나머지 교과목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서와 지도서를 사용해야 하는데 검정은 교육부장관이 위촉한 심사위원이 교육부장관이 정한 검정기준에 따라서 하며 검정에 합격하는 교과서와 지도서는 한 과목에 8가지 이내로 하게 되어 있다(규정 제12조 내지 제19조).

것이 이를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가 위탁하여 제작한 국정교과서중 일부는 교과서의 질을 심각히 떨어뜨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검인정 교과서 1종의 제작 비용이 2~3억원이 들에도 불구하고 한 국정교과서는 1천 2백만원으로 제작되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잘못되고, 사례가 부적절하며, 논리가 안맞는 문장이 한두사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남의 책을 그대로 베껴쓴 원고까지 있었다²⁷⁾.

따라서 현행 교과서정책은 획기적으로 바뀌어서 국정교과서를 최소화하고 검인정 교과서를 크게 확대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빈약한 예산에 하청까지 주면서 부실교과서를 구태여 양산할 필요는 없다.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국어·국사 등 특정과목은 교육부가 직접 제작해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국가규제이다. 선진국 대부분이 검인정교과서를 쓴지 오래이다. 정부는 검인정기준을 분명히 하고 검정과정의 공정성 확보장치를 점검하면 될 것이다

다양화사회에서 교육내용을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교과서와 지도서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고등학교는 크게 일반계와 실업계로 대별되는데, 선택한 계열이 학생의 적성에 맞지 않더라도 실업계에서 일반계로의 전학이 매우 어렵다. 1996년도에야 전학이 허용되었는데, 전학을 위한 평가시험에 서울시내 75개 실업계 고교에서 모두 55명만이 지원했다. 이처럼 적은 수의 학생이 지원한 것은 적성과 성적 등을 감안한 학교장의 추천을 받게 돼 있는데다 평가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다(중앙일보, 1996. 7. 22.).

국사교과서 다시 써야 한다.

우리의 국사 교과서는 국정으로, 정부로 표방되는 집권세력이 그 편찬을 독점하고 있다. 역사는 그것을 쓰는 사람의 주관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국정 국사 교과서는 권력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우리 역사다.

1974년 검인정이던 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꾼 가장 큰 이유가 유신독재 체제를 정당화하고 유지할 전체주의적 국민의식의 통일을 조장하는 데 있었다. 이때 시작한 국정(國定)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집권 세력은 아직도 국정이라는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국정화된 이후 국사 교과서는 79년 수정판을 포함해 82년, 90년 등 모두 세 번 바뀌었고, 올해는 네 번째 개편이 된다. 이런 교과서에서 각 정권은 그 집

27) 1997년부터 사용될 고등학교 '정치'교과서의 일부 내용이 잘못되었다. 이 교과서를 보면 동성동본은 혼수 관계없이 금혼인데도 8촌이내 혼인은 무효라고 적고 있는 등 부분적으로 잘못이 발견되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육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매우 적은 예산으로 교과서제작을 위탁하기 때문에 교육개발원은 관련 대학교수들에게 원고청탁을 반강제로 하고, 집필자들은 원고를 성실하게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전공이 다른 담당자가 원고를 40~50%정도 수정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교육부는 "철저한 검토를 거쳐 교과서를 만들었다"고 해명했다(중앙일보, 1996. 10. 7).

권의 당위성과 정책을 일목요연하게 피력하고 있다.

74년 79년판은 5·16을 5월 혁명으로 추켜 세우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처하고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달성하고자 헌법을 개정하고 10월 유신을 단행했다”라는 내용으로 유신 체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82년판은 제5공화국 권력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 앞선 교과서들이 그렇게 찬양하던 10월 유신을 “장기 집권 징후”라고 비판하면서 “한때 혼란 상태가 나타났고, 이러한 혼란 속에서 북한 공산군의 남침 위기에서 벗어나고 국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라는 저들 스스로 야기한 혼란을 안보 논리로 과포장하여 제5공화국의 등장을 정당화, 합법화하고 있다. 아울러 장미빛 환상으로 미래를 포장하여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이 교과서가 가장 정치적 성향이 짙은 것으로 보인다.

90년판은 제5공화국을 권위주의 체제로 일정 규정하면서 그 결과로 나타난 국민들의 민주화의 요구와 열기를 이은 6·29 민주화 선언을 정권 등장의 배경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후의 5공 비리 청산, 광주청문회와 같은 역사적 사건들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직접적인 정권 선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95년에 수정, 제작된 국사 교과서에는 현정권의 입장을 대변하는 서술이 갑자기 끼어 들었다. 삽화도 제6공화국 출범 사진을 제14대 대통령 취임식 사진으로 바꿔 넣었다. 중심적인 내용은 “사회 안정과 경제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었”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현정권이 등장했으며, “새 정부는 신한국 창조를 위하여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 통일된 조국 건설을 국정 지표로 설정하고 사회의 누적된 모순을 제거하면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여 6공의 과제와 한계를 제시하여 현정권의 출범을 정당화하고 신한국 창조라는 구호까지 끌어 넣어 정권 홍보에 애쓰고 있다. 현 정권의 국사 교과서를 통한 정권 홍보는 앞선 정권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략)

국사 교과서는 관심은 없지만 매우 중요한 책이다. 최고의 베스트셀러이기도 하다. 한번 읽고 마는 책도 아니다. 입시를 위해서 달달 외워버리는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졸업만 하면 그냥 폐휴지 창고로 직행하는 책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입장에서 객관화되고 진실을 향해서 나아가며, 민족적이고 민주주의 완성을 추구하고, 역사를 발전시키는 주체를 중심으로 삼는 국사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 그럴 때 국사 교과서의 역사는 우리 사회를 진정 더불어 살 수 있는 따뜻하고 보람차며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는 자양분이 될 것으로 믿는다<우리교육 중등용 1996년 2월호, 50-52>.

제30조 인종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자나 원주민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이러한 소수자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은, 자기 집단의 다른 구성원과 함께, 고유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의 종교를 신앙하고 실천하며,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 한다.

제31조

1. 당사국은 휴식이나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3.8 여가시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청소년들은 학업시간의 과중으로 자유로운 여가시간이 거의 없다. 하루 생활시간에서 수면, 식사 등 생활필수시간을 제외하면, 학교수업·자율학습 그리고 과외수업 시간 등 학업시간이 대부분이다. 무엇보다도 학교에서 법정수업시간이 지나치게 길고²⁸⁾, 정규수업이 끝난 이후에는 자율학습이 강요되기 때문이다²⁹⁾.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보충수업은 한 달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 76-80시간을 한다. 보충수업은 본 수업의 미진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 돼야 하는데 본 수업과 차이가 별로 없다³⁰⁾. 보충수업이 끝나면 자율학습을 하는데, 고 3의 경우 평일에는 보통 밤 11-12시, 토요일은 오후 5시까지 한다. 1·2학년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은 하지 않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과중한 자율학습때문에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자율성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돼 있는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의 신청도 아이들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 말로는 보충수업 동의서, 자율학습 동의서를 받고 있지만 거의 형식에 가깝다. 학생들 스스로 강제 동의서라고 부른다.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은 누차 그 폐지가 강조돼왔듯이 학생들의 적성탐색과 인성교육적 측면에서 시급히 사라져야 할 관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충수업은 계속되는 이유는 학생들이 좀더 오랫동안 학교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학부모의 막연한 바람을 학교경영진이 수용하기 때문이다.

관례화된 보충수업과 타율적인 자율학습시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학생들에게 의견을 물어야 한다.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동의서는 ‘부모’가 쓸 것이

28) 법정수업시간이 길기 때문에 정규수업을 할 수 없는 월례고사 등 시험, 신체검사, 입학식날까지도 정규수업을 한 것처럼 교무일지와 출석부에 거짓으로 기재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중앙일보, 1996. 7. 23).

29) 자율학습이 얼마나 억압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전주시내 중사립고에 다니는 학생이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교과공부 대신 교양도서를 읽었다는 이유로 매를 50대나 맞았다”는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다(한겨레신문, 1996. 4. 19 독자의 소리).

30) 교육부가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865개 고교 가운데 75.4%인 1,407개교가 방과후에 보충수업 형식으로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에 대한 교내 과외를 실시하고 있다. 과목별 교내 과외 실시 학교 수는 영어가 1,305개교(70.0%)로 가장 많고, 수학 1,301개교(69.8%), 국어 1,248개교(66.9%), 과학 1,151개교(61.7%) 등으로 나타났다(한겨레신문, 1996. 10. 9).

아니라 ‘학생’이 직접 써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8세미만의 연소자는 하루 7시간을 한도로 하여 일을 하게 하고 당사자가 원하더라도 1시간밖에 연장근무를 할 수 없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서 학생도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수업시간 수(그 명칭이 비록 ‘보충수업’이라고 할 지라도)는 하루 7시간을 넘지 말지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 현재 법정 수업일수와 수업시간수를 줄이고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에서 교육과 학습활동 전반에 학생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방학때마다 해외문화탐방

전체 학생이 3백50여명에 불과한 작은 학교지만 양구중학교는 90여명이 보이 스카우트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이중 50여명이 지난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을 이용, 일본·대만·유럽등지를 여행했다.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통해 양구중의 세계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이임호교장은 “어른들의 해외관광은 낭비지만 해외여행이 학생들에게는 유익한 교육투자라고 생각해 학생들에게 풍부한 체험과 견문을 넓힐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94년부터 특활반에 해외문화 탐방을 위한 보이스카우트반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양구중은 학기중에는 다가올 방학중에 갖게 될 해외여행에 보탬이 되도록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한다. PC통신·인터넷·햄(HAM)활동·영상기 등 각종 교육공학 자료를 활용, 여러나라에 대한 문화 및 생활양식 등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모은다. 학교 도서관 역시 각국의 문화 및 생활양식을 소개하는 도서를 다양하게 구비해 놓았다. 학생들이 여행 대상국을 선정, 그 나라의 전통문화를 탐구해 연구발표와 연극 등 행사를 개최하고 학교신문과 방송을 통해 홍보도 한다.

“외국문화에 접할 기회가 적은 학생들이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통해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과 접하고 국제적인 감각을 기르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세계화 교육입니다.” 보이스카우트반을 지도하고 있는 교무주임 김종찬(42) 교사는 “학생들 스스로가 정보를 찾고 학습의 중심이 되도록 보이스카우트반을 유도한다”고 말했다. 해외여행을 한 학생들은 귀국후에는 발표회와 사진 전시회등을 가져 해외 여행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과 서로 경험을 나누도록 하고 있다.

김교사는 학생들이 3백65일 공부만 한다면 지식은 늘어날지 몰라도 사회를 살아갈 능력은 부족할 것이라며 일찌감치 해외여행을 통해 스스로 삶을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학교측은 오는 99년 칠레에서 열리는 국제잼버리대회에는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1학년부터 적금을 붓도록 하고 있다. 양구중은 보이스카우트로 해외문화탐방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세계를 향해 멋진 꿈을 펼 수 있는 세계화 교육의 새로운 방식을 제시해 주는 좋은 사례다<중앙일보, 1996. 10. 31>.

3.9 여가활동장소: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공장소가 없다.

청소년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은 학교 운동장과 문화체육시설, 동네의 공원·공터·골목길, 그리고 각종 상업적인 여가시설이다. 그런데, 최근 자동차가 늘어나서 학교운동장과 동네 골목길과 공터는 주차장으로 변했고 상업적인 여가시설은 음란물과 폭력물이 범람하여 놀이공간으로서 의미가 점차 퇴색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에는 체육시간이나 비가 올 때 운동을 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이 없고 학생이 특별활동시간에 특별활동이나 방과후에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관, 학생회관 등이 거의 없다. 비록 체육관 등이 있더라도 일부 체육특기생이 연습을 하기 위해서만 개방되고, 절대 다수의 일반학생들은 체육시간이나 방과후에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체육과 문화예술시설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이용이 학생중심이 아니라 관리자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가공간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학교 주인은 학생 “농구장 왜 못써요”

수원의 S여중에 다니는 3년생이다. 우리 학교엔 13여억원이란 거액을 들여 만든 농구전용 강당이 있다. 농구명문인 우리 학교에 교육청에서 지어준 것이라고 한다. 지난해말 완공되었지만 한 학기가 다 지나가도록 강당을 사용해본 경험은 다섯손가락안에 꼽을 정도다.

체육시간은 물론이며, 점심시간이나 방과후에 조차도 농구부원들 외엔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이유인즉 일반 학생들이 사용할 경우 강당의 기물이 훼손되기 때문이란단. 물론 수리비용을 포함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겠지만 학생들이 사용하지도 못하는 강당을 엄청난 거액을 들여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언제나 꼭꼭 잠겨져 있는 강당의 문을 볼 때마다 답답함을 느낀다. 그래서일까, 문틈사이로 보이는 강당의 모습을 신기한듯 바라보는 친구들을 종종 본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조선일보 1996. 6. 18. 독자투고>.

학교는 운동장과 같이 이미 확보된 여가공간을 보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여야 한다. 운동부족으로 학생들의 체력은 떨어지고 체중은 늘어나는 불건강을 치유하기 위해 서도 체력단련장 등을 갖추어서 학생 개인의 체질에 맞는 운동방법을 지도하여야 한다. 예컨대, 한 초등학교의 경우 3백36평방미터 규모의 조립식 건물에 마련된 헬스장에는 러닝머신 등 여덟가지 30점의 체력단련기구가 갖춰져 있고, 신장·체중·비만도 측정계 등 체력측정기구 11점도 준비돼 있다. 이 학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체력을 조사, 비만 어린이 78명을 가려 비만 어린이는 매주 3회씩, 그밖에 다른 어린이들도 체육시간을 활용해 1주일에 한번씩 헬스장을 이용토록 하고 있다(중앙일보, 1996. 5. 13).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부족한 여가공간을 골목길에서라도 찾아주기 위해서 주민은

등을 하는 곳이 있다. 서울시 정릉 1동 12통 주민들은 ‘마땅한 놀이터가 없는 어린이를 위해 폭 5.7미터 길이 60미터의 정릉1동 16번지 주택가 골목길 일부를 차없는 곳으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성북구청에 전달했고, 경찰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조선일보, 1996. 6. 22). 서울시 전농1동은 매월 15일을 ‘차 없는 날’로 정해 전농청소년공부방 앞길 1백여평을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어린이들의 놀이터로 개방하고 주민들로 구성된 ‘골목길놀이터추진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와 자치구들은 올해 안에 종로구 관철동과 중구 명동 거리를 누구나 걸으며 운치를 만끽할 수 있도록 아예 차의 출입을 막는 ‘보행자의 거리’로 운영할 예정이다(한겨레신문, 1996. 7. 17).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동네에서 놀이공간을 확보해주려는 작은 시도들이 주민운동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상업적인 여가공간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가는 여가시설로는 노래방, 비디오방, 당구장, 볼링장, 패스트푸드점 등인데³¹⁾, 이들 시설중 상당수는 법적·행정적으로 청소년의 출입을 금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는 ‘18세 미만 청소년은 노래방을 출입할 수 없다’는 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다. 노래방은 중고생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첫번째 장소인데도 정부는 청소년의 탈선을 원천봉쇄하기 위하여 노래방출입을 금하고 있다. 학생들 자신들도 불건전하다고 생각하는 술집, 록카페, 심야비디오방 등의 출입은 제한되어야겠지만, 가족단위로 많이 이용하는 노래방 조차 출입을 금하는 것은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다. 부족한 여가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의 거리, 청소년문화의 거리 등과 같이 특정 구역을 문화활동의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해결할 수도 있다.

31) 한 조사에 따르면 고교 1,2학년생은 여학생 33.9%와 남학생 19.3%가 친구들과 자주 가는 장소로 노래방을 우선 꼽았다. 이밖에 남학생은 당구장·볼링장(18.3%), 극장·비디오방(11.5%) 집(10%) 음식점(9.8%) 오락실(9.6%) 등을, 여학생은 음식점(28.7%) 집(9.6%) 극장·비디오방(8.5%) 오락실(4.7) 당구장·볼링장(3.8%) 등을 놀이장소로 들었다(경향신문, 1996. 6. 1).

제 4 장 시민적 권리와 자유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인격권에 관련된 조항은 생명의 존중, 생존과 발달을 확보할 권리(제6조),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 부모를 알고 양육받을 권리(제7조), 주체성의 보전(제8조), 부모로부터의 분리금지와 분리된 경우의 아동의 권리(제9조), 가족과의 재회를 위한 출입국의 자유(제10조), 국외불법이송 및 불반환의 금지(제11조), 의견표명권(제12조) 등이다. 정신적 자유에 관련된 조항은 표현·정보의 자유(제13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제14조), 집회·결사의 자유(제15조), 프라이버시와 명예의 보호(제16조), 매스미디어에 대한 접근의 권리(제17조)이고, 인신의 자유와 관련된 조항은 사형·고문 등의 금지,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의 적절한 취급(제37조), 아동의 사법절차에 관한 권리(제40조) 등이다.

위의 사항중에서 인격권에 관련된 조항의 상당수는 ‘가족’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책에서 양육과 보호를 받을 권리(제5장)와 신체의 자유(제6장)는 별도로 다루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시민적 권리와 자유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시민적 권리는 인권 중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사회권이나 복지권의 실현을 위해서도 시민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아동과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는 ‘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널리 제약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권위주의 정부하에 있었기 때문에 시민적 권리가 위축되었는데,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권을 체득하여야 할 것이다.

제12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하한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상 절차규칙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4.1 선서무능력자: 보호를 위한 장치인가 불이익을 제도화시킨 것인가

아동과 청소년의 의견표명권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명시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민법에 의하면 아동과 청소년은 부모가 이혼할 때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15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은 자신이 입양될 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16세이상인 사람만 법정에서 선서가 가능하다. 달리 말하면, 16세미만의 청소년과 아동은 선서능력자가 아니라는 뜻이다. 이는 청소년은 어리기

때문에 판단이 흐릴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가 있다. 그런데, 이 때문에 청소년의 증언이 소홀히 취급될 수도 있다. 특히, 청소년이 피의자인 경우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증언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점에서 볼 때,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인의 6살짜리 딸이 어머니 죽음의 증인으로 법정에 선 사례(한겨레신문, 1996. 6. 15)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검찰이 사건 현장에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어린 아동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판사실에서 검사, 변호인, 피고측 관계자를 배석시켜서 비공개로 증인신문을 벌였는데, 이 사례는 아동의 의견표명권을 존중한 의미있는 선례가 될 것이다.

선서무능력자에 대한 연령기준은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겠지만 평균적으로 12세가 되면 중학교에 입학하고, 14세가 되면 '형사책임능력자'(형법 제9조)가 된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선서무능력자의 하한 연령은 지나치게 높다. 또한, 선서무능력자라 할 지라도 당사자에게 불리한 결정이 최소화되도록 증언할 수 있는 길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처럼 의견표명권은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므로 양부모의 선택과 이혼시 부모의 선택 등과 같이 당사자의 행복추구권과 밀접히 관련된 것은 가능한 하향 조정으로 의사결정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4.2 선거권: 공무원은 될 수 있지만 선거는 할 수 없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한 사회의 구성원이 국정에 참여하는 중요한 통로이고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런데, 20세미만 청소년은 공무원이 될 수 있지만 선거권을 가질 수는 없다. 17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주민등록법 제17조), 18세가 되면 병역의무를 갖고(병역법 제5조) 공무를 담당할 수 있지만, 만 20세가 되기 전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선진외국의 예에 비추어 볼 때, 대체로 17세내지 18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선거권의 연령을 20세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국민의 한사람인 청소년의 시민권을 규제한 것이다. 물론 선거권의 부여는 당사자의 지적 능력과 사회적 책임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평균적으로 만 18세가 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거나 대학생이 된다는 점에서 볼 때, 세금을 내는 직장인이거나 지식인의 상징집단인 대학생에게조차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은 조리에 맞지 않는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확장과정을 볼 때 초기에는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계층에서, 병역의무를 지는 성인 남자계층, 그리고 성인 여자계층으로 확대되었다. 이처럼 선거권은 납세의무, 병역의무와 같이 국민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계층에게 권리로서 준다는 성격이 강하므로 근로자와 군인이 되는 18세까지는 하향조정되어야 한다.

제13조

1. 아동은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가.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

나.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공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4.3 표현의 자유: 중고등학생은 수업중에 손톱검사까지 받아야 한다.

많은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옷차림과 몸단장을 등교길 교문에서 검사하고 심한 경우에는 수업시간중에 손·발톱까지 검사한다. 교복을 입지 않고 사복을 입는 학교나 학년에서는 더욱 심하다.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교사의 생활지도간에는 긴장이 있을 수 있지만, 학교에서는 확실적인 교복을 입고, 학교를 벗어나서는 자유분방하게 생활하는 것은 교육적이라고 할 수 없다. 시대와 유행의 양상이 바뀔만큼 학교당국과 교사의 시각도 전통적인 외생활과 패션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학생들에게 개성있게 멋을 내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의 교육적인 판단과 학생의 표현의 자유는 조화를 이루어야지, 어느 일방의 희생이 강요되어서는 안된다.

‘두발규제·교사체벌’ 개선 요구 높아

전교조신문이 1996년 10월 서울 지역 중·고생 48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학생들은 학교측에서 이뤄지고 있는 비인격적인 대우나 권리침해로 두발규제(30.0%)를 제일 먼저 꼽았으며 교사들의 폭언 및 체벌(20.5%), 성적에 의한 차별대우(15.7%), 강제보충수업(10.2%), 학생의 변호권 없이 이뤄지는 징계(6.7%), 교복착용(6.6%), 뽀뽀소지 규제(4.3%)도 함께 지적했다.

학생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이유로 학생들의 38.3%가 입시위주의 교육을 지적했다며, 학생을 인격체로 바라보지 않아서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22.9%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학생들의 낮은 권리의식(14.5%), 학급당 학생수의 과다(10.5%), 학생회가 힘이 없어서(9%) 순이었다.

학생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학생을 인격체로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 정립(36.1%)과 입시위주 교육철폐(30.0%)를 지적했다, 이어서 학생들의 권리의식 확립(15.2%), 학생회의 역할 강화(7.6%), 학급당 학생수의 감축(7.4%) 등이었다. <전교조신문 1996. 10. 30>

제14조

1.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 및,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 후견

인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를 감독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여야 한다.

3.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권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4.4 사상의 자유: 국가가 통제하는 범위내에서만 사상의 자유를 갖는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그 자체로서 소중할 뿐만 아니라 다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수단적인 자유이기도 하다. 즉,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없을 때 그 의미는 반감될 것이다. 따라서,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공공의 안전,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반국가단체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뜻으로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법집행과정에서 다른 법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어 왔다. ‘국가안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시민권의 규제를 합리화하기도 하였는데, 특히 10대 후반과 20대 초반 대학생의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는 흔히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제한되어왔다. 심지어 학생들이 막시즘에 바탕을 둔 서적을 소지하거나 시위현장에서 문건을 주워 가지고 있는 것조차 ‘이적표현물 취득죄’를 적용하기도 하였다. 피의자를 기소하기 위해서 검사는 표현물이 ‘이적성’이 있으며, 취득자에게 ‘이적목적’이 있음을 입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취득 자체를 이적목적으로 추정하여 왔다. 오히려, 피의자에게 학문연구나 예술활동 등 별도의 이유를 제시하도록 한 것이다.

서울 고등법원의 새로운 판례는 국민, 특히 청소년의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규제해온 국가보안법을 보다 신중히 적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예컨대, 단체 성원간 토론의 경우에는 토론 내용이 설사 북한의 주장과 뜻을 같이한다 하더라도 토론만 가지고 반국가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다. 이적표현물 취득죄의 경우에도 반포나 판매행위와 달리 취득은 이적목적이 곧 바로 추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전력 등을 들어 이적 목적을 쉽게 추정한다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이를 목적범으로 규정한 법 취지가 무색하게 된다는 이유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밝혔다³²⁾. 이밖에도 국가보안법은 시민의 기본권을 여러측면에서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인권단체와 국제기구로부터 여러차례 개정 또는 폐지되어야함이 주장되었다.

32) 1992년 3월 대법원에서도 논란이 일어 다수 의견은 “취득의 경우에도 이적 목적이 추정된다”고 판시했으나, 당시 이회창·이재성·배만원 대법관은 이번 서울고법 판결과 같은 취지로 입증 책임이 검사쪽에 있다는 소수의견을 냈다(한겨레신문, 1996. 5. 11).

유엔 도마 오른 한국 인권

또다시 한국의 인권 상황이 유엔의 도마에 올랐다. 지난 3월18일부터 6주간의 예정으로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인권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제52차 유엔인권위원회 정기회에서는 국제민간단체(NGO)들이 한국의 인권침해 사례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중략).

이번 인권회의에는 한국에 관해 두개의 보고서가 제출됐다. 지난해 6월 한국을 방문해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인권상황을 조사한 라비드 후사인 특별보고관의 ‘한국방문 보고서’와 쿠마라수와미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이 제출한 ‘위안부 문제 진상조사보고서’가 바로 그것이다. 이중에서도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한국에서 의사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조사한 뒤 작성한 후사인 특별보고관의 ‘한국방문 보고서’다. 보고서는 지난 93년 3년 임기의 위원국에 선출된 뒤 재선돼 98년까지 인권위원국으로 활동할 한국에 대해 인권위원회에 제출된 최초의 공식보고서로 앞으로 한국의 인권상황을 거론하게 될 국내외 인권단체들에게 기본지침 역할을 하게 된다. (중략)

‘모든 형태로든 구금 또는 구속된 사람들의 인권’을 논의하는 의제8이 논의된 인권회의에서 지난 4월9일 정식으로 발표된 후사인의 ‘한국방문 보고서’는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과 노동자들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부정하는 불공정한 노동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그는 “국가보안법이 법원의 해석에 따라 공공연히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이거나 학술적 내용의 자료를 소지한 데 대해서뿐 아니라 정부 정책을 포함한 공공문제에 관한 사고, 믿음, 의사표현까지도 불법으로 규정하는 데 우려를 표시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대표로 발언권을 신청한 박창일 유엔 차석 대사는 “93년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에 특별히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왔다”며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장치이며 한국 국민들은 이 법이 필요하다는 데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근 법을 개정해 인권침해의 소지를 줄였고, 앞으로 국가안보 수호에만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겠다”며 “자유민주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이념에 대한 학술적 연구나 표현이 국보법으로 처벌되기는 불가능하다”는 말로 학술연구자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가까운 장래에 이뤄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박 차석대사에 이어 민간단체 대표로 발언권을 신청한 장해선(한국인권단체협의회 간사)씨는 “정부대표는 국가보안법을 최근에 개정했다고 주장했지만 그것은 문민정부 출범 전인 91년 5월 집권여당이 토론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이고, 그 뒤로도 92년 7월 유엔인권이사회 의 국보법 철폐 권고안, 93년 국제노동기구 산하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제3자개입금지조항 폐지 권고, 유엔경제사회문화권위원회(AJ약)의 제3자개입 금지, 복수노동금지 조항 개정 권고 등 수없이 많은 권고안이 나왔지만 한국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국보법으로는 근본적인 자유가 침해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정치적 신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기수를 계속 구금하는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이고, 국보법으로 학술 연구자를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지만 문민정부 출범 뒤인 지난 93년 <한국사회의 이해>라는 책으로 대학교수가 구속됐던 사례가 엄연히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정부 대표는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후략) <한겨레 21, 제106호(96. 5. 2)>

4.5 종교의 자유: 행정적인 편의가 종교의 자유에 우선한다.

각 종교마다 가르침과 종교의식이 다르기 때문에 종교는 시민생활을 크게 좌우한다. 국교를 채택하는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국민들에게 종교적 자유를 부여하고 우리나라 헌법도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학생들의 종교적 자유는 교육행정의 편의에 따라서 크게 제약되고 있다. 사립학교종에는 기독교(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의 특정 종교재단이 설립운영하는 학교가 많은데, 이 학교에서는 종교교육을 교과목에 편성하여 교육하고 있다. 많은 경우 초중고등학생이나 학부모는 학교를 선택할 권한이 없고 학교에서도 학생을 선택할 권한이 없으며 학생의 주거지에 따라서 특정한 학교에 학생들이 배치된다. 따라서 학생들은 자신의 종교와 다른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배치되어서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종교교육을 받을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92: 95).

종교의 자유는 매우 기본적인 권리인 점에서 비추어볼 때, 학교 배정시 중요한 선택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선지원 후배정제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부여하고 비록 종교재단에서 설립한 학교라도 학생에게 종교교육을 필수과목이 아닌 선택과목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와 같이 다양한 종교가 있고, 종교의 선택이 비교적 자유로운 사회에서 행정적인 편의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

제15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4.6 결사의 자유: 학생회 대표의 피선거권도 성적순이다.

청소년의 결사의 자유는 크게 제약되어 왔다. 교육법은 학생의 정치활동을 불법시하고 대부분의 학교당국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최소한만 허용한다. 심지어 학생회의 대표를 뽑는데 피선거권의 자격으로 우수한 성적을 요구한다. 한 학교는 출마자격으로 5.0만점에 3.5점이상을 요구하는데, 이 때문에 학생회의 간부는 성적이 중상위권이상인 학생들이 차지하고 학생회는 이들의 씨줄처럼 전락된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을 때 ‘성적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 사회에서 학생 대표로 입후보하는데 성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학교내에서 결사의 자유는 전체 사회의 민주화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한다. 사회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컸던 1986년, 시교육위원회가 ‘고등학교 학생회 운영지침’을 내린 뒤 각 학교가 직선제 학생회를 채택했다가 1990년 이후 다시 간선으로 돌아가거나 침체기에 빠진 학교가 적지 않다. 심지어 상당수의 학교에서는 학생회비를 학생회에서 예산을 짜서 집행하지 않고 학교당국이 체육특기생에게 지급하거나 교외지도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하기도 한다.

학생회활동을 규제하는 학교에서는 학생의 동아리활동도 규제하고 있다. 학교내에서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는 동아리방을 배정하지 않고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 등의 이름으로 교과공부만을 강요함으로써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다. 중고등학생들은 학교내에서 하는 집단활동 뿐만 아니라 학교밖에서 혹은 학교간의 자치활동도 크게 제약을 받는다. 서울지역에는 홍사단 고등학생 아카데미, 희망, 참일꾼청소년 배움터, 푸른 벗, KSCM 같은 고등학생들의 단체가 있는데, 학교장의 허락을 받지 않은 외부 동아리 활동은 ‘음성씨클’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서울의 한 상업학교에서는 지난해 학교밖 동아리에 들어있는 1백여명의 학생들에게서클을 탈퇴한다는 각서를 쓰게 했다. 학교내 폭력씨클이 적발되자 학교밖 동아리까지 무차별적으로 제재 대상이 된 것이다. 이처럼 청소년단체의 활동 조차 학교가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청소년의 권리의 침해이다.

민주주의는 교과서만으로 배울 수 없고, 생활속에서 자치활동을 통해서 그 방법을 익힌다. 이점에서 학교의 안과 밖에서 청소년의 자치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학칙을 개정하고 학교당국에 의한 부당한 규제를 엄격히 감시해야 한다. 나아가서, 학생회와 동아리활동을 장려하고 학급운영을 민주적으로 함으로써 자치를 생활화해야 한다. 특별활동(CA시간)을 전일제로 운영하거나 한달에 하루 정도는 학교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한 대안이다.

학생의 날 기념행사 실종

고등학교 학생이다. 고등학교에 입학해 ‘학생의 날’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다. 학생이 자신의 기념일을 여태껏 몰랐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한다.

학생의 날 제정의 계기가 된 광주학생운동은 3.1운동, 6.10만세운동과 더불어 일제에 전국적 규모로 대항한 3대민족해방운동의 하나였다. 광주학생운동은 분명히 순수한 민족운동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한때 순수한 민족운동이 불온시 돼 학생의 날이 부활된 이후에도 11월 3일에 학생의 날 기념행사를 갖는 학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왜 학생의 날을 인정하지 않았는지, 왜 기념식을 하지 않는지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이날은 우리 학생들의 자랑스러운 날이고 스승의 날 기념식을 열듯이 학생의 날 기념식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학생의 날 행사를 통해 건전한 고등학생 문화를 형성하고 학교사회에 침투해 있는 저질문화를 몰아낸다면, 그리고 선배들의 애국애족정신을 배울 수 있다면 정말로 가치있는 일이 아닐까<한겨레, 1996. 11. 6, 독자투고>.

자치(自治)는 학교에서부터

6월 30일 제4대 직선제 학생회장 선거가 있었다. 지난 1991년 학생들의 거센 요구를 학교측이 받아들여 대의원에 의한 간접 선거였던 기존의 학생회장 선거 방식을 학생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투표하는 직선으로 바꾸었다. (중략)

그후로 3년, 올해는 무언가 학생들의 대표기구로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했는데 올해의 학생회장 선거는 한마디로 지리멸렬했다. (중략)

학교는 민주주의를 배우고 익히며 실천하는 곳인데, 어찌면 하나같이 기성 정치인들의 선거 풍조를 모방하고 있을까. 선전 벽보의 무질서한 난립같은 물량공세, 의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내놓은 진짜 공약(公約), 선심공약 등 그나마 다행이라면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이 정착되었다는 것이다.

출마자들의 선거 공약(표 참조)은 거의 해마다 되풀이 되는 것이었다. 출마 후보자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점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직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것과 직선제의 참의미를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신문고제 실시(학급회의 건의사항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므로 학생회에서 건의함을 만들어 수렴하여 학교와 교섭)
- 자주적인 동아리 활동 보장(동아리 지원 예산을 늘리고, 동아리 허가제를 신고제로)
- 도서관 시설 개선(냉난방 시설 완비)
- 음악실 구조 개선(음악실 시설 현대화)
- 특별활동 격주제 실시(현 주1시간을 2주 2시간이나 전일제로)
- 체육대회 실시
- 농구장 지면 보수(농구장 땅 패인 것을 흙을 깔아 고르게 함)
- 학급회의 활성화(학급회의 주제는 다음 주 주훈)

그러나 학생회 운영이 전혀 알맹이가 없는 것만은 아니다. 작년에는 보충수업 실시를 놓고 대의원회를 열어 ‘보충수업 자율화’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도 했다. 이 결정을 바탕으로 학생회와 교감 선생님의 협상이 있었으며, 학생회에서는 1차 대의원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보충수업 실시에 대한 학생들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교육시설 개선에 대해 건의했다. 이를 통해 교감 선생님께서 부모님 동의서가 있는 학생에 대해서만 보충수업을 제외해 주겠다는 것과 교육시설 개선을 위해 도서 대출을 늘리고 냉난방 시설과 시청각실 시설 개선을 약속받기도 했다.

스승의 날 선물값이나 정하곤 하던 학생회에서 이런 안건으로 회의를 하고 학교와 협의를 한 것 등은 눈부신 발전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여전히 30℃를 넘나드는 수은주를 바라보며 바람불기만 기다리고 있고, 교실엔 아직도 교육용 텔레비전이 없으며, 보충수업도 날로 그 위세를 더하고 있다. 학생회 조직표엔 부서가 있고 부장도 있고 차장도 있다. 얼굴을 보아야 이야기를 할텐데 학생회의실은 특별보충수업반 교실로 쓰이고 있으니 학생회 활동은 어디서 하나, 학생회에서 행사를 기획하고 싶은데 누구랑 하나! 누가 손발이 되어 줄텐가.

이처럼 지금 대부분의 학생회는 박제되어 전시된 호랑이다. 이 박제된 호랑이에게 피가 돌고 숨이 깃들게 하여 살아 움직이게 하는 생명수는 현재의 학생 조직 가운데 가장 활동력이 뛰어나고 자치 성격이 강한 동아리의 참여다. <우리교육, 중등용 1994. 8>

제16조

1.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2.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4.7 사생활권: 학생의 사생활은 침해되어도 되는가?

청소년들의 사생활은 학교와 사회에서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교실에서 소지품검사는 관행화되어 있다. 담배, 술, 음란 도서와 비디오테이프 등 미성년자인 학생이 소지해서는 안되는 물건을 빼앗기 위해서라지만 이는 영장없이 수색하고 압수하는 것과 같이 명백히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소지품검사는 교육적 명분이라도 있지만, 학생의 신상정보가 교직원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유출되어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생활의 침해이다. 공공기관이 국민 개개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개인의 사생활권을 절대 불가침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우리 나라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학교는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의 신상정보를 관리하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법 적용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이다.

그러나 현실은 대량의 학생 신상정보가 학교에서 유출되고 있다. 시중에 유출되고 있는 학생 신상정보는 학교에서 작성, 보관하고 있는 각종 학생명부를 망라하고 있다. 학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된 출석부는 물론 비상연락망, 학생명감(사진첩), 아동명부도 유출되고 있다. 심지어 학부모의 직업, 학력, 소득수준 등이 자세히 기록된 가정환경조사서와 교무수첩의 학생신상일람표까지 업자의 손에 넘겨져 학원, 출판사, 학습지 회사 등에 영업·홍보자료로 팔리고 있다³³⁾.

이같이 대다수 학교에서 학생명부가 유출되는 것은 학교측의 부실한 자료관리체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은 학교에서 필요이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신상정보를 파악하는 것 자체이다.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자료는 출석부와 생활기록부에 불과한데도 거의 모든 학교에서 학교장의 재량으로 5~7종의 신상자료를 작성하고 있다. 이러한 신상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로 유출되어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는 학생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교육적으로 필요한 최소한만 파악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사생활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제17조 당사국은 대중매체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인정하며, 아동이 다양한 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 특히 아동의 사회적, 정신적, 도덕적 복지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가짐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 가. 대중매체가 아동에게 사회적, 문화적으로 유익하고 제29조의 정신에 부합되는 정보와 자료를 보급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 나. 다양한 문화적, 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를 제작, 교환 및 보급하는데 있어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 다. 아동도서의 제작과 보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 라. 대중매체로 하여금 소수집단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의 언어상의 곤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 마. 제13조와 제18조의 규정을 유념하며 아동복지에 해로운 정보와 자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지침의 개발을 장려하여야 한다.

33) 학생신상정보를 수집, 판매해 온 박혁기 씨(미래투자정보원 원장)에 따르면 서울 소재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거의 모든 학교에서 학생명부가 유출되고 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엔 졸업생 명단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마포구 진도빌딩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에는 구(區)별로 각 학교의 학생명부가 3백여 개의 파일로 분류돼 책장에 꽂혀 있었다. 또 서초구에 있는 대성기획(실장 이인재)도 자료보관실을 만들어 각종 학생명부를 보관, 판매하고 있었다(우리교육, 1994. 12: 50~56).

4.8 대중매체 접근권: 청소년은 대중매체를 수용하되, 만들지는 못한다.

아동과 청소년은 대중매체의 강력한 수용자이다. 현재의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사회생활을 지도받기 전에 텔레비전을 통해서 사회를 알게 된다. 10대전반 청소년의 하루 여가시간중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라디오를 청취하는 시간이 가장 길다. 주말에 여가시간이 늘어날 수록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 따라서 증가하면서, 청소년의 패션과 유행어 그리고 사고방식은 교과서보다는 텔레비전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는다.

최근에는 비디오와 컴퓨터도 청소년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대중매체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음란물과 폭력물은 주로 비디오와 컴퓨터를 통해서 유통되고 있다.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가 서울시내 남녀 중고생 9백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컴퓨터 보유 및 이용실태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55.2%가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고, 영상 화면을 입력할 수 있는 스캐너를 보유한 경우도 11.6%나 되었다. 하루 평균 컴퓨터 이용시간은 63.5%가 1시간 정도였고, 활용에 대한 조사에서는 73.6%가 오락 등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해 그들이 컴퓨터를 어떤 대상으로 여기는지 짐작케 하고 있다. 62.9%가 음란 영상물 접촉 경험이 있고, 그 가운데 89.5%는 친구를 통해서, 2.6%는 통신이나 상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응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대중매체를 어떻게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일상생활에 대중매체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는다. 대중매체를 올바르게 이용하자는 '미디어교육'은 영국과 호주, 미국의 일부 주에서 학교교육 과정으로 체계화해 있는데 비해 우리 교육부와 학교당국의 미디어 교육에 대한 인식수준은 극히 낮고 주요 교육주체인 학부모와 학생들조차 수동적인 자세에 머물러 있는 게 현실이다.

WTO 체제하에서 문화시장개방과 탈규제 사회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음란·폭력 영상물로부터 어린이·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대중매체교육은 매우 시급하다. 한 시민단체는 미디어 일기쓰기, 비디오감상문 쓰기 공모, 영상학교 운영, 영상제작단 구성등의 프로그램으로 미디어교육을 펴고 있는데, 이러한 미디어교육은 학교교육과정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초·중·고생 건전 미디어 교육

서울YMCA는 1996년 6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를 '미디어교육 운동'캠페인 기간으로 설정, 초·중·고등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영상언어 '읽기' '쓰기' '가르치기' 3단계 운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1단계 '영상언어 읽기'의 프로그램은 '좋은 비디오 읽고 비디오 감상문 쓰기'와 가정에서의 미디어생활을 기록하는 '미디어일기쓰기'. 이달 25일 '청소년을 위한 좋은 비디오' 2백편을 엄선한 목록집을 20만부 제작해 학교와 좋은 비디오숍 경

영자모임 ‘옴과 버금’등에 배포한다. 이를 교재로 비디오 감상문 공모전(7월 25일 ~8월15일)을 실시하고 우수 비디오감상문은 단행본 책자로 발간한다. 서울YMCA는 ‘미디어일기장’ 5만부를 제작, 7월중 학교, 시민단체에 배포하고 여름방학기간에 ‘미디어일기쓰기’ 시범학교와 시범가정을 운영한뒤 사례발표회를 갖기로 했다.

2단계 ‘영상언어쓰기’는 ‘비디오편지쓰기’와 ‘영상작품만들기’로 짜여졌다. ‘비디오편지쓰기’는 초·중·고등학생 20명을 선정, 일상적인 삶을 필름과 카메라를 이용해 영상화한 뒤 미국 뉴욕의 DC TV에 소속된 어린이·청소년 영상제작팀과 교류해 외국문화에 대한 이해폭을 넓혀준다. 또 영화읽기와 영상창작 활동의 경험을 갖기 위해 영상학교와 영상제작단을 운영, 건전한 대안문화를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를 갖는다.

마지막 ‘영상언어 가르치기’단계에서는 학부모에게 ‘어린이 TV·비디오 시청지도법’등을 가르치는 미디어교육 특강과 교사들을 위해 ‘비디오감상반·TV모니터 운영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문화일보, 1996. 6. 12>.

4.9 정보접근권: 청소년의 정보접근권을 확대하여야 한다.

우리는 정보화사회를 지향한다고 하지만 청소년의 정보접근권은 선진외국에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없다. 최근에는 행정전산망 등 공공정보망이 확충되고 있지만,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보는 많지 않고 공중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취득하기에는 전화료, 정보이용료가 소득이 없는 청소년에게는 부담이 된다.

따라서 청소년의 정보접근권을 획기적으로 신장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보를 수집, 가공, 정리하여 체계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한국청소년개발원 등이 주관하여 ‘청소년정보마을’을 운영하고 있지만 청소년 관련 정보의 종류나 양에서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다. 프랑스의 ‘청소년정보문헌센터’와 같은 공익기관이 전국의 주요 도시에 설치되고 독자적인 정보망을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청소년에게 많은 정보를 정리하는 것과 함께 이를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이 가정, 학교, 직장 그리고 여가시설 등 어디에서나 필요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정보화와 함께 ‘인터넷 카페’와 같은 새로운 장소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 차를 마시며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는 시청이나 우체국 등 공공시설의 로비에 10평 남짓한 규모의 카페에 전용회선과 팬티엄급 PC를 갖추면 인터넷에 접속하여 ‘정보의 바다’를 항해할 수 있다³⁴⁾.

34) 1996년 6월 우리나라에서 처음 설치된 광명시청 인터넷 카페는 ‘정보엑스포 96’의 인터넷 보급계획에 따라 한국통신이 1천만원을 들여 설치한 것으로 이달중 모두 26곳에 생긴다. 한국통신은 데이콤과 함께 올해말까지 전국 1백곳에 인터넷 카페를 만들 예정이다(동아일보, 1996. 6. 8).

또한,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차단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불온통신’을 단속할 수 있고, 음란물과 폭력물과 같이 사회통념상 문제가 있는 비교육적인 정보를 규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필라델피아 법원이 인터넷 음란물 게재를 불법화한 미 연방정부 조치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림으로서 통신의 자유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시설의 이용에서 연령규제가 불가피하듯이 매체물의 접근도 연령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사춘기 관련 모든 정보 한곳에 모아

ADOL은 사춘기에 있는 자녀를 둔 부모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생들에게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http://education.Indiana.edu-cas-adol-adol.html>).

미국 인디애나대학 사춘기연구센터(CAS)가 제공하는 이 사이트는 사춘기에 있는 소년·소녀들의 사회적 감정적 성장과 발전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월드 와이드 웹(WWW)상에 있는 사춘기 관련 각종 정보를 모아놓은 곳이다. 어느 중학교 교사가 “나는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인터넷을 6시간이나 여행했으나 가치있는 것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불평한 것처럼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무작정 헤매는 것을 막아준다. ‘교육자료모음’ ‘정신건강’ ‘건강 위험요소’ ‘수업계획’ ‘교사이야기’ ‘10대들만의 세상’ 등이 ADOL의 인기서비스 항목.

‘교육자료모음’은 사춘기 세대의 교육관련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이 곳에서는 ‘부모에게 흥미있는 장소’ ‘가상중학교’ 등의 사이트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직접 접속도 가능해 교사 뿐만 아니라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관심을 끈다.

‘건강위험요소’는 사춘기에 생길 수 있는 각종 질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우울증 등으로 고생하는 자녀를 둔 부모에게 도움을 준다. 어린이 학대, 사춘기 성장, 자살, 성적 학대 등 사춘기에 생길 수 있는 각종 정신적·신체적 질병에 대한 정보가 자세한 설명과 함께 항목별로 나열돼 있다.

‘10대들만의 세상’은 사춘기 소년·소녀들이 전세계 10대들과 자신들만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장소. 10대들이 쓴 소설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전자 잡지 등의 사이트를 소개한 ‘틴진’, 10대들의 공통과제인 TV·라디오·영화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소일거리’ 등 사춘기 학생들은 자신들만의 ‘가상공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중앙일보, 1996. 5. 30>.

제 5 장 양육과 보호를 받을 권리

아동과 청소년은 일차적으로 부모와 가족에 의해서 양육되고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부모나 보호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양육을 할 수 없거나, 부모의 이혼, 가출 등으로 양육을 기피할 때, 부모가 양육하고 싶어도 빈곤, 장애, 수감 등으로 사실상 양육할 수 없을 때 전통적으로 국가가 보호하여 왔다. 최근에는 기혼 여성의 취업으로 부모가 아동과 청소년을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이 바뀌면서 영유아의 ‘보육’과 아동과 청소년의 ‘방과후지도’ 등은 점차 사회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일차적인 양육책임이 있는 부모와 보호자가 아동과 청소년을 적절히 양육하지 못할 때에 국가 개입은 불가피하다. 그중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그리고 방임은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 발달에 위협이 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자녀를 키울 때는 “매를 아끼지 말라”는 훈육지침이 있어왔기 때문에 학대에 대해서 관대했지만 잘못에 대한 ‘회초리’의 수준을 넘는 신체적 학대와 부모와 가까운 친척에 의한 성적 학대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에 충분하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부모에 의한 양육과 국가의 원조’에 관한 사항은 부모의 제1차적 양육책임과 이에 대한 국가의 원조(제18조), 부모에 의한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의 보호(제19조), 가족이 없는 아동의 양호와 원조(제20조), 입양(제21조), 난민인 아동의 보호와 원조(제22조) 등이 있다.

또한, ‘아동으로서 보호될 권리’에 관한 사항은 경제적 착취와 유해노동으로부터의 보호(제32조), 마약, 향정신성 약품으로부터의 보호(제33조),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로부터의 보호(제34조), 아동의 유괴·매매·거래의 방지(제35조), 기타의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의 보호(제36조), 무력분쟁에 있어서의 아동의 보호(제38조), 희생당한 아동의 심신의 회복과 사회복귀(제39조) 등이다.

제18조

1. 당사국은 부모 쌍방이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공동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법정 후견인은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그들의 기본적 관심이 된다.
2.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당사국은 아동의 양육 책임 이행에 있어서 부모와 법정 후견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아동보호를 위한 기관, 시설 및 편의의 개발을 보장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취업부모의 아동들이 이용할 자격이 있는 아동보호를 위한 편의 및 시설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1 편부모가정의 생활보호: 편부모가정의 청소년이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부모의 이혼과 별거 그리고 가출 등으로 편부모가족이 늘어나면서 많은 아동과 청소년이 부모의 보호를 적절히 받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편부모 가정은 지난 66년 39만가구였으나 70년 59만가구, 80년 74만가구, 90년 89만가구, 95년의 경우 1백만가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편부모 가정이 늘어나는 것은 각종 사고나 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의 증가와 함께 가정불화로 이혼·별거하는 부부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³⁵⁾.

편부모 가정의 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양쪽의 역할을 모두 해주어야 한다는 어려움과 함께 자녀들의 정서적 불안감,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부모가 있는 가정에 비해 자녀들이 비행 청소년으로 자랄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게 된다. 현재 정부는 저소득 편부모 가정만을 대상으로 자녀양육비와 학비, 생활비를 일부 보조해주고 있지만 가족의 욕구와 문제에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초·중학교에서 도시락을 준비하지 못해 끼니를 거르는 결식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빈곤보다는 편부모가족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1996년 3월말 현재 서울시내 초·중학교 학생중 도시락을 가지고 오지 못한 학생은 3천3백18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7.8%, 94년에 비해 34%나 증가한 것이다³⁶⁾. 이 수치에는 사회단체 등의 지원을 받는 학생들을 제외한 것이어서 실제 결식학생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편부모가족에 대한 보호사업을 다양화하고 보호수준을 크게 향상시켜야 한다. 편부모가족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상담사업 등 지지적 서비스, 가사지원, 방과후 자녀지도, 학교급식 등 보충적 서비스, 그리고 가정위탁보호, 일시적 혹은 단기간 시설보호 등 대리적 서비스로 가족해체를 예방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편모슬하 어린이 ‘집 지키기 바빠요’

편부·모 슬하에서 자라는 어린이 3명중 2명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생업활동에 바빠 방과후 아무런 보살핌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4일 나타났다.

- 35) 복지부가 1995년도에 아버지와 자식들만 사는 가정 5천가구에 대한 편부가정이 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이중 46.9%가 이혼, 28.4%가 배우자 가출을 꼽아 7할이상이 가정불화 때문이며, 다음으로는 배우자 사망이 21.8%, 미혼부 1.3%, 배우자 심신장애 0.9%, 기타 0.8% 순이었다. 편모가정의 경우에는 배우자 사망(66.2%)이 가장 큰 요인이었으며 이혼은 18.9%였다(한겨레신문, 1996. 5. 5).
- 36) 결식 학생은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증가폭이 더욱 커 1994년 1천6백21명에서 1995년 2천1백47명, 1996년 2천5백20명으로 1994년 대비 각각 32.4%, 55.5%가 늘어났다(중앙일보, 1996. 5. 13).

서울 관악구 보건복지사무소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관내 저소득 주민 1천9백7세대 전체를 대상으로 사회복지 욕구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중 모자·부자세대 3백66세대 가운데 2백45세대의 자녀가 방과후 학원에도 가지 않고 학습지도도 받지 못한 채 혼자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편부, 편모들은 자녀들을 위해 자원봉사 받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2백2세대 (57%)가 학교공부, 46세대 (13%)가 진로 등 생활지도 상담, 39세대 (11%)가 특기지도를 들었다.

또 자녀가 학교에 재학(고등학교까지) 중인 7백20세대 가운데 3백71세대 (51.5%)는 '가계 살림에 신경 쓸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응답했고, 1백50세대 (20.8%)만이 '경제적 부담이 크지만 학원에 보내거나 학습지를 구독케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 가운데 1백89세대 (26.3%)의 자녀들은 점심 도시락을 지참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자녀의 학습부진 원인에 대해 응답한 5백92세대 가운데 2백47세대 (41.7%)가 '지도할 어른이 없어서'라고 답했으며, 다음으로 1백36세대 (22.9%)가 학원에 보내지 않아서, 61세대 (10.4%)가 공부에 관심이 없어서, 52세대 (8.9%)가 공부할 공간이 없어서 등으로 밝혔다.

그러나 조사대상 학부모들은 공부할 여건을 조성해 주지 못하고 있지만 95% 이상이 자녀가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수준을 갖기를 원할 만큼 교육열이 높아 방과후 자녀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력히 희망했다<한겨레신문, 1996. 5. 5>.

5.2 이혼시 아동양육: 이혼후에 자녀양육이 기피되고 있다.

최근 이혼이 급증하면서 이혼 후 자녀의 양육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혼신고 건수 대 혼인신고건수의 비율을 보면, 70년 4.3%, 90년 11.9%, 95년 18.1%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이혼사유도 가정폭력, 술주정, 외박, 늦은 귀가 등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참지 못해 이혼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법원이 발표한 이혼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이혼사유중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비율은 70년 58.7%, 80년 48.9%에서 1995년엔 42%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비율은 70년 6.7%, 80년 7.9%, 90년 14.9%였으나 지난해는 20.5%로 급증했다.

이처럼 이혼이 늘어나는 것은 여성의 지위향상으로 부부관계가 동등해져가고 있는 만큼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용납하지 못하고, 기혼여성의 취업으로 이혼후에도 적절한 생활이 가능하며, 재혼의 기회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혼양식도 재판에 이르지 않고 합의로 이혼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혼이 늘어나면서 이혼후 자녀양육을 서로 기피하기 때문에 자녀의 생존권이 크

게 침해당하고 있다.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과 청소년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수용보호되거나 소년소녀가장세대로 지정되어서 정부의 보호를 받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년소녀가장은 1995년말 현재 8,107세대(15,118명)인데, 발생원인은 부모의 사망이 전체의 52%로 가장 많지만, 부모의 가출과 행방불명, 이혼 등 인위적인 가정 파괴로 인한 발생건수도 10가구중 4가구꼴로 나타나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부양의식이 희박해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소년·소녀가장세대들은 친척집(50%)에 살기도 하지만, 영구임대(17%), 자가(16%), 전세(5.4%), 사글세(11%) 등에서 어렵게 살고 있다.

경제적 능력이 있는 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기피할 때에는 아동과 청소년을 부양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그 부모에게 부양비용을 청구하는 구상권(求償權)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³⁷⁾.

자녀양육을 기피하는 상당수의 부모들은 경제적 여건이 어렵고 별거와 재혼 등으로 사실상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리양육이 불가피하기도 하다. 이러한 경우 아동과 청소년은 법정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지 않고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과 청소년은 개인이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용보호받기도 한다. 정부는 30명 이상을 수용보호할 수 있는 시설과 재원을 갖춘 경우만 법인으로 인정하고 소규모시설은 불법시하고 있는데 아동과 청소년의 생존권을 생각할 때 시설의 규모보다는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여 정부 지원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이혼이나 가족결손으로 방치된 아동과 청소년을 단지 법적으로 부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조차 그들의 생존권을 방치하는 복지행정은 시급히 개혁되어야 한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복지시설을 ‘인가’하여서 법의 테두리내에서 지원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또한 이혼을 한 후에 부모는 자녀를 면접할 면접교섭권이 있지만, 자녀는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다른 한쪽의 부모를 면접할 ‘면접교섭권’을 부인하는 현행 민법은 국제협약 제9조 3항을 위반하고 있다.

제19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

37) 보건복지부는 1997년부터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을 부양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노인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부양비용을 청구하는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민법과 대법원 판례는 부모가 자식에게 직접 부양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제삼자에게 구상권을 부여하기는 처음이다(동아일보, 1996. 8. 20).

회계책의 수립은 물론, 상기된 바와 같은 아동학대 사례를 여타형태로 방지하거나 확인, 보고, 조회, 조사, 처리 및 추적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

5.3 부모의 신체적 학대: 부모에 의한 자녀의 폭력이 방치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가정폭력은 ‘집안일’로 간주되어서 국가의 개입은 기피되어 왔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가정내에서 남편에 의한 아내의 구타, 부모에 의한 자녀의 신체적 학대와 같이 힘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히 신고하고 경찰개입을 강화하도록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정부는 가족 및 아동관련 단체의 위기 전화를 지원하고, 경찰서 여성상담실등을 적극 활용하며, 가정폭력에 대한 112신고 전화도 활성화해야 한다.

부모에 의한 자녀의 학대는 가정폭력의 일종이지만, 자녀의 생활지도를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관대하게 간주되고 별다른 대책없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정으로 되돌려 보내는 경향이 있다³⁸⁾. 이 경우 신체적 학대는 해결될 수 없으므로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의 조사·질문권, 피해자에 대한 임시수용보호, 가해자에 대한 수감명령제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가정폭력의 강도가 강하고 반복된 경우에는 가해자를 일정기간 격리시키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제20조

1.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족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족환경에 있는 것이 스스로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 받을 권리가 있다.
2.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러한 아동을 위한 대체적 보호를 확보하여야 한다.
3. 이러한 보호는 특히 양육위탁, 회교법의 카팔라, 입양, 또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아동 양육기관에 두는 것을 포함한다.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우에는 아동 양육에 있어 계속성 보장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아동의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및 언어적 배경에 대하여 정당한 고려가 배풀어져야 한다.

38) 부산지법 민사 22단독 윤근수판사는 뺨을 맞고 피하던 중학생 딸이 벽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숨지는 바람에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구속된 아버지 이00(47살)씨에 대해 경찰청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탈선을 보다 못해 훈계하다 한차례 때린 것이 이처럼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만큼 범행 동기와 정황이 참작된다”며 기각했다(한겨레신문, 1996. 6. 25).

제21조 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국은

- 가. 아동의 입양은, 적용가능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적절하고 신빙성있는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입양이 부모, 친척 및 법정 후견인에 대한 아동의 신분에서 비추어 허용될 수 있음을, 그리고 요구되는 경우 관계자들이 필요한 협의에 기하여 입양에 대한 분별있는 승락을 하였음을 결정하는 관계당국에 의하여만 허가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나. 국제입양은, 아동의 위탁양육자나 입양가족에 두어질 수 없거나 또는 어떠한 적절한 방법으로도 출신국에서 양육되어질 수 없는 경우, 아동 양육의 대체수단으로서 고려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 다. 국제입양에 관계되는 아동이 국내입양의 경우와 대등한 보장장치와 기준을 향유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라. 국제입양에 있어서 양육지정이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마. 적절한 경우에는 양자 또는 다자약정이나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본 조의 목적을 촉진시키며, 이러한 테두리 내에서 아동의 타국내 양육지정이 관계당국이나 기관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4 입양아동의 권리: 입양 상황에서 아동의 권리 보호가 취약하다.

우리나라 입양에서 입양아동의 권리는 매우 취약하다. 아동의 동의없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만으로 입양될 수 있는 아동의 나이가 15세미만이라는 것은 아동의 의사를 지나치게 무시한 것이다. 또한 현재 국내입양되고 있는 아동의 99%이상이 친자로 신고되는 있는 관행으로 말미암아 양부모는 호적법을 위반하게 되고 입양아동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신의 뿌리에 대한 알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

입양아동의 권리가 가장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것은 파양이다. 입양아동을 친자로 신고한 양부모는 언제든지 법원에 '친자부존재 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에서 파양선고를 내리면 양부모는 더 이상 부양책임이 없어진다. 이와 같은 제도는 양부모의 입장만 참작되고 아동의 최상의 이익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제도이다.

국내입양이 매년 수천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입양제도의 관행을 존중하면서도 입양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으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먼저, 입양아동이 입양에 동의할 수 있는 연령을 현재보다 대폭 하향조정하고 3세 이상의 아동은 최소한 입양되기 전 입양될 가정에서의 적응기간을 거친 후에 아동의 의사를 물어야 할 것이다. 입양아동을 친자로 입적하는 관행을 존중하여 양부모의 호적에 친자로 입적하되, 입양전 호적은 가정법원이 보관하는 이중호적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입양아동의 권리를 심각히 침해하고 있는 파양은 아동이 20세가 되기 전에는 금지하고, 아동이 성인이 된 후에는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입양기관등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제22조

1. 당사국은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구하거나 또는, 적응가능한 국제법 및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난민으로 취급되는 아동이, 부모나 기타 다른 사람과의 동반 여부에 관계없이, 이 협약 및 당해 국가가 당사국인 다른 국제 인권 또는 인도주의 관련 문서에 규정된 적응가능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국제연합 및 국제연합과 협력하는 여타의 권한 있는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기구들이 그러한 아동을 보호, 원조하고 가족 재결합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난민 아동의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을 추적하는데 기울이는 여하한 노력에 대하여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그 아동은 여하한 이유로 인하여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가족환경을 박탈당한 다른 아동과 마찬가지로 이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은 보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5.5 외국인 자녀의 인권: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노동자의 자녀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제조업계에 인력난이 심각해지면서 외국인들이 상당 부분 노동인력으로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 맞물려 정식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체류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 외국인은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다는 불안정한 상황 때문에 정상적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인격적 처우를 받지 못하며, 산업재해를 당하고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불법체류자 중에는 미혼남성이 많은데, 이들이 한국인 여성과 결혼을 한 경우 그 자녀 또한 불법체류자가 되고 있다. 한국인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할 경우에 그녀가 한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그 자녀는 아버지의 국적에 따라서 한국인이 된다. 역으로 아버지가 외국인이고 어머니가 한국인인 자녀는 아버지의 국적에 따라서 한국인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이 경우 아버지가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그 자녀는 어머니의 나라에서 불법체류자가 되거나 출생신고를 하지못해서 '무국적자'로 방치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이거나 아동이 아플때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고, 학령아동이 되어도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없으며, 심지어는 '추방'의 위험을 감수하여야 한다. 아버지가 외국인이란 이유로 한국인 여성의 자녀가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없고,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보건과 초등교육과 같은 최소한의 욕구도 박탈당하는 현실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불법체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어머니가 한국인이고 아버지가 외국인인 아동의 경우도 보호자의 선택에 따라서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개방되어야 할 것이다.

엄마는 한국인... 난 무국적자?

평택에 사는 한 어린이는 태어난지 7개월이 지났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국민이 못됐다. 호적이나 주민등록 그 어디에도 그의 존재는 없다. 국적도 없다. 부모가 없거나 출생신고를 게을리해서가 아니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려고 해도 받아주지 않고, 호적에도 올릴 수 없는 것. 어머니는 한국인이지만 아버지는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머니 황○○씨(25)는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 엠디 히룬(29)과 지난해 5월 결혼해 아이를 낳았다. 황씨는 혼인신고를 하고 자신의 호적에 아들을 올리려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친정 부모의 호적에 입적시켰다. 그러나 조희 결과 아이의 아버지가 외국인임이 드러나 일주일 뒤 말소돼버렸다.

물론 방글라데시에 가서 국적을 얻으면 되겠지만 황씨는 자신의 아이를 한국인으로 키우고 싶은 생각이다. “남편따라 방글라데시에 가서 지내봤는데,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음식이나 기후도 안 맞았다. 아이의 장래를 위해 가능하면 한국에서 살고 싶다. 그래서 이름도 한국식으로 지어 주었다. 그러나 국가에서 아들을 국민으로 받아주지 않아 고민이다”(중략)

외국 남자와 결혼해 자녀를 낳았을 때 오히려 호적등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자신은 미혼모로, 자녀는 사생아로, 출생신고를 하기도 한다. 외국인과 결혼했을 때 이렇듯 자녀 문제가 복잡하다는 것이 알려지자 임신을 하면 유산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90년대 들어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이들이 한국 여성들과 결혼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집계에 의하면 3월말 현재 국내에 취업중인 외국인 노동자(산업연수생, 불법체류자 포함)는 15만여명에 달한다. 이 중 약 40%는 중국교포.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필리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권 저개발국 출신들이다. 중국 교포는 중년 여인들이 주류를 이루지만 다른 아시아국의 경우 20~30대의 젊은 남자가 다수를 차지한다. 이들은 일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국 여성과 어울리게 되고 그러다가 결혼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서울 이태원의 이슬람사원에서는 이러한 커플의 결혼식이 매달 한건 이상 치러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주한 파키스탄대사관측은 “파키스탄인이 한국 여인과 결혼해 혼인신고를 하러 오는 경우가 매년 20건 넘는다. 올해 들어서는 7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성남외국인 노동자의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혜성목사는 “불법체류자가 많은데다 여러가지 여건상 정식 결혼은 못 올리고 그냥 사실혼 상태로 지내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들까지 합치면 최소한 2000~3000쌍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략)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서울지방변호사회 산하)에서 법률 상담을 맡고 있는 이덕우변호사는 『한국 남자와 결혼하면 국적을 얻고 한국 여자와 결혼하면 국적을 얻을 수 없게 돼 있는 현행법은 명백히 남녀 차별』이라며 “한국 정착을 위한 위장결혼은 가려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선진국과 같이 귀화 심사는 엄격하게 하되 기본적으로 문은 똑같이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법무부 법무과의 석동현검사는 “관련법이 만들어진지 너무 오래돼 시대에 안 맞고 남녀불평등의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차원에서도 올 연말이나 내년초까지 법개정안을 확정해 바로잡아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스 + 1996. 4. 25 제31호>

제33조 당사국은 관련 국제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사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이러한 물질의 불법적 생산과 거래에 아동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6 약물오남용: 마약, 향정신성 약품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과학문명과 소득수준의 향상과 함께 일시적 쾌락을 추구하는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여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의 오남용하는 사람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약물의 오남용은 사용자의 정신을 황폐화시키고 가정을 파괴하는 반이성적, 반사회적인 것이다. 특히 인격형성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약물오남용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청소년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를 오남용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사례가 많아서 1995년 한해동안 경찰에 단속된 환각물질 흡입사범 6,277명중에서 19세이하 청소년이 전체의 79.2%를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의 약물오남용은 술과 담배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술과 담배를 권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술과 담배소비량은 세계에서 유래없을 정도로 많다. 국민건강증진법상 19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부모나 어른들이 어린 자녀에게 담배심부름을 시키고 술, 본드, 부탄가스는 구멍가게에서 누구나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은 약물과 유해화학물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청소년학회(1996)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와 예방대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남자의 67.7%가 술, 30.5%가 담배를, 여자는 57.6%가 술, 13.5%가 담배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여자의 술·담배 경험 증가율이 남자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청소년들이 약물과 유해화학물질을 오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청소년과 그 부모에게 약물의 폐해를 널리 알리고, 청소년이 쉽게 구하고 있는 술, 담배, 본드, 부탄가스 등을 쉽게 구할 수 없도록 판매를 제한해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을 통하여 19세이하의 청소년에게 담배판매를 규제하듯이 다른 약물과 유해화학물질도 판매를 규제하고, 본드와 같이 교육용 필수품은 소량으로 포장해서 판매하도록 한다.

또한 약물을 습관적으로 오남용하는 사람은 정기검진 등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하고, 단기와 중장기프로그램을 통해서 무료로 치료하도록 한다. 약물과 유해화학물질의 오남용은 그 자체로서 문제일 뿐만 아니라, 폭력, 절도, 교통사고, 유흥업소 출입과 고용 등 또다른 사회문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망된다.

제34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간, 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아동을 여하한 위법한 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 나. 아동을 매음이나 기타 위법한 성적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다. 아동을 외설스러운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5.7 성적학대(1): 친인척에 의한 아동의 성적 학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는 주로 아는 사람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당사자에게 주는 피해가 매우 크고, 보호하거나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구제하기도 쉽지 않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1995년에 신고접수된 1천21건의 성폭력 및 성추행 사례 중에서 19세이하의 피해자가 전체 상담이나 고소한 사례에서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학대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친인척에 의한 성폭력은 ‘성폭력특별법’(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되지 않는 사례가 훨씬 많다. 그 이유는 현행 법에는 사실상의 친척에서 상당수의 사람이 적용되지 않고, 피해자와 주변 사람(어머니)들은 별다른 보호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법적으로 대응하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즉, 상담소에서 접수한 친척에 의한 성폭력 1백41건(전체의 14.2%임)중 1백16건이나 미고소처리됐다. 특별법에는 친족의 범위를 ‘존속 등 연장의 친족’, ‘4촌이내의 혈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 또는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어, 민법의 개념보다 훨씬 제한적이어서 우리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친척’으로 불리는 관계에 있는 가까운 사람에 의한 피해(32.2%)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외붓아버지에 의한 성폭력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 또는 친족’의 범위안에 ‘외붓아버지’가 포함되는냐 여부가 판결에서 혼란을 빚고 있다. 부산고법에서는 13세 외붓딸을 상속적으로 성폭행한 외붓아버지를 ‘사실상의 관계에 있는 혈족’이 아니고 ‘어머니가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강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고, 서울고법에서는 “외붓딸을 호적상 출생자로 등재만 하고 입양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입양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던 만큼 입양의 효력이 인정돼 특별법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에서는 외붓아버지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는 존속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성폭력

특별법이 의붓아버지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나머지 살인까지 한 김00 사건이 계기가 되어 친고죄인 성폭력범죄를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인식해 기존 형법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제정한 입법취지와도 배치된 것이다.

따라서 존속 또는 친족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폭력에 대한 죄를 ‘정조에 관한 죄’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죄’로 개념규정하고 친고죄 폐지, 의료인·교사·사회복지사 등 전문집단의 신고의무제, 친족범위를 민법과 동일하게 확대, 친권유보 조항과 성희롱 조항의 신설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아동과 청소년은 성의식과 태도를 배워가는 과정에 있음에 비추어서 교육적인 대책, 위기상담전화³⁹⁾, 긴급구조와 일시보호시설, 중장기보호시설 등 가해자로부터 안전하게 격리하여 보호하는 대책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 이럴 수가 ... 중2 친딸 상습성폭행

사회적 무관심 속에 방치돼 온 가정폭력이 끝내 아버지가 친딸을 성폭행하고 상습폭행에 시달린 부인이 정신이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사태로까지 번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일 지난 94년 4월부터 자신의 딸(13. 중 2)을 일주일에 2-3차례씩 성폭행 및 성추행해 온 혐의로 진아무개(43. 무직, 대전 유성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결과 진씨는 지난 9년 동안 자신의 아내(35)를 상습적으로 때려, 그녀는 올해 4월 한 정신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딸은 경찰에서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나면 원산폭격을 시키고 고무호스로 때렸다”며 성추행과 함께 심하게 구타당했다고 밝혔다. 딸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한 채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 밤마다 친구집을 전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딸은 지난달 12일 아버지가 학교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자, 결국 자신의 처지를 친구들에게 털어놓았으며, 학교 교사와 성폭력상담기관이 개입하면서 경찰이 수사하게 됐다<한겨레신문, 1996. 7. 3>.

의붓딸 성폭행 공소기각 석방논란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인호 부장판사)는 10월 20일 의붓딸(13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여 성폭력특별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조모(43세)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달리 공소기각

39) 경찰청은 성폭력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성폭력 상담전화 전용회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13개 지방청과 대도시 경찰서에만 운영중인 여성상담실(1백57개소)이 전국의 모든 경찰서로 확대 설치되며 성폭력 상담전화 전용회선(해당국번+0118)도 신설된다<한겨레신문, 1996. 7. 16>.

판결을 내리고 조씨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력특별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처벌대상을 4촌이내의 혈족으로 제한한 만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은 혈연관계에 의한 존속 가운데 혼외출산등으로 법적 질차를 밟지 않은 자로 보는 것이 다당해 재혼 등 사회적 관계로 맺어진 존속관계는 처벌대상에서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의붓아버지인 조씨를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성폭력특별법 7조의 ‘사실상 관계에 의한 존속’으로 처벌할 수 없으며 피해자의 어머니가 공소제기전에 고소를 취소해 친고죄인 강간죄로도 처벌할 수 없어 공소기각 석방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성폭력특별법은 의붓아버지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나머지 살인까지 한 김00 사건이 계기가 되어 친고죄인 성폭력범죄를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인식해 기존 형법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제정하였으며, 법규의 해석이 입법자의 의도를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은 의붓아버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법감시 제2호, 1995. 12. 11>

5.8 성적학대(2): 교직원에 의한 학생의 성적 학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직원에 의한 학생의 성적 학대는 주로 남자 교사가 여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내에서 이루어진다. 담임 교사나 교과담당 교사라는 특수한 지위를 활용하여 방과후에 남게 하거나, 과학실·음악실·체육실·숙직실 등 남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학생을 유인해서 성적 학대를 지속적으로 가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교육자이기 때문에 성추행이나 강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회적인 통념, 혹은 설사 성추행이나 강간이 있었다라든가 품행이 불량한 학생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다. 한 중학교에서 “총교장이 여학생 3명을 성희롱했다”는 사건에 대한 공방을 통해서 교직원에 의한 성적 학대를 학생이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적 학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남녀학생들에게 정규수업시간에 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현행 교과과정에는 체육, 생물, 안전보건 등의 과목에 성관련 내용이 단편적으로 소개되고 담당교사의 교육내용도 실질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발달단계, 성적 욕구와 문제에 맞는 교재를 개발하고 전담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학대를 받은 경우에 비밀이 보장된 상담과 필요하다면 의료적, 법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교직원에 의한 성적 학대가 문제제기 될 때마다 일과성 사건으로 취급되었는데 성적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인권옹호특별위원회’ 등을 두어서 제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한 대안이다.

1996년 6월에 사회문제화된 “교장이 여중생을 성추행했다고 고발된 사건”의 진행과정에 대한 언론보도를 통해서 학교에서 일어난 성적 학대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본다. 이 사건은 “서울의 한 중학교 8교장(55)이 중학교 3학년 여학생 3명을 교장실로 불러 성추행을 했다”고 학생들이 주장함에 따라 이 학교 교사들이 서명운동에 나서면서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8교장은 5월 16일 어린이대공원에서 열린 학교사생대회를 마친 뒤 집에 곧장 돌아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부에 불려온 여학생들 가운데 3명을 교장실에 불러 “명찰이 어디 갔느냐”며 가슴을 만졌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양은 “교장선생님이 ‘전교생 앞에서 망신을 주겠다’ ‘부모님을 부르겠다’고 겁을 줬다며 자꾸 명찰애기를 하며 조끼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고 말했다. 한편 성추행 시비를 둘러싸고 말썽이 일자 8교장은 10일 낮 12시 3분께 이들 3명을 다시 교장실로 불러 교감·학생주임 등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는 진술서를 쓰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7양은 “학생주임이 전학시키겠다, 퇴학시키겠다고 말해 사실이 아닌데도 어쩔 수 없이 진술서를 썼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8교장은 “열심히 일한 교장을 일부 실력없는 교사들이 음해한다”며 “나는 전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교사들은 “교장이 언론에 보도될 것을 우려해 오늘 학교 밖에도 못 나가게 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한겨레, 6. 11).

사회적 여론이 일자, 관할 교육청은 진상조사에 나섰고,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중처벌하겠다고 말했다. 8중학교 정교사 60명 가운데 36명(이후 39명으로 늘어남)은 교장 퇴진을 요구하는 문서에 서명하고,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8개단체는 ‘8중학교 성추행 교장 퇴진 및 학생인권수호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기로 결의하고, 이날부터 교장 비리, 성폭력 및 학생인권침해 사례 고발 전화를 개설했다(한겨레, 6. 12). 다음날 피해 학생 3명의 부모들은 동부지청에 8교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한겨레, 6. 14).

성추행의 문제가 사회문제화되고 있었지만, 진상조사를 나온 감독관청의 담당자는 육성회 임원 등 학부모에게 “교장선생은 내가 잘 안다. 안고 쓰다듬고 뽀뽀 좀 하고 그런게 뭐 성추행이냐”라고 말하여, 배석한 교사들로부터 “이게 조사나온 사람이 할 얘기입니까”라는 빈축을 샀다. 또한, 학생들에 대한 조사가 매우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 “어제 다시 진술서를 쓰는데 혼자 남았던 ○아무개가 5분쯤 뒤에 울며 나왔다고 쓰니까 조사를 나온 선생님들이 ‘너희가 시계를 봤느냐’고 다그쳤다”고 7아무개양은 교육청의 조사분위기를 전했다. “선생님, 시간은 느낌으로 알 수 있잖아요”라고 대답했더니 “그러면 교장이 너희 가슴을 만졌다는 것도 그냥 너희 느낌이 아니냐”고 물더라”고 그는 덧붙였다. 한편, 동료학생들은 학교 곳곳에는 “저질 교장 물러가라”, “교장은 전교생 앞에서 잘못을 밝히고 사과하라”는 벽보가 나붙었다(한겨레, 6. 14).

참여단체가 13개 교육·여성·인권단체로 확대된 공동대표는 피해학생 학부모대표 김아무개씨와 서울시교육위원 이수호씨를 공동대표로 선임하고, 피해자 제보사

항 수집 및 다른 피해 진상조사활동, 학부모들의 소송에 적극 지원, 관계기관 항의방문 등을 결의했다(한겨레, 6. 18). 이로서 공대위는 入중학교 성추행사건에 그치지 않고 ‘학생인권’침해사건으로 관심의 범위를 넓혔다. 언론의 표적이 된 入교장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한겨레신문> 보도와 관련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入기자등을 18일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고소했다”(한겨레, 6. 19).

한편, 교사들은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공정한 조사와 조속한 사후처리를 통한 학교 정상화”를 진정하였지만, 관할 교육청은 현지조사를 마치고도 검찰에 고소된 사건인 만큼 검찰수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검찰에 책임을 떠넘겼다(한겨레, 6. 19).

이에 분노한 시민단체 회원들과 학생들은 19일 오후3시 학교 앞에서 入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교사들은 이달초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과정에서도 入교장이 선거 전날 교사들 집에 밤늦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특정 교사를 선출하라고 말했는가 하면, 선거 당일에는 부별로 투표함을 만들어 투표용지를 집어넣도록 지시해 교사들의 반발을 사는 등 평소 학교에서도 독단적인 모습을 보여왔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확대되자, 관할 교육청은 19일 入교장을 전직시킬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다. 교육청은 “피해 학생들과 교장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으나 양쪽의 주장이 엇갈려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며 “그러나 학교장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학교의 정상 운영이 어렵다는 점에서 교장에게 도의적 책임을 물어 전직요청을 했다”고 말했다(한겨레, 6. 20). 급기야 교육부는 2학기부터 여학생들을 상대로 한 성폭행 예방지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체육·생물·양호교사는 성폭행 대응 방법을 정규 교과시간에 지도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성폭행 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상담과 치유헌동을 벌이기 위해 상담교사와 담임교사 외에 학생 담당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대폭 강화하도록 지시했다(한겨레, 6. 21).

入교장 사건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또 다른 사건으로 비화되었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入검사는 15일 入교장이 지난 94년 교장 재직중에도 한 여교사를 성희롱했다는 진정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였다. 검찰은 지난 94년 10월 入중의 한 여교사가 入씨에 의해 성희롱당했다는 진정이 제기됐다가 교육청 등의 조사결과 무혐의처리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우선 당시 조사기록을 입수해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入중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지난 5월 16일 사건 당시 “피해를 당한 여학생이 눈물을 흘리며 교장실을 나서는 것을 봤다”는 동료 학생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한겨레, 7. 16).

이 사건은 10월 3일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증거없음으로 무혐의처리되었다.

入중학교에서 入교장이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이 사건은 학교내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교육·여성·인권단체들이 ‘학생인권’ 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마련하였다. 처음 피해자와 교사가 문제를 제기할 때에는 入교장은 결백을 주장하고 교육청은 미온적으로 대응하였지만, 사회단체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언론이 관심을 보이면서 入교장은 전보되고 교육

부는 성교육 강화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숨은 이야기로 그칠 수 있었던 사건이 이렇게 된다는 몇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첫째, 피해 학생들의 진술을 교사들이 믿고 서명운동과 진정서제출 등으로 문제제기를 조직적으로 하였다. 둘째,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개인적 수치심에 굴하지 않고 학교장을 검찰에 고소하는 법적 대응을 서둘렀다. 셋째, 교육·여성·인권단체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피해자의 부모들과 함께 항의방문, 시위, 언론홍보 등을 체계적으로 하였다. 넷째, 학교장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았고, 과거에도 여교사를 성추행 했다는 진정이 있었다. 다섯째, 교육청은 초기에 진상조사를 미온적으로 하였지만 결국 교육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섯째, 한겨레신문 등 주요 일간신문이 이 사건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텔레비전이 학교성폭력을 집중조명하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처럼 전례없이 조직적으로 문제제기된 학생에 대한 교직원의 성폭력의혹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 것은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다.

제35조 당사국은 여하한 목적과 형태의 아동의 착취유인이나 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간, 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 당사국은 아동복지의 어떠한 측면에 대하여라도 해가 되는 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5.9 연소노동자의 근로조건: 경제적 착취와 유해노동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전세계 10~14살 어린이의 13%인 약 7천3백만명이 노동시장에 내몰리고 있는데, 어린이노동에 대한 전반적인 통계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실제 어린이 노동자수는 수억명에 이를 수 있다. 어린이 노동자는 대부분 낮은 임금을 받으며 더럽고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은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에서 일하고 있지만 서방기업의 하청업체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혹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서방 선진국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어린이 노동자는 교육과 직업훈련에서 소외된 채 내일의 성인으로 성장해,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 18세미만의 연소노동자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지만, 최근 중고등학교생이나 중퇴생이 '아르바이트'란 이름으로 노동을 하는 경우는 적지 않다.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18세미만의 연소자는 밤 10시이후에 야간작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심야주유소는 남녀청소년에게 침식을 제공하면서 고용해 탈선을 조장하기도 하고, 주류를 판매하고 술손님을 접대하는 단란주점, 카페 등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다.

연소노동자는 사용자의 강압에 못이겨서 일하는 노예노동, 아동과 청소년의 매매

춘, 그리고 유해작업환경 등에서 일하기 쉬우므로 근로기준법의 엄격한 적용과 함께 비인간적인 아동노동에 대한 순회지도와 감시활동이 절실하다. 아울러, 연소 노동자도 적절한 작업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개발하고 우수 사업장에게는 세금감면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한 대안이다.

가출소년 감금 때리며 일시켜

16일 오전 9시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 25평짜리 제화공장 2상사에는 때에 찌든 작업복과 ‘하면된다’라고 쓰인 연탄집게가 어지러이 널려 있었다. 이곳에서 정아무개(13·충남 부여군)군 등 10대 가출소년 6명은 감금당한 채 불에 달군 연탄집게와 작업용 연장 따위로 맞으며 노예처럼 일을 해야 했다.

고향에서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정군은 술주정이 심한 아버지가 정신이상 증세까지 보여 어머니가 집을 나가자 지난해 12월말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다. 역 주변에서 먹고 자며 떠돌던 정군은 지난 1월 17일 새벽 청량리역에서 정아무개(37)씨를 우연히 만났다. “알고 있는 구두공장에 취직시켜주고 봉급도 많이 주겠다”는 그의 꾀에 빠져 2상사에 발을 디뎠다.

정군의 공장생활은 ‘지옥’같았다. 아침 8시에 일어나 세수와 식사를 한 뒤 9시부터 작업에 들어갔다. 정군이 하는 일은 구두를 만들기 위해 가죽을 덧붙이고 접는 일이었다. 점심·저녁시간은 주인 황아무개(42)씨가 일을 빨리하라고 독촉하는 바람에 10여분에 불과했다. 다음날 새벽 1~2시까지 한밤작업을 하는 날도 적지 않았다.

정군은 건디다 못해 지난 2월말 황씨에게 “그만두겠다”고 했다가 쇠파치의 손잡이로 가슴 등을 6대나 맞았다. 그는 월급을 한푼도 받지 못했으며 외출도 한번도 못했다. 그는 “밤에는 공장 출입문이 잠겨 있고 낮에는 종업원들이 감시를 했다”며 “도망치려다 걸리면 죽지 않을 정도로 맞기 때문에 도망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정군은 며칠동안 밤에 조금씩 작업연장을 이용해 창문 철조망나사를 풀어놓았다가, 어린이 날인 지난 5일 오후 1시 전씨가 없는 틈을 이용해 도망쳤다.

정군과 함께 일했던 나머지 10대 소년 5명도 사정은 비슷했다. 고아인 김아무개(16)군은 “지난 달 주인이 ‘일을 안한다’며 타고 있는 연탄에 집게를 꽂아 달궈진뒤 꺼내 약간 식혀 등을 4대 때렸다”고 말했다. 정신장애자인 김아무개(15)군은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머리털을 잡아뜯기는 등 폭행을 당해 팔과 얼굴에 온통 멍이 들어 있었다.

황씨 등 3명은 정군 삼촌의 신고를 받은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붙잡혀, 아동복지법(아동학대)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미성년자 약취유인) 위반혐의로 16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그러나 황씨는 경찰에서 “집나온 아이들이 일을 하겠다고 해서 일을 시켰으며, 공장 형편이 어려워 월급을 주지 못했을 뿐 때리거나 가두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한겨레신문, 1996. 5. 17>40).

제38조

1. 당사국은, 아동에게 관련이 있는 무력분쟁에 있어서, 당사국에 적용가능한 국제인도법의 규칙을 존중하고 동 존중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의 징병을 삼가하여야 한다. 15세에 달하였으나 18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징병하는 경우, 당사국은 최연장자에게 우선순위를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무력분쟁에 있어서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인도법상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무력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의 보호 및 배려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0) 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는 11월 황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등을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이들 청소년을 감시하고 폭행한 ㄱ(23. 나상사 직원)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한겨레, 1996. 11. 12).

제 6 장 신체의 자유

신체의 자유는 인신의 자유라고도 하는데, 신체에 대한 부당한 구속을 받지 않는 자유를 말하며 재판에 의한 구금, 행정권에 의한 구금, 나아가서는 사인(私人)이나 사적 단체에 의한 구금 등에 관해서도 논의되지만, 특히 형사절차에 있어서 가해지는 신체에 대한 침해와 관련되는 개념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신체의 자유는 자유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마그나 카르타 이래 모든 권리장전에서 보장되어 있는 전통적인 인권이다.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모든 자유권이 소멸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프랑스 혁명이 바스티유감옥의 파괴에서 비롯했다는 것은 이에 관한 상징적 사실이다.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체의 자유를 오래전부터 생활화해온 서구선진국에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일제식민지통치를 경험하고 오랫동안 권위주의적 정부하에서 지내왔기 때문에 신체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야간통행금지의 산물인 경찰서 즉심보호실에서 불법구금, 임의동행 형식의 불법구금, 증거수집보다는 고문과 가혹행위를 통해서라도 자백을 강요하는 수사관행,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의 제한, 구속위주의 수사, 그리고 질낮은 교정교화서비스 등에서 국민의 신체의 자유는 크게 위협받아 왔다.

특히, 나이가 어린 아동과 청소년은 성인에 비교하여 법적 지식이 낮고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낮기 때문에 강압적인 수사로 거짓자백을 강요당하기도 하고, 보호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하여,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소년 피의자는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성의에 따라서 법적 도움을 받는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나는데, 결손가정과 빈곤가정의 청소년은 국선변호인제도와 같이 이용 가능한 제도 조차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권리를 침해받기도 한다.

최근 영장실질심사제 등을 도입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고, 사회봉사명령제 등 사회내처분을 통해서 소년범을 시설에 수용하지 않으면서 교정교화하려는 사업이 시도되고 있지만, 국제적 기준에서 볼 때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적 자유는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많다.

제37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 가.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하는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 나. 어떠한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아동의 체포, 억류 또는 구금은 법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또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한다.

- 다.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인도주의와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입각하여 그리고 그들의 연령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처우되어야 한다. 특히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합치한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과 방문을 통하여 자기 가족과 접촉을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
- 라.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법률적 및 기타 적절한 구조에 신속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짐은 물론 법원이나 기타 권한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앞에서 자신에 대한 자유박탈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신속한 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6.1 불법구금: 관행화된 경찰의 불법구금을 막을 수 없는가?

최근까지 경찰서 즉심보호실에서 불법구금이 관행화되어 왔다. 경찰관 직무집행 법에는 정신착란자나 술취한 사람, 자살기도자, 미아, 병자, 부상자 등을 제외하곤 즉심 대상자로 구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선 경찰서에서는 즉심이 열릴 때까지 최장 24시간동안 대상자들을 구금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 즉심피의자 인권침해 시비가 잇따르자 경찰청은 1994년 보호실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불법구금 등을 하지 말라고 특별지시까지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불법구금이 계속되는 것에 대하여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귀가시킬 경우 심증판구 즉결심판 법원에 나오지 않는데다 피해자가 있는 경우나 구류 대상인 사건 등은 결석재판이 어려워 위법인줄 알면서도 업무처리 편의상 붙잡아두고 있다”고 말했다⁴¹⁾.

한편 서울지법 민사 41단독 박보영 판사는 1996년 6월 24일 10시간 동안 불법으로 구금됐다가 즉심에 회부된 유모(여)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경찰의 직무상 행한 불법행위로 인해 겪은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다”며 5백만원의 배상판결을 내렸었다. 판결문은 경찰서측이 유씨를 즉심에 넘기면서 그 이유를 알려주지도 않고 유씨의 의사를 무시한 채 경찰서내 즉심대기실에 10시간동안 감금한 것은 불법이라고 분명히 했다. 또한 판결문은 “즉결심판 대상자는 심지어 법원에 불출석 심판을 청구할 권리까지 보장돼 있다”며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구금한 것은 명백한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서 즉심보호실에서 불법적인 구금을 막기 위해서는 즉심과 같은 가벼운 처벌이 예상되는 범죄는 불출석 심판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도 일단 귀가한

41) 서울지역 19개 경찰서를 취재한 결과 보호실에 있는 74명 가운데 55명이 주거가 분명하고 가족이 있는 등 규정대로라면 보호조치가 필요없는 사람들로 나타났다. 이들중에는 경찰서에 연행된 뒤 가족들에게 연락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즉심에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다(중앙일보, 1996. 7. 23).

후 일정기간안에 법원에 출석하여 즉결심판을 받도록 하도록 한다. 아울러, 피의자는 불법적인 인신구속을 과감히 거부하는 권리의식을 키워야 할 것이다.

또한, 피의자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될 사람과 접견하고 서류 등 물건이나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접견교통권’(형사소송법, 제34조, 제89조)을 활용하여 불법구금이나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경우 피의자도 변호인의 도움을 신속히 받도록 한다.

수사기관 임의동행 불구속피의자, 대법 “변호인 접견권 보장”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불구속 피의자 또는 내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변호인 접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임의동행을 대폭 제한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4일 동대문경찰서장이 서울지법의 변호인 접견 불허 취소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사건에서 이같이 밝히고 경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사소송법 30조 1항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불구속 피고인에게까지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피의자나 피내사자의 경우에도 당연히 변호인 접견교통권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8일 총선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동대문경찰서에 연행돼 조사받던 종로저널 편집국장 이병기씨의 변호인들은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접견을 거부당하자 “접견 불허는 위법”이라며 서울지법에 준항고를 신청, 접견 불허 취소를 결정 받아냈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임의동행 대상자를 수상한 거동자와 범죄혐의자 및 범죄사실 인지도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근무현장에서 질문하는 것이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만 동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또 동행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반드시 알려주고 인권유린 방지를 위해 파출소에 무인카메라를 설치, 조사과정을 녹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과 및 수배여부도 무전기나 휴대용 조회기(HDT)로 현장에서 조회, 시민들이 경찰관서까지 가는 불편을 덜어주고 본인 승락을 받아 경찰관서로 동행한 경우 가족·친지 등에게 담당 경찰관의 신분·동행장소·동행목적과 이유 등을 알리고 본인이 직접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중앙일보 1996. 6. 5.>

6.2 고문과 가혹행위: 고문과 가혹행위로 인한 범죄조작을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국제사면위원회 1996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47개국중 63개국에서는 수천명이 재판도 받지 못한 채 즉결처형됐으며, 114개국에서는 최소한 1만여명이 고문

과 성폭행을 당한 뒤 목숨을 잃었으며 수감중 고문에 희생된 사람만도 54개국 4천5백여명에 이른다. 한국의 경우는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발효중인 상황에서 기존 정치범 1백50여명에 덧붙여 양심수를 포함한 수백명의 정치범이 지난해 체포됐다고 밝혔다.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의 시비는 끊이지 않는다. 피의자의 유죄를 입증할 마땅한 물증이 없을 때 수사관들은 심증만 가지고 피의자에게 자백을 유도하는데, 그 과정에서 흔히 구타나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흔히 피의자는 고문 등 가혹행위에 못이겨서 자백을 하고, 재판과정에서 자백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법률에 대한 지식이 짧아서 고문과 가혹행위에 법적 대응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허위자백을 하여서 범죄인이 되기도 한다.

1994년 발생한 부산 만덕초등학교생 강○○(당시 8세)양 유괴·살해사건의 경우에도 범인으로 몰렸던 원○○씨 등 4명중 3명은 1, 2, 3심에서 고문에 못이겨 허위자백한 사실이 드러나 모두 무죄로 풀려나고, 수사때 피의자를 고문한 혐의로 경찰관 3명에게 유죄가 선고되었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배광국 판사는 13일 북부경찰서 형사과 허○○(38·경장)·손○○(27·경장)·이○○(37·경장) 피고인등 3명에 대한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죄 선고공판에서 허피고인에게 징역 1년·자격정지 3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손·이피고인에게는 징역 8월·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고문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과 당시 정황, 증인들의 증언등을 종합해 볼때 수사과정에서 구타·고문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문과 가혹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1995년 1월에 ‘고문방지 협약’에도 가입하였는데, 1996년 11월 유엔고문방지위원회는 한국에서 아직 고문이 행해지고 있다는 비정부기구의 보고서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국정부에 대해 인권 보장조치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수사와 증거재판의 관행을 세우고 수사관이 가혹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엄정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

한국정부는 연행된 학생들을 가혹행위로부터 보호하라

연세대학교에서 있는 한총련 소속 학생 3천여명에 대한 체포와 관련하여, 국제앰네스티는 전경들이 연행과정에서 학생들을 구타하였다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정부는 연세대학교에서의 폭력행위를 경찰들의 시위자에 대한 구타를 허용하는 구실로 삼아서는 안된다. 남한당국은 연행된 모든 학생들이 예상되는 가혹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부당국은 가족의 면회와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보장해야 한다.

남한에서는 구금자들이 일상적으로 불면을 강요당하고 때때로 경찰신문과정에

서 구타를 당하기도 하며 가족과 변호사들과의 시의적절한 접견을 허가받지 못한다. 국제앰네스티는 폭력진압의 결과로서 연행된 학생들이 이러한 유형의 인권침해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려한다.

경찰과 학생들간의 폭력사태는 정부당국이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명백히 친북적인 범민족대회를 불허하는데서 비롯되었다. 8월 14일 정부당국은 학생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수천명의 전경을 투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백명의 학생들과 전경들이 부상당했고, 경찰측은 학생들에게 음식물과 부상치료를 위한 의료진을 차단하였다. 8월 20일 전경들이 캠퍼스로 전격 투입되었고, 5천명 이상이 연행되었다.

학생들의 폭력사용을 찬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앰네스티는 연행된 모든 학생들이 국제규준에 따라 보호받고 폭력을 사용하지 않은 학생들은 석방되어야만 한다고 믿는다<국제앰네스티, 1996. 11·12월호: 24>.

6.3 구속: 구속자의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

사법연감에 따르면 1995년에 각종 범죄혐의로 구속됐던 143,665명중 27.1%만이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아서 수사과정에서 구속이 남용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속된 사람중에서 기소유예 등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은 사람이 23.8%로, 4명중 1명은 구속된 뒤 최장 30일이내에 풀려났다. 이 중에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불구속상태에서 기소된 사람도 포함돼 있다. 지난 한해동안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사람은 9천36명이었으며 이 중 50%가량(4천5백2명)이 석방됐다. 일단 구속기소됐다고 하더라도 재판 도중에 풀려나는 경우도 많았다. 보석청구라는 절차를 이용해서 석방된 사람이 2만3천9백58명(보석허가율 55.8%)이었다. 따라서 구속됐다가 기소유예, 구속적부심, 보석 등으로 1심재판도중까지 석방된 사람의 비율은 당초 구속된 사람의 40.5%이고, 그 뒤 1심판결때 당초 구속됐던 사람중 27.1%만 실형선고를 받고 나머지는 집행유예등으로 풀려났다.

이처럼 실형선고자에 비교할 때 구속자의 수가 3.7배가 되는 것은 ‘불구속 수사’란 원칙을 지키기 보다는 수사와 재판의 편의를 위해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구속수사를 해온 오랜 관행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의 일각에서는 범죄혐의자가 버젓이 돌아다니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국민의 법감정 탓으로 돌리기도 하지만 인신의 구속을 보다 신중히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검찰은 1995년 한해 동안에 범법학생으로 8만2천4백42명을 적발하고 그중 13.3%인 10,965명을 구속하였다. 지난 연말 대통령의 지시로 ‘학원폭력사범’ 등을 일제히 단속하면서 구속자의 수가 급속히 증가한 것이다. 이는 범법학생의 범행동기 및 피해정도, 개선 가능성 등을 파악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구속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원폭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학교측의 요청이나 피해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교내로 수사권’을 발동하는등 과잉 단속을 하였기 때문이다. 뒤늦게 대검 강력부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강화와 구속보류제등을 통해 범법학생에

대한 구속에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따라서, 구속자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 심사제도를 활용해서 구속자의 수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할 것이다. 1997년부터 영장실질심사제가 시행된 이후 영장청구건수가 1:3가량으로 줄고, 단순 폭행등 가벼운 범죄의 영장기각률이 크게 높아진 것은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형사피의자에 대해서도 체정보다는 벌금형, 명예형과 같은 다양한 형벌을 사용해서 부당한 인신구속을 지양하여야 한다.

6.4 사회봉사명령: 우범소년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은 적법한가?

우범소년에게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사회봉사명령’을 하겠다는 것은, 1996년 1월 24일 ‘1996년도 업무계획’에서 처음 발표되었다. 이때 언론들은 보도자료를 소개하는데 그쳤으나, 3월 7일 국무총리 주재 ‘청소년유해환경개선 국정좌담회’에서 이 계획이 다시 한번 공표되면서 반대와 우려의 소리가 매우 높았다. 급기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는 3월 20일에 KBS 뉴스라인 출연해서 청소년봉사제는 위헌의 소지와 비교육적이란 비판이 있다고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범죄의 우려가 있는 비행청소년에게 법원이 판결을 통해서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것이다.

사회봉사명령제는 어떻게?

학교폭력을 뿌리뽑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 중의 하나로 비행정도가 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법원이 재판을 통해 사회봉사명령을 내리는 사회봉사명령제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오늘 심층간담시간에는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이용교 복지환경실장과 사회봉사명령제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먼저, 사회봉사명령제란 어떤건지, 대상학생은 어떻게 선정되고 어떤 봉사를 하게 되는지 얘기해주시죠.

- 사회봉사명령제는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에서 수용보호가 범죄자의 장기구금으로 사회적응능력이 떨어진다는 반성에서 나온 것으로, 범죄소년이 공원이나 거리청소, 장애인시설이나 양로원등에서 일손돕기를 함으로써 잘못을 깨닫고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말에 공포된 개정 ‘소년법’에 의해서 도입되어, 1990년부터 법원이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최하 50시간에서 최고 200시간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봉사명령은 * 16세이상의 소년에 대하여, * 보호관찰대상자중에서, * 병과처분하고, * 보호관찰관이 그 명령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최근 국무총리실과 대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의 대상을 학교에서

선도의 성과가 부진한 자, 학교폭력써클가담자 등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큰 ‘우범소년’까지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 학원폭력과 청소년선도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인데, 사회봉사명령제가 실시될 경우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 보호관찰대상자중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있는 소년들은 이 제도를 “자신의 잘못을 배상하는 제도”(53.2%), 잘못에 대한 처벌(36.9%) 등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난 연말연시에 내무부가 ‘학교주변폭력배 일제단속’에서 67,825명을 적발하여, 18,254명을 구속하였는데, ‘사회봉사명령제’는 구속자의 수를 줄이고 다양한 선도대책을 강구하여 재범율을 줄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3. 하지만, ‘교육적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많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 첫째는 위헌의 소지입니다. 법관이 사회봉사명령을 처분할 때, ‘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제12조 제1항)라고 규정하여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강제노역을 금지합니다. 참고로 유럽인권협약과 국제노동기구협약에서도 이를 금지하고 있어 영국의 경우 반드시 범죄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둘째는 학생을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교사가 우범소년을 법원소년부에 송치통고 토록하는 것은 ‘비교육적인 처사’라는 것입니다.

4. 시행여부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들을 보완해야 하겠습니까?

- 앞서 지적한 우범소년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이 위헌인지 여부가 법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현재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봉사선도제’ 등의 효과를 평가하면서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 교육부가 이번 학기부터 사회봉사선도제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사회봉사명령제와 선도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 사회봉사명령제는 소년법에 의해서 범죄소년을 처벌하고, 교정교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 사회봉사선도제는 학교에서 ‘정학’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중에서, 학교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거쳐서, 정학기간 동안에 장애인복지시설, 양로원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사회봉사선도제는 교육적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교정교화의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봉사명령제와는 ‘법적’으로 크게 다른 것입니다.

6. 사회봉사선도제에 대해선 논란이 없습니까? 사회봉사선도제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 선도제는 해당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선도차원에서 실시하고, 환

동사향을 평가하여 우수한 학생은 징계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이므로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 그동안 학생들이 징계기간동안에 교무실에서 반성문을 쓰고 화장실청소를 하면서 보낸 것에 비교할 때, 사회복지시설에서 어려운 이웃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좋은 ‘현장학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단순히 봉사활동에 그치지 말고, 사회복지사들과 상담을 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가지며, 학교에서도 이러한 일을 ‘학교사회사업가’에게 전담시켜 체계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KBS뉴스라인, 1996. 3. 20>

제39조 당사국은 여하한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여하한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희생이 된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지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5 범죄피해자의 보호: 폭력의 피해자를 위한 보호대책이 있는가?

범죄의 피해자들이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신고를 하면 피해자가 노출되고 가해자는 보복을 가하기 때문에 보복이 무서운 피해자는 신고를 기피하거나 아예 피해 자체를 부인하기도 한다.

학교주변 폭력과 같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다. 충남청소년종합상담실의 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25.1%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은 이유는 별일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다고 체념하거나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서 또는 심지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보복당할까 두려워서 말 못하는 학생의 비율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피해자의 신고나 고발은 보복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아래의 사례에서도 피해자는 교사와 부모에게 알린 이후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했다. 또한, 많은 피해자들은 피해당한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도, 학교상담실등에서는 비밀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노출을 꺼린다.

가해자의 보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서 익명으로 고발하거나, 고발자나 증인의 신원을 비밀로 해서 가해자가 모르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배치될 수도 있으므로 법기술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다. 예컨대, 성폭력의 피해자의 증언을 비디오로 녹화해서 법정에서 제출함으로써 가해자와 대면하지 않고 재판을 하거나, 증인이 가해자와 대면하지 않고 폐쇄회로를 통해서 증언할 수도 있다.

맞고도 말도 못한 아들보면 피눈물

“매맞는 아이 엄마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친구들에게 매맞고 다니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던 아이생각을 하면 지금도 피눈물이 흘러요”

‘한국판 이지메’사건의 피해학생인 장모(17)군의 어머니 최○○(52, 교사) 씨는 또다시 감정이 폭발치는듯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특히 아들이 당한 내용을 듣고는 하늘도 원망스러워 성당조차 발길을 끊었다고 했다. 서울가정법원이 지난달 30일 상습적으로 급우를 괴롭힌 고교생 4명에게 소년원 송치 처분한 것은 교내폭력에 대한 전례없는 무거운 처벌이란 점에서 학부모들에게는 사뭇 충격적이다.

“같이 자식키우는 입장에서 어찌 마음이 편하겠어요. 처벌을 원치는 않았지만 매맞던 아이 생각을 하니 끝까지 감정을 삭이지 못하겠더군요.”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있는 아들이 급우들에게 당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최씨가 아들의 학교를 찾아가간 것만 해도 한학기에만 여섯차례, 가해학생들을 불러놓고 달래보기도 하고 꾸짖기도 했지만 오히려 아들에게 더욱 심한 보복만 돌아오더라고 했다.

더구나 가해자 학부모들이 아들의 잘못을 가볍게 보며 변호사를 선임, 없었던 일을 조작하고 있다고 탄원서를 냈을 때는 “그 누구라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피해자인 자기 아들 장군이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아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인데도 가해 학생 학부모들은 자신의 아들이 학교공부 못하는 것만 걱정하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최씨는 어른들이 좀더 현명하게 처리했더라면 사건이 이처럼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한편 사건을 맡았던 서울가정법원이 선회판사도 “피해학생의 충격이 정상인으로 생활하는게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데도 가해학생 부모들이 ‘애들끼리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로 여기며 깊이 반성하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지금도 아이가 화장실로 끌려가 매맞던 것을 잊지 못해 화장실 가기를 두려워 해요. 보복이 두려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으면서 아이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최씨는 4월 26일 구치소까지 찾아가 가해학생을 붙들고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편지만 써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끝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몹시 안타까워했다. <중앙일보, 1996. 6. 1>.

제40조

1. 당사국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연령 그리고 아동의 사회복귀 및 사회에서의 건설적인 역할 담당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점을 고려하고, 인권과 타인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아동의 존중심을 강화시키며, 존엄과 가치에 대한 아동의 자각을 촉진시키는데 부합하도록 처우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국제문서의 관련규정을 고려하며,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 가. 모든 아동은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하여 형사피의자가 되거나 형사기소되거나 유죄로 인정받지 아니한다.
 - 나.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보장받는다.
 - (1)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받는다.
 - (2) 피의사실을 신속하게 그리고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 부모나 법정 후견인을 통하여 통지받으며, 변론의 준비 및 제출시 법률적 또는 기타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
 - (3) 권한있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의하여 법률적 또는 기타 적당한 지원하에 법률에 따른 공정한 심리를 받아 지체없이 사건이 판결되어야 하며,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특히 그의 연령이나 주변환경, 부모 또는 법정후견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4)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받도록 하며, 대등한 조건하에 자신을 위한 증인의 출석과 신문을 확보한다.
 - (5) 형법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결정 및 그에 따라 부과된 여하한 조치는 법률에 따라 권한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한다.
 - (6) 아동이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우, 무료로 통역원의 지원을 받는다.
 - (7)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사생활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아동에게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법률, 절차, 기관 및 기구의 설립을 촉진하도록 노력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 가. 형법위반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 연령의 설정
 - 나. 적절하고 바람직스러운 경우, 인권과 법적 보장이 완전히 존중된다는 조건하에 이러한 아동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루기 위한 조치
4. 아동이 그들의 복지에 적절하고 그들의 여건 및 범행에 비례하여 취급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 지도 및 감독명령, 상담, 보호관찰, 보호양육, 교육과 직업훈련계획 및 제도적 보호에 대한 여타 대체방안 등 여러가지 처분이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6.6 자백의 증거능력: 자백만으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와 명예를 훼손한 경우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소년범죄중에는 ‘만들어 지는 범죄’가 적지 않다. 12세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이 면제되기 때문에 흔히 미제사건의 피의자로 만들어지기 쉽다. 예컨대, 1991년 9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대흥동 어린이 살해·방화사건’은 “오빠가 폭력 비디오물을 모방해 여동생을 살해하고 집에 불을 냈다”고 경찰은 발표했지만, 대법원에서는 국민학생인 오빠에게 혐의사실이 없다고 확정판결을 내고, 자백만 믿고 혐의를 발표한 경찰과 국가는 피의자에게 명예훼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또한, 대법원은 1993년 12월 부천시 초등학교 여학생 살해사건의 범인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수감중인 이 아무개(17·당시 ○중 2학년)군에게 “혐의를 확신케 하는 증거가 없음에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하는 위법을 저질렀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이군은 친구의 여동생인 김아무개(11)양의 부천시 ㄴ아파트에 가 김양의 손과 입을 청테이프로 묶고 칼로 찔러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돼 구속적부심에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풀려났다가 유죄가 선고되면서 재수감됐다.

수사기관은 사건을 수사하고 증거를 갖추어서 기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수사는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잘못했다고 하면 풀어주겠다”고 피어서 자백만을 받아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청소년은 성인에 비교할 때 법에 대한 지식이 낮고 부모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 전에 수사관의 강압에 못이겨서 거짓으로 자백을 하기가 쉽다. 따라서 피의자인 청소년들이 신속하게 보호자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확립하고 협박, 고문이나 가혹행위등으로 거짓자백을 강요하는 수사관은 법에 따라서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자백만 믿고 “살인·방화 혐의” 발표, 피의자 명예훼손 배상해야

피의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수사기관이 이를 공표하는 행위는 피의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21일 여동생을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연행돼 수사를 받다 증거부족으로 풀려난 권모(15)군 가족이 국가와 담당 경찰관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1천3백만원을 지급토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은 권군이 폭력 비디오물을 모방해 여동생을 살해했다는 피의사실을 언론기관에 발표했으나 이는 권군의 자백만 갖고 이뤄진 것으로 진실이라는 증명도 없으며 진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살인 피의자의 자백을 진실한 것으로 믿기 위해서는 사망의 원인에 관해 피살자에 대한 부검 결과와 자백 사이에 모순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경찰은 부검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권군의 자백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피의사실을 공표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권군은 91년 9월 자신의 집에서 동생을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받던중 경찰이 이를 언론에 공표해 보도됐으나 그 뒤 자백의 신빙성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풀려나자 국가등을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다. <중앙일보 1996. 8. 22.>

6.7 변론의 기회: 보호소년이 국선변호인의 변론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형사사건 피고인이 경제사정등으로 사선(私選)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변호인을 지정해 국비로 변론을 맡기는 제도가 ‘국선(國選) 변호인제도’이다. 형사소송법 제33조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만20세 미만)이거나 70세이상의 노인일 경우에는 피고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선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각 지방변호사회별로 매년 모두 2백여명의 변호사를 국선변호인으로 추천하고 있으며 해당지역 법원은 이들에게 국선변론을 맡기고 있다. 피의자나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국선변호인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국선변호제도가 터무니없게 낮은 변호료때문에 일부 변호사들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국선변호료는 대부분 10만원씩 지급해 사선보수의 몇십분의 1에 불과하고, 기록복사·피고인 접견·현장출장 등은 엄두도 못낸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선변호료의 현실화와 함께 변호사 스스로 직업윤리관·인식을 개선하는 일이 중요하다. 아울러 법원 측도 기록열람·구치소 접견·재판기일 지정등에서 국선변호인을 푸대접해온 관행을 고쳐야 할 것이다.

못믿을 국선변호인

국선변호인의 거들된 무성의와 실수로 외아들이 억울한 판결을 받자 파출부로 생계를 이어가는 50대 어머니가 상심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10월 남의 신용카드를 훔쳐 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엄모군(19)의 어머니 어모씨(53. 강원 강릉시)는 14일 “피해자에게 아들이 사용한 카드대금 2백만원을 갚고 합의서를 받아 국선변호인에게 전달했으나 변호사가 이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아 아들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어씨는 엄군에 대한 1심재판이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진행중이던 지난 1월

신용카드주인 하모씨로부터 “엄군을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았다.

어씨는 이 합의서를 당시 1심 국선변호인 Y변호사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18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믿을만한 증거(합의서)가 없다”며 엄군에게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Y변호사가 엄씨로부터 합의서를 받아놓고도 어찌된 일인지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던 것. 이 때문에 엄군이 억울한 판결을 받았으나 당시 어씨는 합의서가 재판부에 제출되지 않은 사실조차 몰랐다.

어씨 모자의 불행은 항소심에서도 계속됐다. 서울지법 형사항소부도 지난 4월 2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실형을 선고한 것. 항소심 국선변호사인 P변호사가 합의서를 확인하지 못해 역시 재판부에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지난 7일 뒤늦게 아들을 면회한 어씨는 “합의를 했다더니 어떻게 된 것이냐”는 아들의 말을 듣고 그때서야 비로소 합의서가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 Y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예상했던대로 아들의 목숨줄과 같은 합의서가 변호사사무실 서류함에 방치돼 있었다.

Y변호사는 합의서를 1심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심이 끝난 뒤 항소심 국선변호인이나 피고인 가족에게 이를 돌려주지도 않았던 것이다. 엄군의 경우 형량이 무겁다(양형부당)는 이유로는 상고를 할 수 없다는 관련규정 때문에 대법원에 상고를 하더라도 사실상 구제받기 어려운 처지다.

어씨는 “두명의 변호인이 합의서 한 장을 법원에 전달하지 못해 아들이 억울한 판결을 받았다”며 “처음에는 나라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줘 고맙게 생각했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Y변호사는 이에 대해 “어씨가 1심선고 직전에 합의서를 가져오는 바람에 일단 법정에서는 구두로 재판장에게 합의사실을 알렸다”며 “직원들이 엄군과 관련된 소송서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합의서를 빠뜨린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항소심 국선변론을 맡았던 P변호사는 “공판과정에서 재판장이 엄군에게 ‘합의를 했다지만 증거가 없지 않느냐’고 수차례 물었으나 엄군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으며 엄군의 어머니 역시 공판과정에서 한번도 나를 찾아온 적이 없어 합의서가 있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1996. 4. 15.>

6.8 보호소년의 인권: 수용중인 범죄소년의 인권은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가?

소년법의 경우에는 죄질이 극히 나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범죄소년은 선도조건부기소유예로 보호자에게 인계되거나, 보호관찰처분을 받아서 사회내보호를 받는다. 소년원에 입소하는 보호소년도 중고등학교 혹은 직업훈련원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서 학생 혹은 직업훈련원생처럼 처우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년원은 일정기간 동안 보호소년을 구금하여 감호를 한다는 점에서 교

육기관과 다르고 바로 그 이유때문에 보호소년의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1996년 7월 보호소년이 집단탈출하는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한 소년분류심사원은 ‘명상실’이란 명목으로 사실상의 독방을 운영하면서 나이 어린 신입원생들까지 불법으로 수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절도혐의로 수원지법으로부터 심사원 유치결정을 받은 박모군(13·하남시)은 입소 첫날 간단한 신상조사만을 받은뒤 곧바로 108호 독방에 혼자 유치됐다가 4일만에 공동사로 옮겨졌다는 것이다. 현행 소년법등에는 소년범을 수용하는 시설에서의 수용자 독방유치 결정은 수용시설 내에서 규칙위반등 중징계사안이 발생했거나 징계대상자가 16세이상일 경우에만 시행토록 극히 제한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13세(당시 12세)의 신입원생을 곧바로 독방수용한 사례는 불법이다⁴²⁾.

또한 분류심사원, 소년원, 교호시설 등 소년보호시설이 보호소년의 성행을 교정하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고 볼 때, 교육과 치료기능을 크게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약물을 오남용하는 보호소년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소년원의 주된 프로그램은 교과교육과 직업훈련이기 때문에 약물오남용자의 치료나, 건전한 생활습관의 지도는 경시되고 있다. 따라서, 소년원 등 보호시설의 운영을 외부전문가와 보호자에게 개방하여 보호소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약물오남용자 치료를 전담하는 소년원 혹은 교호시설’의 설치로 문제행동을 실질적으로 교정할 수 있도록 교정교호사업을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 약물중독 갈수록 느는데...

보호처분 내려진 소년범 받아줄 병원 찾기 힘들다

서울가정법원 유병욱 판사는 16일 부탄가스를 사오지 않는다고 두살아래 후배를 마구 때린 혐의로 송치된 이모(16)군등 2명에 대해 정신과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맡겨 치료받게 하려 했으나 이군등을 맡겠다고 나서는 병원이 없어 결정을 보류했다.

이군 혐의는 폭행에 불과하지만 본드흡입 경력등에 비춰 소년원에 보내는 것 보다는 6개월간 병원에 위탁, 치료받도록 하는 소년범상 5호 보호처분을 내리는 편이 낫겠다는 것이 유판사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병실부족에다 범범소년 관리가 어렵다며 민간병원들이 수용에 난색을 표명함에 따라 미결구금을 연장하며 병원을 물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군처럼 본드·신나·부탄가스등을 흡입하거나 정신병증세가 있는 소년범은 날로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을 맡아 치료할 시설의 절대부족으로 소년범상 병원위탁보호처분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올해초 국립서울정신병원, 외정부의료원 등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해 지난달말까지 모두 22명의 소년범에 대해 병원위탁 보호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들 병원이 병실부족등을 이유로 추가수용을 거절, 더이상 보호

42) 더욱이 이곳 심사원은 사실상 독방적인 ‘명상실’에는 연령에 제한없이 신입원생 모두를 일단 수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일보, 1996. 7. 24.)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에따라 추가로 수탁병원을 지정할 계획이지만 대부분의 병원들이 난색을 표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더구나 법원이 병원측의 협조를 얻어 소년범들을 병원위탁시켜 왔을 뿐 수탁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소년범들을 수용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약물중독 등을 이유로 병원위탁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범은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93년 한명도 없었으나 94년 4명, 95년 20명, 96년 상반기에만 22명으로 급증 추세에 있다.

서울가정법원의 한 관계자는 “약물중독사범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병원의 수탁의무를 명시한 대법원예규 제정을 검토중이며 궁극적으로는 첨단시설을 갖춘 전문병원을 국가가 설립, 운영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1996. 7. 18.>

6.9 연소자 범죄: 14세미만 연소자 범죄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청소년범죄가 갈수록 연소화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1995년 청소년 범죄자 12만4천2백명중 15세이하는 28.1%인 3만4천9백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991년의 18.4%에 비해 10%포인트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청소년범죄 연령층이 계속 낮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행 형법에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범죄 등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돼있어서 이들을 처벌하거나 보호처분할 수 없다. 지금 청소년들은 과거와 달리 지능도 높고 사회 적응도 빠르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데도 단지 14세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죄를 저질러도 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형사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면 이들 불량청소년들을 반성하게 하고 지도할 확실한 다른 방안이라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늘어나는 청소년 범죄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봉사명령제와 같은 사회내처분이나 교호시설의 입소와 같은 보호처분이 필요하고, 보호위원을 지정하여 보호관찰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4세에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미성숙한 소년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과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 사이에 조화를 찾는 일이 절실하다.

제 7 장 청소년 인권교육

1. 인권교육의 정의와 필요성

1) 인권교육의 정의

일반적으로 교육의 일차적 목적은 인간이 자신의 개인적·사회적 경험의 이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경험들을 그들에게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 교육 중에서도 인권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인권교육을 구성한다. 일반적으로 인권교육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통제하도록 하는 데 그 목표를 두는 인권에 대한 지식, 가치, 기술을 사용하는 학습활동의 계획된 체계를 담고있는 하나의 참여적 과정으로 정의된다 (ARRC, 1995: 30).

그러나 기술적으로 모든 인권활동이 인권교육인 것은 아니다. 인권문서와 같은 몇가지 인권활동이 인간을 교육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 할지라도, 인권교육은 인간에게 인권에 대한 지식, 가치, 기술을 소유하고 타당화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히 고안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을 좀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인권활동가와 인권교육자를 구분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인권 활동가는 특정한 인권의 사례와 상황에 반응한다. 이들은 특정한 인권 사례 또는 일반적인 인권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위한 활동을 하며 계획한다. 반면에 인권 교육자들은 개인이나 학습자 집단이 인권에 대한 지식, 가치, 기술의 체계를 소유하고 정당화하여 특정 인권 사례 또는 일반적인 인권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들의 발달에 주로 관심을 가진다.

2) 인권교육의 중요성

인간을 해방시켜주리라고 기대했던 과학에 의해 성취된 근대화, 문명화로 인해 자연에 대한 인간의 통제능력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비인간적인 생활조건에서 고통받고 있다. 이 사실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고 통제하여 인간의 타고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인권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없이 인권은 저절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근본적으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개선하는 것은 대부분 교육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하나의 가치나 규범을 사회전체에서 제도화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가치를 사회구성원들의 교육을 통한 사회화에 의해 내면화하고, 사회전체적으로 규범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교육을 통한 새로운 가치의 제도화가 법적 강제나 힘에 의한 억압보다는 그 속도나 확산에 있어서 더디게 진행되지만 장기적

으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에는 틀림없다. 인권이라는 가치의 실현에 있어서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인권활동에서도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또한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세계인권선언 이후에 인권에 관한 각종 국제 회의에서도 인권활동에 있어서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1968년 테헤란에서 열린 인권에 관한 국제회의에서는 모든 국가들에 있어서 “모든 교육수단이 청소년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존중하는 정신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보장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 회의는 이러한 교육의 기초를 “객관적인 정보와 자유로운 토론”으로 보았으며 모든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변화하는 세계의 문제에 관심을 촉구하고 청소년들에게 사회생활을 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 총회는 1968년 모든 회원국들에게 세계인권선언과 다른 선언 등에 선포된 원칙들을 소개하고 지원하며 그리고 초중등학교 교과과정에 이런 종류의 진보적인 교과내용을 요구하였다. 또한 교사로 하여금 여러 기회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세계의 사회정의와 경제사회의 진보를 추진하기 위하여 새로운 국제관계와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유엔의 역할에 관심을 갖도록 권고하였다.

그 이후에도 비슷한 주장이나 요청이 계속되어 왔다. 1978년 유네스코는 비엔나에서 인권교육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와 비정부 교육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그리고 유엔 인권센터의 자문과 전문적인 지원 아래, 아태지역의 인권교육에 관한 훈련과정이 1987년 방콕에서 정부대표와 유엔 특별기구의 옵서버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들 각종 국제회의에서는 한결같이 인권교육의 중요성과 바람직하다는 원칙에 동의하고 있다(유엔인권센터, 1989).

필리핀 인권옹호가인 Jose W. Diokno(1982)의 말에서 역시 우리는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인권 교육과 연구의 당면한 일은 개인, 집단, 민족 그리고 정부에게 인권의 의미, 내용 그리고 가치에 대한 인식을 일깨우는 경제적이고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방법들을 발견하고 적용함으로써, 인권침해를 방지하거나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인권은 어떻게 침해되는가?; 인권침해는 어떻게 방지되거나 제거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인권은 고양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인권을 존중하고 변호하려는 의지, 결국, 인권에 대한 존중을 내면화하는 것이다.”

한 사회에서 인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권의 의미, 내용, 가치와 같은 것을 교육을 통해 그 사회구성원들에게 내면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청소년 인권교육의 필요성

청소년 인권교육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국제적인 선언문이나 규약들은 많이 있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인권교육이 실행되어야 하는 사회가 인권을 수용할 필요성이나

수용가능 구조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경제적 저발전 국가나 군사정권하에서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⁴³⁾.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우리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처한 국내외적 상황에서 우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급격한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생산물의 분배구조를 둘러싼 갈등의 심화, 그리고 장기간의 권위주의적 정치권력과 최근 민주화 과정을 급속히 경험하였다. 또한 수출지향적 경제구조와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지구촌의 유기적 연대의 강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점차 국제화라는 흐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국내외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발전중심적 사고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이나 권리에 대한 적극적인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들어 유엔가입, 세계인권규약의 비준으로 국제적 기준에 따라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검증하고 개선해야 한다. 예컨대 ‘블루 라운드’ 등의 시행은 우리에게 선진국다운 노동조건과 복지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고, 세계노동기구를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가 우리 문제점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발전과 민주화 그리고 국제화라는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도 국제적 규범 및 이념의 정착을 위한 인권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요구되고 있다(류은숙, 1994: 3-4). 이러한 세계적 추세로 볼 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환경은 노동, 환경, 정치, 인종 등의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차원에서 마련된 기준에서 벗어나 살아갈 수 없다. 새롭게 등장하는 세계질서와 그 규범하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와 규범을 내면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인권도 그러한 국제적 규범 가운데 하나로 점차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예컨대, 중국이나 북한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비난은 그들의 인권상황의 개선을 분명하게 요구하고, 인권문제를 경제적 문제와 연계시키고 있다. 이 사실은 인권이 우리의 국내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제화 과정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사회에서 권위주의적 정치권력의 붕괴이후에 시민의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경향이 부재한 상태에서 시작된 민주정치는 혼란과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다. 법질서의 문란과 사회적 갈등의 심화 등이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급속한 사회변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질서에 부합하는 가치관의 정립과 확산이 요구된다. 이는 권위주의인 사회질서에서 유지되었던 법질서와 사회적 규범을 민주주의와 그에 근거한 법과 규범적 질서로 전환하는 것을 통해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각자의 권리를 정당한 방법으로 주장

43) 이 말은 저개발 국가나 파시즘하에서 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행해질 필요가 없다거나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침해가 빈발하고 따라서 인권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하지만 인권과 경제발전, 혹은 민주주의간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존재한다.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민주화된 사회에서 인권을 향유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물론 이들 국가에서 향유하고 있는 인권의 성취가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다.

하고 공공의 의무를 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인권교육이 절실히 요청된다.

이와 같이 국내외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인권교육은 단지 당위적으로 요청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민주화나 국제화, 그리고 복지사회의 진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결국 인권교육은 우리사회의 유지와 개인들의 자아실현적 차원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등장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인권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그들이 처해있는 사회적 상황과 관련시켜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장유유서와 같은 전통적인 규범에 의한 사회적 제약은 많지만 사회적 배려는 항상 우선 순위에서 뒷전인 경향이 있다. 이는 전근대적인 수직적이고 서열적인 인식과 규범체계가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회로 점차 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은 정당한 이유없이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행동이나 권리를 제약당하고 있다. 반면에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그들이 접해서는 안되는 많은 유해환경들은 상업주의에 의해 점차 확산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활환경인 학교와 가정을 나눠 살펴보면, 학교에서 청소년들은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 교사와의 수직적 관계, 권위주의적 학습분위기, 체벌과 같은 반인권적인 관습의 잔존, 그들과 관계된 일에 대한 의사결정의 자율성의 부재 등 열악한 학습 환경에 처해있다. 학교는 존엄성을 지닌 인간으로 대하기 보다는 단지 효과적으로 교육시켜야 할 피교육자로, 나아가 규제와 통제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다. 또한 물리적인 조건에 있어서도 시대에 뒤떨어진 학교기물, 학습기자재 등 교육여건이 낙후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켜 사교육비의 증가를 부추기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같은 학교 환경은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전통적 가치관과 일제시대의 강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교육 풍토의 잔존, 교육에 대한 투자 부족이 우리나라 교육계에 지속된 결과로 보여진다.

가정에서도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압력, 가족간 갈등과 소외, 가정의 권위주의적 의사결정, 의사소통의 부재와 이에 따른 상호이해의 부족으로, 많은 청소년은 소외된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청소년은 범죄나 학교폭력과 같은 문제로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모두 청소년 개인들의 책임으로 환원시키기는 어렵다. 학교폭력과 같은 문제행동들은, 청소년이 처한 사회적 환경에서 기인한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청소년 문제행동은 그들에게 자신과 타인의 권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권교육은 인권을 강조하고 있다기 보다는 오히려 기존 법질서의 준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권리의 규제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김각, 1995: 35-39). 물론 인권은 그에 수반하는 의무와 함께 교육되어야 하지만, 학교교육에서 실질적인 인권교육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의 부재는 인권교육 자체가 인권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 청소년 인권이 경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국내외적 상황, 특히 청소년이 처한 사회, 학교, 가정 환경은 청소년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들은 미래의 담당자이며 가능성 있는 그들에게 책임있는 개인과 시민의 가치들과 그 행위유형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유네스코, 1993: 28).

4) 청소년 인권교육의 목적

인권교육의 목적은, 청소년에게 인간 존엄성의 존중을 발전시키고 인권의 기본적인 원리를 주장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케 하여,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인간적인 사회를 건설하게 하는 것이다(Alvarez 등, 1994).

청소년에게 인권 교육과 인권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기대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권의 보장과 인권침해를 예방, 치유할 수 있는 굳건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권리에 대해 알게 하고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문제의 발생을 막을 수 있는 힘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문제행동, 그리고 교사들에 의한 폭행의 방지에도 인권교육은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로 인권을 위한 교육은 그 자체가 이미 인권이며, 사회적 정의와 평화 그리고 발전의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인권의 구현은 민주주의의 보호와 사회적 발전에 일익을 담당한다.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은 타인들의 권리와 함께 자신들의 인권을 분명히 알게 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인권 신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로 청소년 인권교육은, 이후의 인권교육 방법에 대한 논의에서 볼 수 있듯이, 그 과정이 민주적이고 참여적이기 때문에, 삶의 질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

요컨대, 우리가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인권에 대한 존중을 제고하고자 한다면, 학교와 학교밖에서 정부 및 비정부 계획하에 종합적인 인권교육 및 훈련을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그들 자신의 권리와 다른 사람들의 권리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함으로써, 그들의 인권을 신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정의와 민주주의의 보호, 사회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인권교육의 국내외적 동향

1) 청소년 인권교육의 국제적 동향

인권교육의 당위성과 그 원칙에 대해서는 많은 국가들이 동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교육이 개별 국가에서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가에 대해 체계적으로 수집된 자료가 부족하다. 하지만 인권관련 활동은 유엔이나 비정부 국제적인 인권단체가 비교적 눈에 두드러진다. 이와 같은 국제적인 인권단체로는 유엔인권센터와 엠네스티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유엔인권센터는 유엔의 중요한 인권기구이다. 인

권센터는 유엔사무국의 일부로서 인권위원회, 인권소위, 조약에 근거한 대부분의 인권기구들 그리고 다른 유엔 기구들의 인권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에 따른 인력지원을 받고 있다. 인권센터에는 모든 인권기구를 지원하고 인권프로그램을 운영하는 45명 이상의 상근 전문가들이 일하고 있다.

비정부 조직 인권단체로 세계인권선언과 다양한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인권의 원칙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대표적인 단체로는 국제사면위원회가 있다. 국제엠네스티의 목표의 하나는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영구적으로 당연히 지녀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책임을 알게 하는 것과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다른 단체보다 새로운 “인권세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교사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과 교육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엠네스티의 활동가들이 지역의 교사들을 만나 자문을 구하고, 학교교과과정에서 인권교육을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 인권영화를 상영하거나 인권자료를 제공하고 전시회를 개최하도록 권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학교연극부에 인권을 주제로 한 연극을 공연하거나 학교에서 간행하는 출판물이나 예술행사에 인권을 테마로 할 것을 권고하도록 조언하고 있다(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1993).

서구 선진국가들에서는 독립된 교과목으로 인권교육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인권이라는 규범이 민주주의의 발달이라는 역사적 진행과정에서 이미 각종 사회제도속에 제도화되어 있고, 사회성원들의 일상생활속에서 내면화되어 있다. 즉, 선진국가에서 인권은 어느 정도 생활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서구 선진국에서는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인권문제, 예컨대 냉전체제의 종식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거부증, 인종주의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UNESCO, 1993). 또한 선진국가들에서는 시민운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감시활동을 하며 각 국가의 국제 인권단체들의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2) 우리나라 청소년 인권교육의 실태

우리나라의 인권교육과 훈련은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에서 충분히 제도화되지 못했다. 학교교육에서는 국민들의 권리내용 보다는 사회안정과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여 권위주의적 질서를 정당화하는 경향이 강했다. 중·고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권이나 권리와 관련된 교육내용은, 사회과의 법질서를 설명하는 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현행 5차 교과과정에서는 중학교 2학년 사회과목에서 범일반적인 기초를 다루고 3학년 사회에서 헌법의 기초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적할 수 있다(김각, 1995).

첫째, 교육내용이 법지식 교육으로 일관하고 있다. 중학교 단계의 법질서 교육목표는 법적 태도를 길러, 실제 생활에서 법질서를 생활화하여 질서를 지키고 책임을 다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법질서의 준수를 습관화하는 데 중점

을 두어야 하는데도, 교과내용은 법개념의 이해에 치우쳐 있다.

둘째, 내용서술이 너무 추상적이다. 실생활에서 당면하는 법적 분쟁, 갈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법의 일반원칙만을 개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셋째, 학습할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어렵다. 불과 몇시간의 수업시간이 배정되어 있는 데도 취급해야 할 내용은 법의 기초이론, 헌법, 형법, 민법, 사회법 등 법체계 전반에 걸쳐 있어 용어를 이해시키기에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이다.

현행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는 사회과를 「정치·경제」와 「사회·문화」로 분류하여 「정치·경제」는 필수공통과목으로 「사회·문화」는 인문계열만의 필수과목으로 하고 있다. 법질서는 「정치·경제」에서 헌법을 다루고 있고, 「사회·문화」에서 헌법을 제외한 일반법 분야를 각각 개론 형태로 다루고 있다.

법지식 편중성, 내용의 추상성과 광범위함은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내용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중학교 내용보다 한층 학문에 접근하였을 뿐이다.

고등학교 학생은 자율적인 규칙형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존 법질서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기성세대, 기존체계에 대하여 강한 반발심을 나타낸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은 일반이론보다는 그들이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문제의 해답을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찾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교육이다.

이성문제, 진로문제, 친구문제, 현실과 이상의 갈등에서부터 삶, 죽음과 같은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까지도 고민한다. 법질서 교육은 그들이 고민하는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예컨대, 교우간에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된 민법조항을 제시하여 그들 조항속에 포함된 정신들을 체득할 수 있도록 토론하는 방법이 그 중 하나이지만 현재 교과내용은 이런 점을 도외시키고 있다.

현행 법질서 교육내용은 이상적인 법이념과 법생활 현실간의 괴리를 배꾸어 주지 못하고 있다. 가령 영장제도나 연좌죄 금지조항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학생들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이 제도 운영과 작용이 헌법이념과 괴리현상을 나타낸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그 처방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생각해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질서 교육내용 편성에도 문제점이 발견된다. 헌법단원의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10면중 기본권은 5면을 할애하여 나열에 그치고 있는 반면, 기본권의 제한과 의무에 3면을 할애하고 있다. 또한 「통치기구의 구조와 기능」은 18면에 걸쳐 상대적으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인권교육은 교육내용과 함께 교육방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대부분 강의에 의한 주입식 수업방식은 체계적 지식을 단시간내에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태도나 행동을 중요시하는 법질서 교육의 방법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법질서 교육에서는 역할놀이, 모의게임, 토론학습, 방문학습, 시청각학습, 초청학습 등 다양한 수업모형이 활용될 수 있는데, 실제 학습과정에서 거의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강의식 수업이라 할지라도 적절한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법질서 교육수업에서 교과서의 자료가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활용이 안되는 이유로는 활용할 자료가 거의 없거나 교과서 내용만

으로도 시간에 쫓긴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입시준비 위주의 수업에서 파생한 문제로 보여진다.

3.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

우리나라에서는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한 경험이 부족하고, 인권과 인권교육에 대한 연구조차 빈약한 형편이다. 또한 일상생활속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서구 선진국에서의 인권교육은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에서 잘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사회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우리와 상황이 유사한 아시아 지역에서 제안된 인권교육 자료집을 주로 참조하였다. 인권교육을 위한 아시아 지역 인권 자료센터(Asian Regional Resource Center for Human Rights Education)와 국제 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 Education for Freedom)에서 최근 발행한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여기서 제안된 인권교육의 내용과 그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⁴⁴⁾.

1) 청소년 인권교육의 내용

인권교육의 내용은 인권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시된 인권교육의 목표들에 의해 규정된다. 인권교육에서 일반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목표는 우선 인간의 존엄성과 그것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인간의 권리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고, 그 권리가 구체적인 현실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가를 평가하여, 현재 인권문제를 야기하는 현실적 요인들을 확인하고, 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행동해야 할 것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엠네스티(1994)는 인권교육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인권교육의 모듈과 각 모듈에서 달성해야 할 학습지표들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서 인권교육에서 다루야 할 학습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인권교육이 실시된 다음에 학습자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 인권과 인간 존엄성의 의미와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2. 세계인권선언의 내용과 그 내용의 기초 원리들에 대해 토론하며
3. 우리나라의 현재 인권 관행을 평가하고
4. 인권침해를 개선하고, 텍스트와 실제 상황 사이의 간격을 메울 수 있는 치료책과 방법을 도출하고
5. 인권 투쟁과 수호의 상황에 자기자신을 위치시켜보고
6. 모든 시민들이 인권을 향유하는 것이 정당하고 인간적인 사회의 필요한 전제

44) 이 장의 내용은 “인권교육 자료집”과 “인권교육의 기법”을 주로 참조하였다. 그러므로 세부내용에 대한 인용은 각주를 생략한다.

조건이라는 것을 인식한다.

이러한 목표는 인권교육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뤄져야 할 인권교육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권교육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학습내용은 다음에 제시된 단계별 학습 모듈과 그 모듈에서의 학습지표를 통해 보다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 모듈은 엠네스티에서 제안한 한 예이지만 각 모듈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습지표들은 그 내용이 인권교육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내용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단계별로 조직된 각 모듈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와 그 학습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듈 1 :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

인권을 공부하기 시작한 학생들이 알아야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식은 인권이 무엇에 대한 것인가 하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인권이란 인간 존재로서 자신의 존엄성을 보호, 존중해야 한다는 개인의 주장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권을 존엄성의 개념과 연결시키는 것은 개인에게 그러한 권리를 적절히 주장하도록 이끌어 주는 분명한 틀을 제공한다. 또한 그러한 관계는 인권이, 자신의 존엄성이 얼마나 더 많이 보호, 존중되어야만 하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동적이고 발전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세계인권선언이 존중, 보호, 증진되어야만 되는 정부에 의해 인정되는 단지 최소한의 권리 체계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까닭에 인권 개념에 대한 분명하고도 충분한 이해가 있는 다음에, 학습자들로 하여금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보다 개선되고 포괄적인 권리 체계를 개발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세계인권선언에서 제창된 기본적 권리에 학습자들이 친숙해지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다.

이 모듈은 인권 개념을 인간 존엄성 개념에 정착시키고자 한다. 대다수가 그러하듯이 학습자들은 이미 인권 개념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다. 보다 복잡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학습자들이 분명한 인권 개념을 가지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 모듈에서 권리의 불가분성(indivisibility), 보편성(universality), 불가침성(inviolability)과 같은 핵심이 강조되는 것은 필수적이다.

권리를 보는 틀이 마련된 이후에, 국제적 권리 문서 [즉, 세계인권선언(UDHR),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ESCR) 그리고 ICCPR에 대한 선택 의정서]와 같은 국제적 텍스트로 이용되는 인권의 법적 기초가 소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 모듈이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인권 지식의 부족에 의해 야기된 사람들 사이의 비관적인 태도의 부재라는 문제이다. 그런데 인권교육자의 경험에 따르면, 인권에 대한 인식이 그것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의 적극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학습자의 의식의 수준을 인식에서 행동으로 이끌어 올릴 필요가 있다.

모듈 1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습득해야 할 학습지표는 다음과 같다.

- 인권의 정의를 공식화하라
-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연관시켜라
- 인권의 중요성을 제시하라
-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인간 존재의 조건을 기술하라
-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인간의 잠재력을 발휘하며 고양시킬 수 있는가를 지적하라
-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권이 무엇인가를 예를 들어 제시하라
- 여러 가지 인권을 분류하라
- 각각 분류들의 특징을 설명하라
- 각각의 분류에서 특별한 예를 선정하고 설명하라
- 이러한 권리들의 기저에 놓여있는 원리들을 지적하라
- 다른 사람들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표명하라

모듈 II : 인권을 맥락 속에서 파악하기

초기 학습자들에 의해 제기되는 가장 일반적인 질문은 이러한 권리의 이용 범위와 한계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매우 복잡하고 심오한 함의를 지닌 유익한 질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결과로서의 자유는 그것을 증진시킨 바로 그 사람들에 의해 남용될 수도 있다.

인권에 대한 전통적이고 법률적인 관점은 오직 정부 전복의 경우에만 그 침해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중심적 시각은 인권과 관계된 측면에 대한 쟁점들을 불러일으켰다. 여성의 경우 가부장제는 여성다움의 그 핵심을 손상시키고, 노인정치는 젊은이를 소외시키며, 상부구조는 원주민의 문화적 특성들을 변두리로 배치한다. 간단히 말해서, 인간 존엄성 차원에 대한 가능한 침해의 모든 범위는 인권침해인가?

진정한 인권의 관점은 피해자 중심적(victim-centered)이다. 정부나 혹은 비정부 실체(entities)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했을지라도,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다면, 그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그리고 도덕적 권한을 가져야만 한다. 이것이 정부가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증진해야 할 의무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인권의 수호는 정부의 최우선 책무이다.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존엄성을 깃잡는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인권 역시 다른 사람에 대한 학대로 그들 자신이 피해자가 된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물론, 개선은 피해자에 의해 추구된다. 따라서, 침해자 자신들도 피해자 만큼 인권에 대해 교육받을 필요가 있다.

인권침해는 사회적 맥락속에서 발생하므로 이러한 맥락들을 찾아내므로써 자신의 권리 보호의 영역과 한계를 규정할 수 있다. 인권을 맥락속에서 파악하는 것은 인권침해를 양산하는 조건을 만들어 내는 활동하는 세력들을 확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모듈은 학습자들이 그들의 경험을 주어진 사실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자신의 개인적 경험과 그것들이 발생하는 사회적 맥락의 연관과 상호관련성을 밝히

는 데 실패함으로써 야기된 학습자의 무관심과 수동성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그러한 모듈은 학습자들이 그들의 객관적인 조건을 반추할 수 있고, 그 조건과 학습자들이 그들 자신을 위해 상상하고 있는 보다 바람직한 조건을 비교할 수 있는 학습 상황을 포함하고 있어야만 한다.

전망과 실제사이의 명백한 차이에 대한 인식은 그 차이의 본질에 대한 심층 분석에 이르게 하는 의문들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듈은 그 차이가 개인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을 포함할 것이다. 이 모듈은 본질적으로 학생들을 자각시켜 인권이 침해되고, 체계적인 인권침해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것은 학습자의 개인적 수준에서 구조적 또는 체계적 수준으로 인권침해에 대한 의식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침해에 대한 체계적인 관점은 어떠한 위반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저항을 불러일으키기 쉬울 것이다.

모듈 II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습득해야 할 학습지표는 다음과 같다.

- 인권침해의 양상을 상세히 보여주는 상황을 인용하라
- 인권침해의 정의를 공식화하라
- 사회에서 그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람들의 집단을 지적하라
- 인권침해를 범하는 개인들, 실체(entities), 그리고 상황들을 지적하라
- 어떻게 이들이 인권을 침해하는가를 설명하라
-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민족적, 성적 세력을 지적하라
- 자신의 인권침해 경험을 공유하라
- 개인적 경험을 인권침해를 일으키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인종적 그리고 성적 세력들과 연결시켜라
-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와 조직을 지적하라
-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감정을 이입하라
- 역사속에서 인권침해의 형태들을 지적하라
-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역사적 세력을 지적하라

모듈 III : 인권의 존중, 보호 그리고 증진

인권이 체계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학습자의 의식은, 인권을 집단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존중하고 보호하며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발의와 활동들에 대한 지식과 이해에 의해 보다 더 고양되어야만 한다.

이 모듈은 학습자의 의식의 수준을,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조건들에 대한 지식에서 그러한 조건의 확인과 기술(記述)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으로 고양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한 조건들은 인간 생활의 질의 향상에 보다 도움이 되고, 인간의 욕구에 보다 잘 호응하는 어떤 것으로 변화되어야만 하고 또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 자신의 단호하고 창조적이며 신중한 노력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이와 같은 조건은 움직일 수 없는 삶

의 현실이나 당연시되는 현실이 아니라 인간사회의 역사의 뒤를림이다. 자신의 존엄성에 대한 그러한 체계적인 침해는 사람들 자신들의 집단적인 발의를 통한 조직적인 저항에 의해서만 오직 방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조직적인 노력이 법제도에 의해 제공되는 즉각적이고 예방적인 조치에 관한 실질적인 지식 보유의 중요성을 희석시키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이 모듈은 변론보조(paralegal) 지식을 가르치는 전략과 기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한 체제가 인권침해를 완전히 제거하는 데는 그 자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인권침해를 일으키는 바로 그 구조의 특징적인 요소 내에서 개인적인 행동은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 옹호자는 각 개개인에게 그러한 체제를 인권에 긍정적인 기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창조적인 방법에 대해 생각하도록 만들 수 있는 변호보조인이 되어야만 한다.

결국, 사회적 변화는 하루밤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 그것은 장기적이고도 지루한 변화와 통합의 과정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 목록에서 논의된 변호보조에 대한 기법이 구체적인 법률 조항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강화를 위한 단지 시발점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중요하다. 변호사와 같이 그 주제에 대한 권위자들에 의해 논의되는 것이 필요한 본질적이고 절차적인 법률적 측면과 관계된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

모듈 III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습득해야 할 학습지표는 다음과 같다.

- 인권 수호의 필요성을 정당화하라
- 인권상황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현실화하라
- 사회적 제도들과 조직에서 인권을 수호하고 증진하는 데 개인의 역할을 지적하라
- 인권을 증진, 보호, 존중할 책임이 있는 개인들과 기관들을 지적하라
- 개인적, 집단적 그리고 제도적 수준에서 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 수단과 전략을 제시하라
-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구상하라
- 인권옹호를 위한 헌신과 인내를 발전시켜라

모듈 IV : 국제적 유대

인권은 세계적 관심사로 보아야만 한다. 이 모듈은 학습자들이 인권은 국경을 초월한다는 것을 인식케 하는 학습 상황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의 민족들과 그들의 정부는 인권이라는 공통의 맥락에 의해 묶여져 있다.

인종청소 · 종교적 비관용 · 이념적인 독단 · 성차별 그리고 다른 형태의 광신의 와중에서, 우리자신에 의해 만들어진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파편화시켜왔던 장벽들에 의해서 서로 차별화된 우리 모두가 유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만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조화될 수 있다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 때문에, 인권은 침해할

수 없는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남을 것이다. 모든 민족과 국가에게 정의롭고 인간적인 진정한 국제질서는, 오직 모든이의 마음에 전세계적인 관점을 구축하고 국제적 유대감을 형성함으로써, 진보할 것이다.

이 모듈은, 기존하는 국가들의 상호의존성에 의해 만들어진 자신들의 국경밖에서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학습자들과 교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국내의 제도나 구조 만큼 국제적 질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인간사회는 서로 뒤엉켜져 있다. 국가는 통합된 체계의 구성 부분이다. 따라서 인권의 증진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의 고민이며 성과물이다.

모듈 IV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습득해야 할 학습지표는 다음과 같다.

- 국제질서에서 인권침해를 일으키는 세력을 지적하라
- 국내 인권침해와 다른 국민들의 인권경험을 연결시켜 보라
- 보다 나은 인권 기록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지적하라
- 인권을 증진시킬 수 없는 국가들을 지적하라
- 그들의 인권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국가들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력들을 지적하라
- 국제 공동체에서의 세력들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하라

2) 청소년 인권교육의 방법

인권교육에서는 기존의 권위주의적인 주입식 교육방법보다는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경험에 기초하는 권한 부여식 방식을 주장한다. 이 권한 부여식 방식과 그 기초적인 원리를 먼저 살펴본 후에, 현실적으로 인권교육이 실시되는 사회구성원들의 인권의식 수준을 분류하고 그 의식수준에 상응하는 학습 모듈을 제시할 것이다.

인권교육을 위한 아시아 지역 자료 센터(ARRC)와 엠네스티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권 교수방법은 전통적인 훈시적 교육과 대비되는 학습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엠네스티(1994: 19-20)에 따르면 전통적인 인권교육은 보통 훈시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것은 인권이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으로 학습자들의 마음에 담겨져야만 하는, 이미 잘 정제된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의 체계로 가르쳐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교육에 대한 그러한 접근법은 기계적인 학습이 팽배하게 되고, 학습자들은 배워야만 하는 수동적인 수용자로 취급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이 방법은 학습자들이 인권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구상하는 데 전문가나 학계의 의존을 보다 심화시킨다(Alvarez 등, 1994).

대신에 인권 교수법의 최우선 목표로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학습자들이 그들 자신의 객관적인 현실에 기반한 인권에 대한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창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자의 자율성이다. 학습자들이 무비판적,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는 것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학습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법들과 전략들을 도입해야만 한다. 학습자들에게는 그들의 사고 유형을 재고하고 재검토하여, 그것

들을 그들이 경험한 삶에 따라 구성할 수 있는 학습상황이 제공되어야 한다.

어떤 교수 기법들도 특정 주제에 대한 학습자의 사전 지식을 끌어내고 탐색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지식의 창조와 재창조 과정라는 학습과정에 학습자들도 동반자이고 또한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들은 인권 지식의 잘 정제되고 정적(靜的)인 유일한 근원이 아니라 지식 창조와 재창조의 촉진자이다. 이러한 종류의 학습은 학습자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식을 가져오고, 인권의 본질인 그들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가져온다.

위의 논의에 근거해서, 인권교육은 다음과 기초 원리에 근거해서 다양한 기법들이 개발되고,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ARRC, 1994).

1. 경험적 - 연구의 목적이 학습자들의 객관적인 조건과 그러한 상황하에서 인권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만 한다.
2. 활동중심적 - 학습자의 사전 지식은 이후 토론의 기초로 쓰기 위해 이끌어 내야만 한다. 학습자 중심 활동은 이것들을 학습자로부터 끌어낼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활동이 학습자들에게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표현할 활동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자들은 그들 자신의 인지들을 이용하여 지식을 이해한다는 것을 주목해야만 한다. 따라서 소개된 모든 새로운 지식은 그들 자신의 틀에 통합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사전 지식과 새로운 지식 사이에 모순이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부분 그러하듯이 학습자들은 새로운 지식에 저항하거나 또는 그들의 틀이 모순을 수용하여 적응한다.
3. 문제제기적 - 촉진자들은 학습자들이 응답에서 비밀관성, 부조리를 끌어 낼 수 있는 문제들을 제기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사전 지식에 의문을 갖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한 과정은 학습자들이 그들의 사고를 통해서 생각하도록 자극하고, 그들의 사고 유형을 논리적으로 보다 일관성있고 경험적으로 조리가 맞게 하기 위해 그들의 사고유형을 재정립하도록 강제한다.
4. 참여적 - 기법들은 개념의 명료화, 주제의 분석, 활동의 실행에 집단적인 노력을 독려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보여주는 것도 그것에 의해 그의 경험과 지식이 확장, 정당화, 그리고 반증할 수 있는 한 방법이다.
5. 변증법적 - 단지 학습자의 사전 지식(명제)을 이끌어 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실, 자료, 통계 등(반명제)과 같은 다른 자료에서 나온 지식과 그것들 그들이 비교하도록 하여, 결론적인 생각을 종합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
6. 분석적 - 학습자의 응답에서 나온 주제와 그 주제들과 연관된 기초 원리는 촉진자나 학습자 자신들에 의해 제기되어야만 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촉진자들은 “왜”와 “어떻게”라는 질문을 제기해야 한다. 그러한 질문은 학습자들이 왜 사건이 일어났고,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를 생각하게 만든다. 또한 학습자들에 사건과 다른 사건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그들은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물어보아야 한다. 이 질문들은 학습자들이 분명한 것 이상의 것을 이해하도록

록 도와주는 질문이다.

인권의 실현은 이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의 구체적인 사회적 여러 환경적 여건과 관계되기 마련이다. 비민주적인 정치권력이나 권위주의적 사회규범하에서 인권의 실현은 그 사회의 기존의 가치들과 충돌하거나 갈등하기 쉽다. 이러한 이유로 인권 가치의 현실화는 그 실현을 방해하거나 저항하는 요인들뿐만 아니라 그 실현을 용이하게 하는 사회적 세력이나 상황하에서 진행된다. 즉 인권교육은 진공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러한 주어진 상황의 전제아래서 어떻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그 사회의 인권 발달 수준이다. 즉, 사회구성원의 인권의식 수준을 적합하게 인권교육이 주어 져야 할 것이다.

필리핀 노말 대학교 연구소(1987)에 의해 수행된 한 연구에서, 인권의식의 네 가지 수준이 지적되었다(Alvarez 등, 1994).

수준 1 - 복종과 자기부정 - 인권침해에 대해 무조건적이고 무비판적인 복종.

수준 2 - 수동성과 관심의 부족 - 인권을 의식하고 있지만, 두려움이나 자기자신의 위험, 다른 사람들의 인권피해를 자기자신과 관련시키는 능력의 부족, 또는 이러한 인권침해를 양산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조건들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 의해,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는 관심의 부족과 거부가 존재한다.

이 수준의 다른 변형들로는 패배주의, 의존과 기회주의가 있다. 패배주의는 인권을 발생시킬 객관적 조건들은 불변적이며 따라서 개인이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 어려움에 대한 복종과 인내를 초래한다. 의존과 기회주의는 인지된 직접적인 개인의 이익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권의 증진이나 옹호를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수준 3 - 제한된 발의 - 인권의 실전을 가져온다. 관계당국에 고충을 호소하는 것과 같은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방식을 통해 인권침해의 방지나 제거책을 찾는다.

수준 4 - 적극성과 자립 그리고 발의 - 조직화된 집단적 노력이나 각성된 개인의 욕구에 의해 인권에 대한 의식적, 활동적, 독자적인 수호에 나서게 된다.

인권의식에 대해 이와 같은 수준들이 가정될 수 있다면, 인권교육은 학습자들의 의식수준을 어떻게 복종에서 비판적 옹호로 전환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겨냥해야 하는 의식형성의 과정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지식의 부족이나 개념에 대한 불명료한 이해에 기인한 무비판적인 인권 의식은 학습자들에게 인권 개념을 단순히 보여 줌으로써 쉽게 호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인권교육 경험에 비취 볼 때, 변화시키기 어려운 것은 자신의 인권이 실제로 침해받고 있다는 인식이 부정되거나 부족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권침해 경험이 자신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무비판적인 태도이다. 그것은 무의식적인 자신의 억압의 내면화에 의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경험들을 자연적인 삶의 사실이나 천부적인 것으로 생각함으로써, 결국 변화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인권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 앞에서의 논의에서, 학습 모듈이 단계화되어 있고, 발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인권의식의 수준에 상응하는 학습 모듈이

제시되어 점차 학습자들의 인권수준을 사다리식 발전단계를 밟아 고양되도록 되어 있다.

아마도 무지의 결과인 수준 1은 단순히 학습자들에게 인권의 개념을 제시하고, 그 개념들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제시될 것이다(모듈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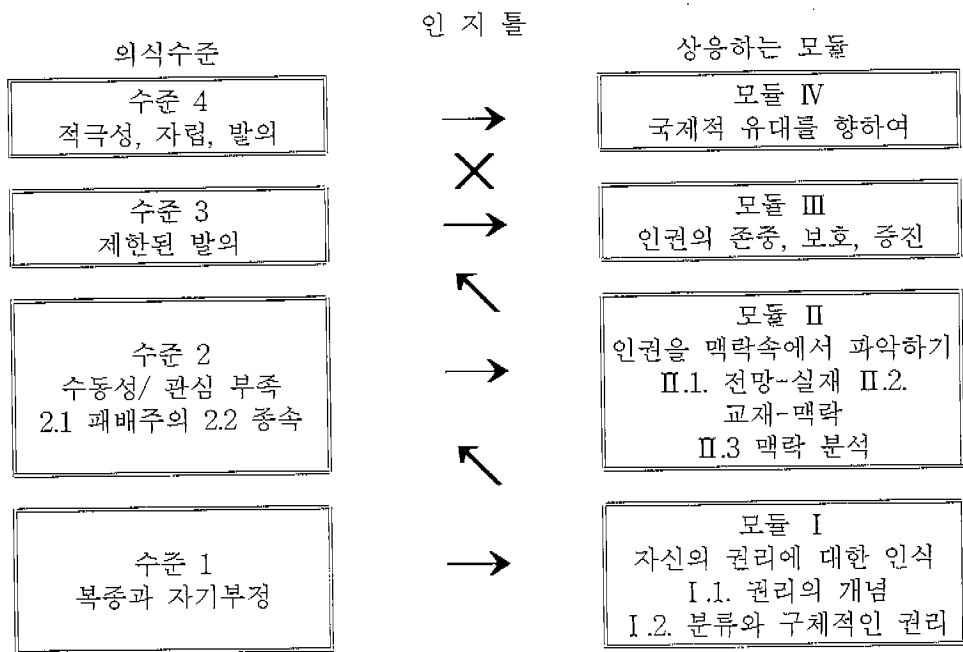
수준 2는 학습자들이 아래와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시될 것이다:

- 가) 바람직한 사회와 그들의 현실 사회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 나) 이 차이안에 자기 자신을 위치시켜 본다.
- 다) 자신의 경험과 다른 사람의 경험을 연관시켜 본다.
- 라) 인권침해를 야기하며,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세력들을 확인한다.
- 마) 한편으로 이러한 사회적, 정치적 세력과 다른 한편으로 학습자의 개인적, 사회적 경험 사이의 연관관계를 확인한다(모듈 II).

모듈 II는 학습자들에게 그들의 조건이 변화될 수 없는 주어진 실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수준 3은 인권침해가 개인적, 집단적으로 법적, 초법적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방지되고 개선될 것인가에 대한 학습자 자신들의 인식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모듈 III, IV).

이와 같은 학습자의 의식수준과 그에 상응하는 학습 모듈을 통합해서 인권교육의 방법을 전체적으로 제시하는 인권교육의 개념적 인지틀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4. 인권교육을 위한 대안 모색

청소년의 인권의식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 자신의 인권을 분명히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인권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알려진 만큼 지켜지고,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UNESCO, 1995).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분명히 인식함과 동시에 청소년의 인권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에게 중요한 환경인 학교와 가정에서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해야 한다. 자신에 대한 존중감은 주위환경에서 자신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지지해 주는가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권교육을 통해서 청소년 인권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가능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인권교육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내용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먼저 학교교육 과정을 통해서 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권교육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서 볼 때 학교교육에서 학생에게 권리와 그에 따른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바람직한 일이다. 시민단체와 같은 비정부 기구가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청소년 인권교육은 정규교육인 학교교과 과정에서 비중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인권은 민주사회에서 요구되는 보편적인 인간의 행위윤리라고 볼 때, 공교육 부분에서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권교육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 기존의 인권교육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 실시된 청소년 인권교육의 내용은 인권에 초점을 두고 있다기 보다는 법질서 교육의 차원에서 권리 개념을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교육은 기존질서에 순응적인 인간을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권교육이라기 보다는 기존질서에 대한 사회화에 강조점이 두어졌다.

따라서 인권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권의 교육에 초점을 두고, 사회안에서 개개인이 자신의 인권을 마음껏 향유하기 위해 요구되는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가르쳐야 한다. 즉 기존의 법질서 교육과 같이 사회성원들의 책임이나 의무를 강조하는 교육에서 권리와 책임을 균형있게 교육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수준에 있어서도 권리주체의 일상생활에서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다루어야 한다. 교육수준이 일상생활과 유리된 채로 추상적인 수준의 지식획득에 두어질 때, 이는 또다시 인권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 인권교육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1. 학생 자신들이 어떤 권리와 책임을 지니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 먼저 인권과 인간 존엄성의 의미를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 자신이 어떤 권리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 배워야 한다. 최소한 세계인권선언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기본적인 내용과 기초원리를 이해한다.
 -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자신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한다.
2. 자신이 가진 권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침해되고 있는 권리가 무엇인가를 알아본다. 그리고 자신에 의해 다른 사람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없었는가를 생각해 본다.
 - 교사에 의한 학생의 인권침해(폭력, 폭언, 부당한 대우, 차별, 특정 책구매 강요, 학생신상 정보 유출, 감정적인 체벌 등)가 발생하고 있는가? 만약 이러한 사례가 있다면, 학생들의 어떤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 학생들 사이에서 인권침해(폭력, 금품갈취, 집단괴롭힘, 언어폭력 등)는 발생하지 않는가?
 - 학교에서 학생들의 권리(학생회의 자율성 보장, 학생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학생의견 존중, 충분한 학습 환경조성 등)가 충분히 보호되고 있는가?
 -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금품갈취, 폭행, 언어폭력, 성희롱, 부당한 차별 대우 등)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 자신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는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
3. 다른 사람과 갈등상태에 있을 때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 갈등이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못했을 경우, 초래된 결과에 대해 알아본다.
 - 학생간, 학생과 교사간 갈등시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4. 우리 학교나 사회에서 인권침해를 발생시키는 구조적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본다.
 - 인권침해가 단지 일회적인 현상이 아니라면 그 현상을 야기하는 좀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토론해 본다
 - 가난한 사람,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나 소수집단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이해해 본다
5.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아본다.
 - 교내에서 교사나 학생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 학교밖에서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그 문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있는가를 알아본다.
 - 다른 사람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알아본다.
 - 인권침해를 구조적인 차원에서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교육내용의 변화와 동시에 인권교육은 기존의 강의중심적 교수법에서 토론과 참

여를 중심으로 하는 교수법으로 변화가 요구된다. 인권교육은 단지 지식자체의 습득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행위윤리를 체득하는 것이 목표다. 따라서 학생들이 그들의 일상생활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활발한 토론과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는 공허하다.

교육방법상의 기초원리에서의 변화와 함께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인가를 검토해 보자. 엠네스티 영국지부(1996)에서는 다양한 교과목에서 인권을 가르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예컨대 지리교육에서 토지와 경작권, 원주민의 권리, 물·음식과 다른 기초적인 권리, 상호의존의 개념 등을 교육할 수 있고, 역사교과에서는 민주주의의 기원, 아동의 노동, 여성의 권리 등 인권과 관계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다. 이외에도 종교, 미술, 음악에서도 인권관련 소재를 채택함으로써 인권교육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유네스코가 '세계 관용의 해(1995)'를 맞이하여 만든 관용에 대한 교재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학교교육에서 이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다(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95).

우리의 경우 사회과 교과목에서 인권을 교육하고 있으나 다른 교과목에서 인권관련 주제를 다루는 경우는 거의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어교육에서 인권관계된 주제의 소설이나 시를 선정해 읽거나, 신문에서 인권관련 기사를 채집해 토론하거나 그곳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작문하는 것도 가능한 인권교육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인권교육은 그 자체가 하나의 인권실현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재미있고 실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게임과 놀이를 통해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게임을 이용한 교육방법은 이미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인권교육 기법에 대한 교재를 참조하면 된다⁴⁵⁾. 이 방법은 청소년이 그 게임에 열중하다보면 저절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방법에 비해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선 흥미있게 인권을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청소년 인권에 대한 교사교육

청소년의 사회의식의 형성에 있어 교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그런데 학교에서 교사들이 가르치는 교과내용과 학생들을 대하는 실제 태도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예컨대, 학교폭력의 경우에 학생들간의 폭력에 못지 않게 학생에 대한 교사의 폭력도 심각하다. 학교내에서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는 지나치게 수직적이기 때문에 교사에 의한 학생의 권리침해는 별 죄의식 없이 습관화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 사이에서 교사에 대한 불신도 상당한 정도에 달해 있다. 자신의 인권을 존중받아 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할 줄 안다. 학습의 장

45) 인권교육에서 사용되는 게임과 놀이의 기법을 소개하고 있는 교재로는 국제사면위원회가 쓰고 이용교·이희걸이 번역한 「인권교육의 기법」(1996, 한국청소년개발원) 등이 있다.

인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에 대한 각종 인권침해는 단지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권침해를 학교에서 잠재적으로 교육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에게 학생들을 단지 교육의 대상이 아닌 권리를 가진 주체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존중되어야 하는가를 교육해야 한다. 청소년 인권에 대한 교사교육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학생들이 존중되어야 할 권리의 주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안다.
 - 학생들이 권리의 주체이며, 존중되어야 할 존엄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한다.
 - 학생들은 교사의 섬세한 배려와 바람직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안다.
 -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인식한다.
2. 교사에 의해 흔히 저질러지는 학생의 권리에 대한 침해사례를 알아본다.
 - 성적, 용모, 생활수준 등에 의해 학생들을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된다.
 -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에게 감정적인 체벌이나 구타, 혹은 언어폭력을 가해서는 안된다.
 - 학생의 잘못을 목격하였을 경우, 어떻게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교육하는 방법을 알아 둔다.
 - 학생들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성적, 개인신상 등)가 교육적 목적외에 어떠한 경우에도 교사에 의해 공개되어서는 안된다.
 - 학생들간에 일어나는 인권침해 사례를 목격하였을 경우, 합리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3. 교사나 학생에 의한 학생의 권리침해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 방향을 안다.
 - 교사들에 의한 학생의 권리침해가 청소년들의 마음에 어떤 상처를 남기고 결과적으로 청소년 비행과 연결된다는 것을 인식한다.
 - 학생에 의한 학생의 인권침해를 발견하였을 때, 그 문제에 대한 대처방식을 안다.
 - 기존에 교사에 의한 학생 인권의 침해 사례를 해결하는 방법을 안다.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청소년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치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청소년 인권에 대한 교재를 작성해서 교사들에게 배포하는 것이 가능한 한 방법이다. 나아가서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서 학생들이 어떤 인권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들의 인권이 어떻게 존중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교육이 행해져야 한다. 이외에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에서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3) 자녀의 인권에 대한 학무모교육

전통적인 자녀양육 방식은 자녀를 인권을 가진 주체라기 보다는 양육되고 보호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현재 청소년 자녀들은 부모세대와는 상이한 사회적 환경에서 태어나 성장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자녀교육의 방법도 시대변화에 조용해서 새롭게 변화해야만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변화가 요구되는 것은 자의식이 강한 청소년을 단지 통제와 양육의 대상으로만 취급하는 인식이다.

많은 가정에서 자녀들은 부모의 통제를 벗어났거나 효과적인 인성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부모세대와 자녀간에 존재하는 현실적인 차이, 즉 세대차이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자녀를 대하는 부모들의 잘못된 시각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그들에 대한 부모의 기대와 그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자녀에 대한 그들의 의무와 권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며, 그들은 독자적인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는 권리의 주체다. 부모의 정성스런 양육이나 보호는 자녀의 당연한 권리이다.

물론 부모의 양육권에 따른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도 당연한 것이지만, 그 권리는 자녀를 하나의 권리주체로 존중하는 범위내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들은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할 권리의 주체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부모들은 자녀들 앞에서 지나치게 권위적이거나 혹은 어떻게 대해야 할지 당황해 하고 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야 하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자녀의 권리를 인정하는 인격적인 방법으로 청소년을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민주형 가정에서는 청소년 비행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권리를 존중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할 줄 안다. 자녀의 권리에 대한 존중이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의 권리가 가정 밖에서 침해되더라도 그들은 그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당연시하기 쉽다.

그러므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그들의 어떻게 존중·보호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자녀의 권리에 대한 부모교육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다뤄져야 한다.

1. 자녀도 독립된 인격체라는 인식을 먼저 가져야 한다.
2. 가정내 의사결정시 자녀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
3. 자녀의 진로와 관련해서는 자녀의 의사결정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4. 형제자매간 성별과 나이 그리고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5. 자녀를 이웃이나 친척의 자녀들과 비교해서는 안된다.
6. 자녀가 잘못을 했을 경우에도, 일방적인 훈계나 처벌보다 스스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7.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폭언이 행사되어서는 안되며, 체벌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8. 자녀를 감정적인 흥분상태에서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한다
9.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할 줄 아는 태도를 가르쳐야 한다.
10. 자녀의 사생활을 보장해줘야 하지만, 자녀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 교육의 방편으로는 우리사회의 각종 민간단체(청소년종합상담실, YMCA,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들의 모임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녀교육에 대한 강의에서 자녀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 이유와 그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가능한 방법으로는 학교에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들이 어떤 권리를 가졌으며 그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제 8 장 정책제언

우리나라 청소년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수히 많다.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청소년과 아동 당사자에게 인권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일이다. 이는 학교교육과정과 학교밖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앞 장에서 ‘인권교육’의 소중함, 우리나라 인권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바람직한 인권교육의 모델과 방향을 제안한 바 있다.

아울러, 청소년인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몇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청소년인권에 관한 중추기구로서 ‘청소년인권위원회’를 법정기구로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도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4조)라고 규정하고 “이 협약상의 의무이행을 달성함에 있어서 당사국이 이룩한 진전상황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하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위원회를 설립한다”(제43조)고 강조하여서, 많은 나라는 ‘인권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인권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부문의 제반활동이 청소년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청소년인권센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권센터는 인권상담, 인권교육, 인권 관련 정보센터로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활동을 연결하는 역할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청소년인권을 위해서는 공적인 부문의 제도화와 함께 민간부문의 인권 관련 활동이 상호연계되고 협력체계망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비정부기구들이 정보교류, 공동사업의 수행, 국가와 공공기구를 상대로 한 활동 등을 위해서 ‘청소년인권을 위한 비정부기구협의회’를 조직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비정부기구협의회는 청소년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으기도 하고, 정부의 인권정책과 사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그 대안을 모색하는 일도 함께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구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일은 당위적인 필요성과 현실적인 여건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자들의 정책제언이 청소년인권에 관심있는 공적 담당자와 인권활동가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1. 청소년인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우리나라 청소년의 인권신장을 위한 중추기구로서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법정기구로 ‘청소년인권위원회’를 설치한다. 인권위원회의 설치·운영은 독립위원회로 하는 안, 국

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 그리고 청소년육성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두는 방안 등 여러가지 안이 검토될 수 있다. 각각의 안은 장단점이 있지만, 인권위원회는 청소년인권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과 평가, 인권교육의 기준과 지침서 개발, 청소년인권대회의 개최, 청소년인권상의 시상, 인권관련 주요보고서의 발간 등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또한, 위원회의 부설기구로서 ‘청소년인권센타’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위원회에 취약한 정책의 개발과 보급기능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1) 기관의 성격

- 청소년인권 신장을 중추기구
-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법정기구

2) 설립목적

- 청소년인권을 위한 범국민적 참여
- 청소년인권정책에 관한 심의·의결
- 청소년인권에 관한 국내외 대표 기관

3) 설립배경

- 체계적 청소년인권정책의 부재
 - 인권침해 청소년의 보호장치의 미약
 - 청소년인권을 경시하는 법령과 제도의 온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정책 조정
- 청소년인권교육의 활성화 필요성
 -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에서 인권교육의 관심증대
 - 선진국 수준에 맞는 인권교육 모델의 개발과 보급
 - 인권 관련 비정부기구의 지원
- 인권 관련 국제협약의 준수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의 이행
 -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의 이행 보고서의 제출

4) 기능과 사업

- 청소년인권 신장을 위한 중장기계획의 수립과 평가
 - 청소년인권 신장을 위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관련 사업을 매년 심의
 - 정부와 민간의 청소년인권 관련 사업에 대한 평가
- 청소년 인권교육의 기준과 지침서 개발

- 청소년인권교육 기준을 수립하여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반영
- 학생용 인권학습 자료집의 개발과 보급
- 교사용 인권교육 자료집의 개발과 보급
- 인권교육용 다양한 활동의 개발과 시연활동
- 청소년인권대회의 개최
 - 청소년인권활동가 지역대회와 전국대회 개최
 - 청소년 인권침해와 개선 사례의 발표
 - 국제 인권대회와 교류협력
- 청소년인권상 시상
 - 청소년인권 고양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시상
 - 청소년, 교사, 공무원, 사회운동가, 인권활동가 등을 모두 포괄
 - 매년 1회씩 대상과 금상을 시상
 -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인권상으로 발전
- 청소년인권 관련 주요 보고서의 발간
 - 유엔아동인권위원회에 매 5년마다 ‘아동·청소년 인권보고서’의 제출
 - 다른 나라 인권보고서와 비교연구
 - 청소년 인권상황을 정리하여 매년 2년마다 백서를 발간
 - 청소년 인권지표를 개발하여 매년 2년마다 지표를 발간
 - 인권백서와 지표는 격년제로 엮갈려서 발간함
 - 한국청소년의 인권상황을 국제적인 기준에서 평가
- 부설기관으로 ‘청소년인권센터’의 운영
 - 청소년인권위원회의 주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인권센터’를 설치 운영
 - 인권센터는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
 - 인권센터는 인권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병행

5) 사업 추진방향

- 독립기구로 ‘청소년인권위원회’의 설치(제1안)
 - 인권신장에 기여한 저명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소년인권위원회’의 설치
 - 청소년인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가의 의지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새로운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음
- ‘청소년인권위원회’의 설치(제2안)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장관, 교육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의 설치
 - 청소년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지만, 청소년 관련 위원회로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감이 있음
- ‘청소년육성위원회’에 ‘청소년인권특별위원회’의 설치(제3안)

- 청소년인권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다소 미흡한 안이나 청소년육성정책을 총괄하는 위원회에 특별위원회로 '인권위원회'를 설치함
- 독립기구로 청소년인권위원회를 설치하기 전이라도, 특별위원회를 비교적 손쉽게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정부와 민간의 상호 협력
 - 위의 세가지 안중에서 어느 것을 택하던 정부와 민간의 상호협력이 매우 중요
 - 청소년 인권과 관련된 주요 부처의 책임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고, 인권 관련 주요 민간단체의 책임자가 위원으로 참여
 - 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두어서,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6) 기구와 인력

- 제1안으로 할 경우 위원회의 기구와 상근 인력이 상당수 필요함
- 제2안, 제3안으로 할 경우 위원회의 기구와 상근 인력은 최소한으로 함
- 어떤 안으로 택하던, '청소년인권센터'가 위원회 사무국의 기능을 수행함

7) 시설 및 장비

- 설립초 준비기에는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되, 예산이 확보되면 단계적으로 자체 건물 건립 또는 확보
- 인권센터는 청소년과 시민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위치하는 것이 좋음

2. 청소년인권센터의 설치와 운영

청소년인권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청소년인권 관련 법령과 제도의 연구, 청소년인권 교육자료의 개발, 청소년인권 상황에 대한 감시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공공기관으로 '청소년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청소년인권위원회의 부설기관으로 설치하여서, 처음에는 인권상담, 인권교육, 인권에 대한 홍보, 정보자료의 수집과 제공 등 기본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점차 청소년인권지표의 개발, 청소년인권백서의 발간, 유엔아동인권위원회에 인권보고서의 제출 등으로 목적사업을 확대한다.

1) 기관의 성격

- 청소년인권 신장을 연구개발 기구
- '청소년인권위원회'의 부설기관

2) 설립목적

- 청소년인권의식의 함양
- 청소년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상담과 옹호
- 청소년인권에 대한 연구와 개발
- 청소년인권 관련 법령과 제도연구
- 청소년인권 관련 비정부기구의 지원
- 청소년인권 관련 국내외 교류 협력

3) 설립배경

- 청소년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공적 대응
 - 연소자의 인권을 경시하는 구습의 만연
 - 인권침해 청소년의 보호장치의 미약
- 청소년인권의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 가정폭력과 학교주변폭력이 청소년 일상생활의 안전을 위협함
 - 청소년인권을 경시하는 법령과 제도의 상존
 - 청소년의 낮은 인권의식과 인권교육의 경시
- 국제협약의 준수 수준 미흡
 -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의 이행 수준 미흡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의 이행

4) 기능과 사업

- 청소년인권 침해사례의 수집과 대응방안 제시
 - 신체적 학대, 체벌, 성폭력, 유기, 인신구속 등 인권침해사례의 수집
 - 청소년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상담과 옹호
 - 가정, 학교, 직장, 사회에서 청소년인권을 경시하는 전형적인 사례 발견
 - 인권침해 사례별로 예방, 응급조치, 법률구조 등의 방안을 제시
- 청소년인권에 대한 이론적 연구
 - 청소년인권의 발달, 이론적 입장 등을 연구
 - 청소년인권의 침해를 정당화하는 관습에 대한 연구
 - 청소년인권에 관한 국내외 연구결과의 수집과 정리·활용
- 청소년인권 의식의 함양
 - 청소년인권의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연구
 - 청소년인권 교육을 위한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 인권활동가, 교사에 대한 체계적인 연수 실시
 - 청소년인권지표의 개발과 인권백서의 발간
 - ‘청소년인권학교’의 운영

- 청소년인권 관련 법령과 제도 연구
 - 국내외 청소년인권 관련 법령과 제도의 비교연구
 - 청소년인권의 규제를 정당화하는 법령과 제도의 개정
 - 청소년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판례 연구

5) 사업 추진방향

- 장기계획하에 단계별 사업추진
 - 1997년을 기점으로 2006년까지 10개년간 3단계로 구분하여 사업추진
 - 준비기(2년), 확장기(5년), 성숙기(3년)로 추진
- 이론과 현장의 상호연계, 정부와 민간의 협력체계 구축
 - 정부내 인권관련 부서간의 연대사업
 - 청소년인권을 위한 비정부기구의 지원

6) 기구와 인력

- 기구
 - 소장과 3부 체제로 구성하고 이를 연차적으로 확충함
 - 소장: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함
 - 인권상담부: 인권상담, 위기전화운영, 법률구조사업
 - 인권교육부: 인권상황에 대한 연구, 인권교육자료개발, 청소년인권학교 운영
 - 정보운영부: 청소년인권지표 개발, 청소년인권백서 발간, 국내외 인권자료 수집과 정리, 공중통신망에 '인권정보센터' 운영
- 인력
 - 청소년인권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법률가,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등 전문인력과 일반사무직원을 단계별로 확충함
 - 준비기에는 소장과 각부에 3명의 직원(총10명)으로 시작하고, 확장기에는 15명, 성숙기에는 20명 수준으로 운영함
 - 각 분야에 대한 전문적 상담이나, 전문적 조언, 주요사업에 대한 자문을 하여 줄 전문인력과 일반사무를 도와줄 자원봉사자가 필요함. 특히, 법률, 의료, 상담 등에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사람들을 자원봉사자로 위촉함
 - 센터의 준비기에는 인권 상담과 교육, 정보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을 합동으로 수행함으로써 적은 인력으로 시작하고, 점차 시범운영단계를 거쳐서 공간확충을 하도록 함

7) 시설 및 장비

- 설립초 준비기에는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되, 예산이 확보되면 단계적으로 자체 건물 건립 또는 확보 추진
 - 공간은 소장실(1), 부서별 사무실(3), 상담실(2), 강의실(1실), 인권정보센터(1실)
 - 워크스테이션(5대), PC와 프린터(직원당 1대), 프로젝트(1대), 복사기(4대), 각종 사무기기(직원당 1세트)
- 1997년도에 인권센터 준비단을 운영하고, 후반기에 독립된 공간으로서 ‘청소년인권센터’를 확보함.

3. 청소년인권을 위한 비정부기구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청소년인권을 신장하기 위해서 일하는 비정부기구들이 상호정보교류, 공동사업의 수행, 그리고 국가와 국제기구를 상대로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청소년인권을 위한 비정부기구 협의회’를 조직하고 운영한다. 협의회의 많은 업무는 소속단체가 개별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일들을 협력하여 실시하고, 소속단체의 특성을 살린 역할분담속에서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관련 정책을 감시, 지원, 그리고 평가를 통해서 정부의 청소년인권 관련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인권상담실, 청소년인권학교, 인권정보센터의 운영 등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서 비정부기구의 입장을 견지한다. 특히, 유엔, 유네스코, 유니세프, 국제사면위원회 등 국제기구와 다른 나라의 인권 관련 단체와 교류를 통해서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인권운동의 모델을 개발하고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인권향상에 기여한다.

1) 기관의 성격

- 청소년인권 신장을 위한 비정부기구 협의회
- 순수 민간단체로 조직하고 사단법인으로 등록

2) 설립목적

-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상담과 옹호
-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연구와 홍보
- 인권교육의 자료 개발과 인권교육
- 인권교육자, 인권활동가의 양성
- 청소년인권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정과 폐지 운동
- 청소년인권 관련 비정부기구간의 연대

3) 설립배경

- 청소년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공동 대응
 - 주요 인권침해사례에 대한 공동 대응
 -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 만연된 연소자 인권경시 풍조에 대한 공동 대응
- 청소년인권의 신장을 위한 공동사업 모색
 - 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활양식의 보급
 - 인권교육자, 인권활동가의 교육훈련교재의 편찬과 양성
 - 인권교육자, 인권활동가의 국내외 교류
- 국제협약의 준수 상태에 대한 공동 감시
 -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의 이행 수준 미흡
 - 인권 관련 국제규약의 이행상황 감시

4) 기능과 사업

-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상담과 옹호
 - '청소년인권상담실'의 설치·운영
 -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공동 대응
-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연구
 - '청소년인권연구소'의 설치·운영
 - 인권실태에 대한 중장기 연구
 - 인권침해사례에 대한 심층 연구
 - '청소년인권 NGO보고서'의 발간
- 인권교육의 자료 개발과 인권교육
 - '청소년인권학교'의 운영
 - 청소년용 인권학습 자료집의 개발과 보급
 - 교사용 인권교육 자료집의 개발과 보급
 - 인권교육을 위한 시청각 자료집의 개발과 보급
- 인권교육자, 인권활동가의 양성
 - 인권교육자, 인권활동가의 양성과정 설치·운영
 - 인권교육자 연차대회
 - 인권활동가 워크숍
 - 인권교육자와 활동가를 위한 국제대회의 개최
- 청소년인권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정운동
 - 국제협약에 배치되는 국내법의 개정운동
 - 반인권적인 법령과 제도에 대한 연구와 개폐운동
 - 인권관련 정책결정에 청소년과 인권활동가의 참여

- 청소년인권 신장을 위한 홍보활동
 - ‘청소년과 인권’ 정기 간행물의 발간
 - 청소년인권주간을 선포와 공동행사 추진
 - 스스로 권리를 지킨 ‘사례집’ 발간
 - 청소년인권영화제 개최
- 청소년인권 관련 정보자료의 수집과 유통
 - ‘청소년인권 정보센터’의 운영
 - ‘청소년인권 관련 단체편람’의 편찬
 - 국내외 인권관련 단체와 문헌·영상 자료 교류
 - 공중통신망에 인권관련 자료의 서비스

5) 사업 추진방향

- 장기계획하에 단계별 사업추진
 - 1997년을 기점으로 2006년까지 10개년간 3단계로 구분하여 사업추진
 - 준비기(2년), 확장기(5년), 성숙기(3년)로 추진
 - 준비기에는 협의기구 구성, 인권상담실 운영, 인권실태조사, 정기간행물의 발간 등
 - 확장기에는 청소년인권학교 운영, 인권교육자와 활동가 양성, 사례집 발간, 법령개정 운동, 인권관련 단체 편람 발간 등
 - 성숙기에는 인권영화제 개최, 인권정보센터 운영, 국제대회 개최 등
- 현장의 소리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반영
 - 비정부기구간의 상호연대로 이슈를 개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
 - 정부내 인권관련 부서간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업을 평가
 - 청소년인권을 존중하는 정책을 개발하여 정부에 요구

6) 기구, 인력, 시설

- 기구
 - 회장, 사무총장과 3실 체제로 구성하고 이를 연차적으로 확충함
 - 회장: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함
 - 사무총장: 회장을 보좌하고 실무를 총괄함
 - 인권상담실: 인권상담실 운영, 법률구조사업, 인권침해사례연구 등
 - 인권연구실: 인권상황에 대한 연구, 인권교육자료개발, 청소년인권학교 운영, 인권교육자와 활동가 양성 등
 - 홍보협력실: 홍보자료의 발간과 보급, 청소년인권보고서 발간, 국내외 인권자료 수집과 정리, 인권정보센터 운영, 공중통신망에 인권정보서비스 제공, 인권영화제 개최 등

○ 인력

- 청소년인권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법률가,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등 전문인력과 일반사무직원을 단계별로 확충함
- 준비기에는 회장, 사무총장과 각실에 3명씩의 직원(총11명)으로 시작하고, 확장기에는 20명, 성숙기에는 25명 수준으로 운영함
- 각 분야에 대한 전문적 상담이나, 전문적 조언, 주요사업에 대한 자문을 하여 줄 전문인력과 일반사무를 도와줄 자원봉사자가 필요함
- 협의회의 상근 직원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소속 민간단체들을 인권상담, 인권연구와 교육, 홍보와 정보운영 등의 대표기관으로 지정하여 역할분담과 함께 협력방안을 모색
- 센터의 준비기에는 인권 상담, 연구와 교육, 홍보활동과 정보운영 등을 합동으로 수행함으로써 적은 인력으로 시작하고, 점차 시범운영단계를 거쳐서 공간확충을 하도록 함

○ 시설과 장비

- 설립 준비기에는 회장이 소속된 단체에 인접한 공간을 사용하고, 확장기에는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되, 예산이 확보되면 단계적으로 자체 건물 건립 또는 확보 추진

참 고 문 헌

1. 인권 이론, 법이론 관련 문헌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엮음(1995), 인권이란 무엇인가 - 유네스코와 세계인권선언의 발전과 역사, 오름, (182면).
- 석인선 역(1995), 인권의 역사, 한울, (212면) : 杉原泰雄(1992), 人權の歴史, Tokyo, Iwanami Shoten.
- 김일수(1992), 법·인간·인권: 법의 인간화를 위한 변론, 박영사, (509면).
- 심윤종·이주향 역(1977), 권리를 위한 투쟁, 범우사, (265면) : Ihering, Rudolf V(1872), Der Kampf ums Recht .
- 윤후정 역(1992), 기본적인 인권과 재판 : 미국 대법원 판례, 이화여대 출판부, (557면) : Abraham, Henry Julian(1982), Freedom and the Court : Civil Rights and Liberties in the United States, .

2. 유엔 및 국제인권단체의 활동에 대한 문헌

- 국제인권봉사회·한국인권단체협의회(1994), 유엔과 인권-유엔인권제도 교육 자료집, (181면).
- 유네스코한국위원회(1995), 평화를 위한 국제선언-유엔과 유네스코의 평화선언 자료집. 오름, (110면).
- UNESCO(1993), The International Congress on Education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 Canada, (33면).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앰네스티 지침서 간행위원회 역(1993), 앰네스티 정신 앰네스티 운동, (145면).
-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1995), DEMOCRACY AND TOLERANCE :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Seoul, Republic of Korea, 27-29 September 1995, (253면).

3. 인권교육에 관한 문헌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역(1995), 인권교육의 이론과 실제-학교에서의 실천적인 활동 지침, (76면).
- 유네스코한국위원회(1995), 관용 : 평화의 시작-평화, 인권, 민주주의 교육을 위한

교수·학생 지침서, (56면).

유니세프한국위원회(1995), 어린이는 어떤 권리를 가졌을까요? - 게임으로 알아보는 아동의 권리협약(아동의 권리협약 교사용 지침서), (76면).

임종인 외(1993), 알기쉬운 인권지침,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인권위원회 편, 녹두, (248면).

우리누리(1995), 아빠, 법이 뭐예요? : 쉬운 법 재미있는 세상, 창작과 비평사, (235면).

국제사면위원회 지음 이용교 이희길 옮김, 인권교육의 기법, 한국청소년개발원, ARRC(1994), Shopping List of Techniques in Teaching Human Rights, ZAMORA press (115면).

ARRC(1995), Human Right Education : A Survey of Ongoing Initiatives in the Asia-Pacific Region, Thailand, Green Frog Publishing, (112면).

ARRC(1995), HRE PACK, Bangkok, Green Frog Publishing, (194면).

Brown Margot ed(1996), Our World, Our Rights, Amnesty International United Kingdom, (178면).

4.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문헌

이명숙(1995), 생활법률이해활동, 한국청소년개발원.

정태수(1991), 아동의 권리협약 - 청소년의 권리, 예지각, (260면).

정기원·오미영(1994), 아동권리의 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행정적 조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면).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1995),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에 따른 민간 단체보고서, (21면).

한국청소년연구원(1992), 청소년의 권리와 사회적 불평등, 한국청소년연구원, (175면).

유니세프한국위원회(1996), 국가발전백서, (54면).

유니세프한국위원회(1992), 1990년대 한국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참고 자료집, (278면).

황성기(1994), 아동의 인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 법학과 석사학위 논문, (113면).

Rosalind Ekman ladd(1996), Children's Rights Re-Visioned: Philosophical Readings, Wadworth Publishing Compony, (214면).

5. 한국 인권상황에 관한 문헌

- 한상범(1985), 기본적 인권 : 인권의 역사적 전개와 현대의 과제, 정음사, (323면).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1992), 한국인권의 실상-UN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정부 보고서에 대한 반박, 역사비평사, (182면).
- 류은숙(1994),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규약에서 본 우리나라 사회권 보장 - 정부최초보고서의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91면).
- 박찬운·김선수 외(1993), 국제인권원칙과 한국의 행형, 서울지방변호사회, 역사비평사, (302면).
- 박원순(1989), 국가보안법연구 I (국가보안법 변천사), (320면) · II (국가보안법 적용사), (605면) · III (국가보안법 폐지론), (259면), 역사비평사.
- 인권운동사랑방(1996), 인권하루 소식-합본 VI 호(501호-674호), (514면).
- 리차드 카칸·마테 오·데이비드 마이스브로트(1990), 북한의 인권, 고려원, (271면).

〈부록 1〉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위원회의 권고안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위원회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11회기
(Eleventh session)

어린이·청소년권리위원회의 결론적 의견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로 표시된 해설은 해설자에 의한다)

1. 위원회는 1996년 1월 18일과 19일에 가졌던 266, 267, 268번째 회의(CRC-C-SR. 266-268)에서 대한민국의 최초보고서(CRC-C-8-Add. 21)를 심의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적 의견을 채택하였다.

A. 머리말

2.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여러 학문영역에 걸친 수준 높은 대표단을 파견하여 위원회와 솔직하고도 생산적인 대화를 나눈 데 대하여 감사를 표한다.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보낸 사전 질문서[*]에 대하여 한국 대표단이 서면으로 제출해준 정보를, 그리고 본 위원회와의 대화[**]에 곧 이어 대한민국이 제출해준 추가 정보를 환영한다.

[*] 1995년 11월 22일, 제네바에서 열린 위원회 회기전 실무분과회의에서 한국정부에 대한 서면 질문서가 만들어졌다. 한국정부는 본회의(1996년 1월 18-19일) 전에 서면으로 이에 답해야 했다.

[**] 1996년 1월 18-19일에 열린 위원회 본회의를 말한다.

B. 긍정적 측면

3. 위원회는 이 조약이 한국의 국내법체제 속에서 곧바로 적용 가능하며 법정에서도 원용될 수 있다는 점을 만족스럽게 주목한다. [*]

[*] 정부가 어떤 답변을 했는지는 모르나, 현실적으로 한국에서는 한국이 가입한

어떠한 인권조약도 국내법체계 속에서 곧바로 적용 가능하지 않으며 법정에서 법관들이 원용하고 있지 않다.

4. 위원회는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가행동계획의 개발[*]을 환영하며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진행되고 있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이 행동계획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환영한다. 또한 최근에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국가위원회가 설립되었음[**]을 환영한다.

[*]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명

[**] 한국정부의 서면답변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즉

“아동권리에 관한 국가위원회는 95년 8월에 만들어졌다. 이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 1) 조약을 성인과 아동에게 똑같이 알리고, 사회사업가, 의사, 변호사, 판사, 교사, 법집행공무원, 이민 문제를 다루는 공무원 같은 전문집단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2) 조약에서 인정된 모든 아동권리의 증진을 정부에 촉구하는 것이다. 3) 조약의 이행을 위한 활동을 모니터하는 것이다. 4) 조약과 관련된 정부와 민간의 활동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한국적 십자, 유니세프, 조사기구, 대학, 신문, 아동보호기구 등의 민간단체들이나 외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같은 정부 부서에 속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국가위원회’ 설립은 정부의 거짓임이 나중에 드러났다. 95년 8월에 유니세프 초청으로 10명의 어린이문제 전문가들이 식사모임을 가진 것이 전부였고 참석자들은 국가위원회 구성 같은 것은 모르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5.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사회·경제적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점을 기쁘게 주목한다.

6. 위원회는 또한 조약에 가입할 때 한국정부가 유보해놓은 조항들에 대해 철회가능성을 묻는 우리의 질문에 대해 한국정부가 서면답변서를 통해 보여주고 대화과정에서 대표단을 통해 재확인 시켜준 열린 자세를 환영한다. 본 위원회는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어린이·청소년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인 관계와 직접적인 접촉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삼입하기 위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민법 개정작업[*]에 고무되는 바이다. 위원회가 더욱 기쁘게 여기는 것은 한국 대표단이 진술했듯이 이와 같은 민법 개정으로 당사국인 한국이 조약 제9조 3항[**]에 관한 유보를 철회할 수 있으리라는 점이다.

[*] 그런 민법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는 미확인

[**] 제 9조 3항-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중해야 한다.”

C. 조약의 이행을 저해하는 요인과 어려움

7. 위원회는 정치적·경제적 과도기인 현시기에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주목한다. 급속한 경제성장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언제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적정한 수준의 실현과 부합한 것은 아니었다. 이 점은 특히 빈곤이 증대될 때 가장 큰 불이익을 입게 마련인 여러 사회집단에 속해 있는 어린이·청소년들과 관련해서 말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은 최근해야 군사통치기간을 벗어났으며, 이런 상태는 한국 어린이·청소년들이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누리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왔다.

D. 우려되는 주요한 문제들

8. 한국정부가 조약 제9조 3항(*), 제21조 (가)호(**) 그리고 제40조 2항 (나)호의 (5) (***)를 유보한 처사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그런 한국정부의 처사는 ‘어린이·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원칙이라든가 어린이·청소년의 관점 존중이라는 원칙을 포함하는 이 조약의 원칙 및 규정들과 양립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보는 입장이다.

[*] 제9조 3항-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중해야 한다.”

[**] 제21조- “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어린이·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가. “어린이·청소년의 입양이 적용가능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적절하고 신빙성있는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입양이 부모·친척 및 후견인에 대한 어린이·청소년의 신분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음을, 그리고 요구되는 경우 관계자들이 필요한 협의에 의하여 입양에 대한 분별있는 승낙을 하였음을 관계당국에 의하여만 허가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40조 2항 나호 (5)- “형법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판결 및 그에 따라 부과된 여하한 조치는 법률에 따라 권한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한다.”

9. 위원회는 영구적이고 효과적인 조정과 감시기구를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가 한국에서 취해지지 않고 있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한국정부가 조약이 포괄하는 모든 영역에 관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믿을 만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을 주목한다. 이와 같은 데이터는 어린이·청소년, 특히 가장 취약한 어린이 집단에 관하여 한국 정부가 채택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이룩된 진보의 정도를 가늠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 위원들은 한국정부가 설립했다고 주장하는 ‘국가위원회’의 실체를 의심하고

있다.

10.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이 조약의 원칙과 규정을 자국의 어린이·청소년들과 어른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있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한국에서 어린이·청소년을 위하여 어린이·청소년 가까이에서 일하는 여러가지 전문가 집단에 대하여 이 조약 내용에 관한 적절한 교육이 결여되어 있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 전문가 집단이란 교사, 사회복지요원, 판사, 사법경찰관, 심리학자, 보건의료 요원들 등을 의미한다.

[*] 위원들은 한국정부가 설립했다고 주장하는 ‘국가위원회’의 실체를 의심하고 있다.

[**] 위원들은 한국정부가 설립했다고 주장하는 ‘국가위원회’의 실체를 의심하고 있다.

11. 조약 제4조[*]를 이행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어린이·청소년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실현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들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우려한다.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청소년을 사회적 인격적으로 발전케 하기 위한 분야에도 그리고 가장 취약한 부분의 어린이·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하여도 충분한 배려가 결여되고 있다.

[*] 제4조- “당사국은 이 조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사회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 안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위원회는 또한 이 조약의 기본원칙 (즉 조약 제2조 [*], 제3조 [**), 제12조 [**])이 한국의 입법, 정책, 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우려한다. 한국 정부의 보고서가 시인하듯이 어린이·청소년을 단순히 “작은 어른 혹은 미숙한 어른”으로서 여기고 취급하는 널리 만연된 관습을 변혁하기 위하여는 위에서 말한 이 조약의 기본적 가치들을 국민들에게 일깨우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점에서 한국정부가 취해온 조치는 불충분한 것이었다. 위원회는 또한 소녀들(최소 결혼연령****)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는), 장애 어린이·청소년들 그리고 사생아들을 괴롭히는 집요한 차별적 태도의 존재를 우려하면서 주목한다.

[*] 모든 형태의 차별금지

[**] 국가나 민간에 의하여 행해지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제12조 1항-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어린이·청소년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어린이·청소년의 견해에 대하여는 어린이·청소년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 우리 민법상 남자는 18세 이상, 여자는 16세 이상이면 약혼 또는 혼인을 할 수 있다.

13. 위원회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지킬 책임을 맡고 있는 가족이 국가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14. 위원회는 국적에의 권리, 표현,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그리고 결사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 자유와 시민적 권리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인 조치를 포함한, 여러 조치가 분충분한 데 대하여 우려를 표명한다. 한국정부가 명분으로 삼아온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은 이와 같은 여러기본적 자유의 향유를 방해해 왔다.
15. 위원회는 대한민국에서의 입양문제에 대한 접근방식과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입양관계 해소방식은 최상의 배려로서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의 관점 및 조약 제21조 [*]에서 확립된 법적 보호와의 관계에서 조약과 양립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입양은 자격있는 당국자에 의하여 공인되어야 하는 데, 이것은 모든 타당하고도 믿을 만한 정보가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또한 어린이·청소년까지를 포함한 모든 관계 당사자들이 이런 여러 정보에 입각하여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런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조치가 특히 불충분하다고 여긴다. 해외 입양율이 높은 것[**]이 또한 위원회가 염려하는 바이다. 어린이·청소년 학대와 가정 폭력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도 이것을 보고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도 결여되어 있다는 데 대하여 우려한다. 어린이·청소년 유기 문제, 소년·소녀가 가장인 가정의 높은 비율, 부모와 교사들이 하나의 교육적 방법이라고 광범위하게 생각하고 있는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고질적인 체벌, 이런 모든 것들이 위원회의 또다른 관심거리들이다.

[*] 아동의 입양에 관한 상세한 틀이 제21조에 정해져 있다.

가. “어린이·청소년의 입양이 적용가능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적절하고 신빙성 있는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입양이 부모·친척 및 후견인에 대한 어린이·청소년의 신분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음을, 그리고 요구되는 경우 관계자들이 필요한 협의에 의하여 입양에 대한 분별있는 승낙을 하였음을 관계당국에 의하여만 허가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나. 국제입양은 아동이 위탁양육자나 입양가족에 두어질 수 없거나 또는 어떠한 적절한 방법으로도 출신국에서 양육되어질 수 없는 경우, 아동양육의 대체수단으로서 고려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다. 라., 마.는 생략.

[**] 전체 입양아수 중 해외입양아는 63.9% (1991년), 63.2% (1992년), 66.5% (1993년)

16.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그 교육제도에서 조약 제29조 [*]에 반영되어 있는 교육의 목적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를 베풀지 않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 지극히 경쟁적인 성격을 갖는 교육제도[**]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그 재주와 능력을 잠재력의 한계까지 발전시키는 것을, 그리고 자유로운 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생활을 위하여 스스로 준비하는 것을 가로막을 위험을 안고 있다.

[*] 제29조-

“1.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개발

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다. 자신의 부모, 문화적 정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헌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화에 대한 존중의 진전

라. 어린이·청소년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준비”

[**] 여기서는 주로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를 말한다.

17. 어린이·청소년노동의 상태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가, 법제도 개선분야까지 포함해서, 불충분하다는 점 역시 우려된다. 이와 관련하여 의무교육을 마치는 연령과 최저고용가능연령 사이의 모순[*]이 위원회의 특별한 관심사이다.

[*] 한국의 근로기준법 (제 50조)에 의하면 13세 이상인 사람만을 고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13세 미만인 사람을 고용할 때는 노동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교육법에 의하면 만 15세까지를 의무교육연령으로 정하고 있다. 두 법률 사이에는 분명히 모순이 있다.

18. 위원회는 또한 한국의 현행 소년사법제도에 관심을 갖는다. 그것은 조약의 제37조[*], 제39조[**], 제40조[***] 등과 양립되지 않는다.

[*] 제37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나. 어떠한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아동의 체포, 억류 또는 구금은 법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또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인도주의와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입각하여, 그리고 그들의 연령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처우되어야 한다. 특히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합치된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인

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과 방문을 통하여 자기 가족과의 접촉을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

라.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법률적 및 기타 적절한 구조에 신속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짐은 물론 법원이나 기타 권한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앞에서 자신에 대한 자유박탈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신속한 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39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희생이 된 어린이·청소년의 신체적·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0조 1항- “당사국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어린이·청소년에 대하여 어린이·청소년의 연령 그리고 어린이·청소년의 사회복귀 및 사회에서의 건설적 역할 담당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인권과 타인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어린이·청소년의 존중심을 강화시키며, 존엄과 가치에 대한 어린이·청소년의 자각을 촉진시키는데 부합하도록 처우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2항 나호 (5)- 형법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판결 및 그에 따라 부과된 여하한 조치는 법률에 따라 권한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한다.

E. 제안과 권고

19.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유보했던 조약 제9조 3항, 제21조 (가) 호, 제40조 (나) 호의 (5)〔*〕에 대하여 그 유보를 철회하는 방향에서 계속 재고해줄 것을 권장한다.

〔*〕 위 8번 참조.

20. 위원회는 조약 제42조 〔*〕에 따라 한국정부가 이 조약의 원칙과 규정을 국민들이 이해하고 자각하고 그리고 옹호하게 되도록 그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특히 소녀, 장애어린이·청소년, 사생아에 대한 집요한 차별적 태도의 문제에 한국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공공캠페인을 전개시킬 것, 그리고 이들 범주의 어린이·청소년의 지위와 보호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즉시 효력을 나타내는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한다.

〔*〕 제42조- 당사국은 이 조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어린이·청소년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

21. 위원회는 또한 이 당사국이 어린이·청소년을 위하여 어린이·청소년 곁에서 일하는 전문가 집단에 대하여 이 조약에 관한 교육활동을 반드시 실현할 것을 권고한다. 그 전문가 집단이란 교사, 사회복지사, 법관, 사법경찰관, 보건 의료

요원 그리고 조약이 포괄하는 여러 영역에 있어서 데이터 수집을 해낼 임무를 부여 받은 관리 등을 의미한다. ‘유엔 인권교육 10개년 사업’의 정신에 근거하여 위원회는 더 나아가 한국 정부가 학교교육의 교과과정에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교육을 짜넣을 것을 고려해주기 바란다.

22.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한국의 국내법을, 차별 금지(조약 제2조), 어린이·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조약 제3조), 어린이·청소년의 관점 존중(조약 제12조) 등을 포함한 이 조약의 원칙과 규정에 충분히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을 권장한다. 위원회는 특히 대한민국이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실행하기 위하여 입법조치를 행할 것을 권고한다. 즉 조약 제2조에 따르는 소년과 소녀의 평등한 최소 결혼 가능연령, 조약 제23조 [*]에 따르는 모든 장애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특히 교육을 받을 권리), 사생아에 대한 차별 철폐, 한국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어린이·청소년이 무국적자가 될 위험 방지[**], 모든 형태의 체벌에 대한 명백한 금지 그리고 고용가능최저연령을 의무교육이 종료되는 나이와 양립할 수 있도록 끌어올리는 일. 또한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국내, 국제적인 입양에 관하여 이 조약의 원칙 및 규정과 완전한 양립을 이루도록(***) 관련법규들을 포괄적으로 개혁할 것을 권장하며, 동시에 1993년의 ‘국제 입양과 관련된 어린이·청소년 보호와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의 비준을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 제23조-

“1. 당사국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아동이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며 적극적 사회참여가 조장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품위 있는 생활을 누려야 함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며, 신청에 의하여 그리고 아동의 여건과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사정에 적합한 지원이 활용가능한 재원의 범위 안에서 이를 받을만한 아동과 그의 양육책임자에게 제공될 것을 장려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3. 장애아동의 특별한 어려움을 인식하며,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지원은 부모나 다른 아동 양육자의 재산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장애아동의 가능한 한 전면적인 사회참여와 문화적·정신적 발전을 포함한 개인적 발전의 달성에 이바지 하는 방법으로 그 아동이 교육, 훈련, 건강관리지원, 재활지원, 취업준비 및 오락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아버지를 따라 국적을 얻게 되어 있는 한국법에 따라 한국사람이 아니며, 아버지가 불법체류한 외국인인 경우 한국인 어머니가 낳아도 아이는 불법체류자가 된다.

[***] 한국에서 입양시 자신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은 15세 이상 어린이로 정해져 있다.

23.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도시와 농촌지역에서 전국적 규모와 지역적 규모로 이 조

약의 이행을 감시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영속적이고도 여러 학문영역에 걸쳐진 기구를 발전시킬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옴부즈맨(*) 혹은 그에 견줄만한 독립적인 고발 및 감시기구의 설립을 한층 더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위원회는 나아가 민간단체들과 보다 긴밀한 협력을 증진할 것을 권장한다.

[*] 옴부즈맨(ombudsman)=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정부의 민원조사관.

24.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이 데이터 수집체계를 개선하고 흩어져 있는 지표들을 분류하고 정리할 것을 권고한다. 이것은 가장 열악한 범주에 속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상황에 마땅한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조약이 적용되는 모든 영역을 다루고 이룩된 진보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25.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조약 4조(*)의 완전한 이행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또한 어린이·청소년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이행을 위하여 이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필요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반차별의 원칙과 어린이·청소년의 최상의 이익의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불이익을 받고 있는 어린이·청소년 집단의 상황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이 기울여져야 한다.

[*] 제4조-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 안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6.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어린이·청소년의 가정생활, 학교생활 그리고 사회생활에의 참가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그들이 기본적 자유를 더욱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기 위하여 더 큰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 기본적 자유 속에는 의견 표명과 표현 그리고 결사의 자유가 포함되는 데, 이런 자유권들은 오로지 법률로써 정해진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규제에 의해서만 제한 받는다.

27. 위원회는 특히 조약 제18조 (*), 제27조 (**)에 비추어 대한민국이 어린이·청소년의 양육과 발전에 대한 가족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더 발전된 정책을 채택할 것을 권장한다. 어린이와 청소년 유기를 막기 위하여 특별한 관심이 기울여져야 하며 소년 소년·소녀가장이 이끄는 가정의 더 이상의 발생을 막음과 동시에 그런 가정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

[*] 제18조-

“1. 당사국은 부모 쌍방이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공동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후견인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2.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당사국은 아동의 양육책임 이행에 있어서 부모와 후견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아동 보호를 위한 기관·시설 및 편의의 개발을 보장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취업부모의 아동들이 이용할 자격이 있는 아동보호를 위한 편의 및 시설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7조 1항- 당사국은 모든 어린이·청소년에게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28. 가정폭력과 어린이·청소년 학대의 분야에 있어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고 피해 입은 어린이·청소년의 보호와 적절한 신체적, 사회적 회복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더 발전된 정책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이런 가정폭력이나 어린이·청소년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감시하고 그리고 적절한 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체계의 확립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29.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조약 제29조 [*]에 보이는 교육목적을 충실히 반영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교육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권장한다.

[*] 제29조에 열거된 아동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 아동의 인격·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 개발

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유엔헌장에 규정된 원칙 존중의 진전

다. 자신의 부모, 문화적 정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 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증진

라. 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30. 어린이·청소년의 노동 분야에 있어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이 조약 특히 제32조 [*]를 충분히 반영시키기 위하여 그 입법과 관행에 있어 적절한 정책을 채택하도록 권고한다. 고용허용 최소연령에 관한 ILO조약 제138호 [**]의 기준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며 이 경우 ILO와의 협의 하에 일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 제32조-

“1. 당사국은 경제적 착취 및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도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이 조항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그 밖의 국제문서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단일 또는 복수의 최저 고용연령의 규정

나. 고용시간 및 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의 마련

다. 이 조항의 효과적인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처벌 또는 기타 제재수단의 구전

〔**〕 경제적 착취 및 유해노동으로부터의 보호

31.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특히 37조〔*〕, 38조〔**〕, 40조〔***〕에 나타난 이 조약의 정신에 입각하여, 그리고 ‘베이징 룰’, ‘리야드 가이드라인’ 내지는 ‘자유를 박탈당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UN규칙’과 같은 이 분야 UN기준의 정신에 입각하여 소년사법제도의 포괄적인 개혁에 착수할 것을 권고한다. 자유 박탈을 검토하는 것은 오로지 마지막 수단으로서만, 그것도 가장 짧은 기간이라야 한다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유를 박탈당한 청소년의 권리 보호에 그리고 사법제도의 독립성과 공정성과 함께 적정절차 (due process of law)에도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소년사법제도와 관계 있는 모든 전문가들에게 관련 국제 기준을 가르치는 훈련프로그램이 조직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소년사법 행정의 분야에서의 국제적 지원을 인권센터 (the Center for Human Rights)와 범죄방지과 형사정의분과 (the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Branch)에 구해볼 것을 한국 정부에 제안하고 싶다.

〔*〕 고문·사형 및 자유박탈 금지

〔**〕 무력분쟁으로부터의 보호

〔***〕 소년사법에 관한 여러가지 규정

32.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제출했던 보고서, 위원회의 회의록 그리고 위원회의 최종 의견이 한국 내에서 가능한 한 널리 배포되도록 권고한다.

〈번역과 해설: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

〈부록 2〉

인권 관련 단체 소개

1.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유니세프는 세계어린이를 위하여 일하는 유엔기구이다. 1946년 창립된 이후 반세기 동안 전세계 145개 개발도상국에서 어린이를 위하여 긴급구조, 영양, 보건, 예방접종, 식수 및 환경개선, 기초교육 등의 기본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유니세프가 한국에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한 해는 1950년이다. 6.25전쟁을 전후하여 유니세프는 긴급한 구호가 필요한 한국어린이들을 위해 우유와 간유, 담요, 의류 등의 구호물자를 대량 공급해 주었다. 그후 40여년 동안 유니세프는 한국에 대표사무소를 상주시키고 영양개선, 예방접종, 의료요원훈련, 교육사업 등 한국의 경제발전단계에 맞추어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해 왔다. 1994년 1월 한국의 유니세프대표사무소는 선진국형 기구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 탈바꿈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과 이에 부수되는 사업을 주요사업의 하나로 수행하고 있으며 그간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번역 및 배포, 각종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비정부조직의 감시 및 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문회의 등을 개최해 왔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창성동 17-1 전화 722-6481, 723-8218, 팩스 738-8504>

2.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헌장과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건의, 기획, 조사, 연락, 보급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이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1954년에 창립된 이래 유네스코의 고유활동분야인 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및 청소년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인권과 관련된 활동으로는 ‘세계인권선언’을 한국에 소개하고, 인권교육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주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1 성원빌딩 10층 전화 568-9358 팩스 555-6917>

3.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앰네스티는 1961년 5월 28일 영국인 변호사 피터 베넌슨씨에 의해 창설되었다. 현재 앰네스티는 160여개국에 140만여명의 회원과 수백만명의 지지자를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 전역에 약 110개의 사무실과 53개국에 지부를 두고 있다.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미주지역, 중동지역 등에 6,000개 이상의 지역그룹을 두고 있으며 명실상부한 세계최대의 민간인권단체로 자리잡게 되었다. 1972년 3월 28일 한국에서 회원 25명으로 지부가 결성된 후 여러가지 이유로 두 번씩이나 지부가 폐쇄되

는 과정을 거쳐 93년 3월 현재의 지부가 재 설립되어 활동중이다. 현재 서울, 대구, 전주, 부산, 창원, 대전, 원주 등지에서 21개의 그룹이 활동하고 있으며, 약 250여 명의 정회원들과 약 300여명의 후원회원, 개인회원 및 긴급구명활동 참가자를 두고 있다. 한국지부는 매년 특정국가의 인권신장을 위한 캠페인 및 여성, 어린이, 언론인, 노동활동가들의 권리향상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또한 매년 1월 정기총회 개최, 다양한 국제회의 참석, 전국회원교육대회 및 각종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활동을 전개한다. <주소 : 대구 경북체신청 직영우체국 R.C.O. Box 36 (우편번호 706-600) 전화 053) 426-2533 팩스: 053) 422-1956>

4.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법에 의거 1987. 9. 1에 발족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현재 공단본부(서울특별시), 5개의 직할출장소와 11개 지부(광역시, 도단위) 및 35개 출장소(시, 군, 구단위)가 법원, 검찰청에 대응하여 전국에 설치되어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권리구제의 길을 모색하지 못하는 여러 계층의 국민들에게 법률상담, 법률구조(소송전 구조 - 화해·조정, 소송구조) 등 여러 가지 법적지원 활동을 통하여 수준높은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다만, 현재 공단은 법률상담과는 달리 법률구조의 경우에는 그 업무를 개인간의 민사·가사사건에 한정하여 취급하여 왔으나 1996년 6월 1일부터는 형사사건중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과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도 법률구조를 한다. <본부 주소: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11-2 제일빌딩 전화 국번없이 132; 서울지검청사공단 상담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24번지 서울지검내 전화 02-536-5577>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조직목적을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연구·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을 통하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는 데 두고 있다. 한국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인권신장을 가로막아 온 각종 법률과 제도들을 연구하고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에 기반해 그 대안을 모색한다. 이 성과는 국회나 정부당국에 의견서로 제출하여 인권중심의 법개정 및 제도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정치범에 대한 형사변론은 민변의 가장 기본적인 사업 중의 하나이다. 사건을 배당받은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고문 등 가혹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하고 양심수들이 재판과정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주요 인권현안과 제도 등에 대한 성명서 발표, 각종 보고서 및 책자 발간,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바람직한 여론형성에 앞장서고 있다. 연구·조사 활동이나 여론형성 활동 등은 다른 사회민주단체들과 연대하여 함께 공동사업으로 펼치기도 한다.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12 명지빌딩 4층 전화: 02-522-7284, 02-521-0575 팩스: 02-522-7285 PC ID: M321(천리안), minbyun7(하이텔)>

6.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사랑방은 '인권운동의 전문화, 대중화, 국제화'를 내걸고, 다양한 영역의 인권운동을 지원하는 전문인권센터를 건설할 목표로 1992년 시작되었다. 정보와 자료의 지원을 받는 인권운동, 인권교육을 통해 훈련받은 인권지기의 양산, 유엔 인권 보장 제도의 활용과 진보적 민간단체간의 연대를 추구한다는데 전문화, 대중화, 국제화의 의미가 있으며, 축적한 정보와 기술 및 대안을 공유하고 전파시킨다는 데 전문인권센터의 역할이 있다. 청소년을 위한 인권활동으로는 1995년 2월 '제1회 고등학생인권토론회' 개최 : 고등학생들이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을 공부하고 학교와 가정에서 겪는 자신들의 인권침해에 대해 토론하였다. 앞으로도 중·고등 학생들이 소모임이나 집단활동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인권교육 프로그램 제공,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을 홍보하고 그 이행을 감시하는 활동, 알기쉬운 인권교재 시리즈의 개발, 인권교육을 생각하는 교사모임, 학교나 가정에서 겪는 인권침해를 고발할 수 있는 '청소년 인권전화' 개설할 예정이다. <주소 : 서울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우편번호 140-150) 전화 715-9185 팩스 : 715-9186 PC ID : rights(천리안·하이텔)>

7.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유신치하 긴급조치가 남발하던 1974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총회의 결정에 의해 4월 11일에 인권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인간의 존엄성을 믿는 성서적 신앙에 의거하여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제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창립의 주요 목적이다. <주소 :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708호 (우편번호 : 110-701) 전화 764-0203, 744-3717 팩스 744-6189 PC ID : NCCHUMAN(천리안)>

8.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법제자리농기시민모임

참여사회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사법제자리농기시민모임은 사법이 제자리에서 이탈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모임이다. 시민 스스로 사법을 감시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려는 노력을 통해 시민의 사법참여를 이루고자 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사법피해사례 신고와 접수, 피해회복을 위한 다양한 시민행동, 재판과정에 대한 모니터, '사법감시소식지'를 발간 등이 있다. <주소 :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3-4745 PC ID: PSPD(천리안·하이텔)>

9.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 활동을 통해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건강한 삶을 되찾게

한다. 성폭력 예방활동으로 인간중심적인 성문화를 정착시킨다. 여성의 인권을 회복시켜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든다. 일반상담은 24시간 운영되며 91년 4월이후 현재까지 1만 2천 여건의 상담을 받았다. 상담은 전화·면접·서신을 통해서 심리·의료·법률 분야의 상담을 한다. 또한 상담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상담부 산하 상담지원 위원회내 토요법률상담, 법정지원팀, 정신과 전문의 팀을 활성화시켜 상담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고 있다. 이밖에도 위기상담과 위기센터인 열림터 운영, 성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과 일반인에게 성폭력 실태와 대책을 알리는 교육, 홍보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주소: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45호 (우편번호 : 137-600) 전화: 576-7127~8(일반사무), 573-1888(위기상담), 529-4271, 4272(일반상담) 팩스: 576-7127 PC ID : KSVRC>

10. 한국여성의 전화

1982년 국내 최초로 매맞는 아내문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5%의 여성들이 남편에게 구타당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1983년 6월 11일에 여성의 전화를 창립하여 남편의 아내구타에 대한 상담을 하고 이후에 외도 및 부부갈등과 시집갈등 등의 가정문제, 직장내 성희롱문제 등 여성전반에 관한 문제를 상담하고 있다.<주소 : 서울 중구 장충동 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전화 269-269~4 팩스 269-2966>

〈부록 3〉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전 문

이 협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
가 됨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체제하의 모든 국민들은 기본적인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신념을 헌장에서 재확인하였고, 확대된 자유속에서 사회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로 결의하였음에 유념하며,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 구분에 의한 차별없이 동 선언 및 규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음을 선언하고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고,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에서 아동시절에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
고 선언하였음을 상기하며,

사회의 기초집단이며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자연적 환경으
로서의 가족에게는 공동체내에서 그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원조가 부여되어야 함을 확신하며,

아동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져야하
며,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이상의 정신과 특히 평화, 존엄, 관용, 자유, 평등, 연
대의 정신속에서 양육되어야 함을 고려하고,

아동에게 각별한 보호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은 1924년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과 1959년 11월 20일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아동권리선언에 명시되어 있으며,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특히 제23조와 제24조), 경
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특히 제10조) 및 아동의 복지와 관련
된 전문기구와 국제기구의 규정 및 관련문서에서 인정되었음을 유념하고,

아동권리선언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
여 출생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적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
다”는 점에 유념하고,

“국내적 또는 국제적 양육위탁과 입양을 별도로 규정하는 아동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회적 및 법적 원칙에 관한 선언”의 제규정, “소년법 운영을 위한 국제연합
최소표준규격”(베이징 규칙) 및 “비상시 및 무력충돌시 부녀자와 아동의 보호에 관
한 선언”을 상기하고,

세계 모든 국가에 예외적으로 어려운 여건하에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이 있으며,
이 아동들은 특별한 고려를 필요로 함을 인정하고,

아동의 보호와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각 민족의 전통과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가 아동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부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제2조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내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할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여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있는 기관, 편의 및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 및 적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면에서의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내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아동이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당사국은 부모 또는 적용가능한 경우, 현지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는 확대가족이나 공동체의 구성원, 법정 후견인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자들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권리 및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고유의 생명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가능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생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이 분야의 국내법 및 관련국제문서상의 의무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실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권리가 실행되지 아니하여 아동이 무국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제8조 1. 당사국은 위법한 간섭을 받음이 없이 국적, 성명 및 가족관계를 포함하여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한다.

2. 아동이 그의 신분요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불법적으로 박탈당한 경우, 당사국은 그의 신분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원조와 보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1. 당사국은, 사법적 심사의 구속을 받는 관계당국이 적용 가능한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한 결정은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또는 유기에의 경우나 부모의 별거로 인하여 아동의 거소에 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2. 본조 제1항에 따른 어떠한 절차에서도 모든 이해당사자는 그 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시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이외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중하여야 한다.

4. 그러한 분리가 부모의 일방이나 쌍방 또는 아동의 감금, 투옥, 망명, 강제퇴거 또는 사망(국가가 억류하고 있는 동안 여하한 원인에 기인한 사망을 포함하여) 등과 같이 당사국에 의하여 취하여진 여하한 조치의 결과인 경우에는, 당사국은 그 정보의 제공이 아동의 복지에 해롭지 아니하는 한, 요청이 있는 경우, 부모, 아동 또는 적절한 경우 여타 가족구성원에게 부재중인 가족구성원의 소재에 관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의 제출이 그 자체로 관계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국은 의무에 따라서, 가족의 재결합을 위하여 아동 또는 그 부모가 당사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기 위한 신청은 당사국에 의하여 긍정적이며 인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이러한 요청의 제출이 신청자와 그의 가족구성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수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부모가 타국에 거주하는 아동은 예외적 상황 이외에는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그리고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아동과 그의 부모가 본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는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이 협약에서 인정된 여타 권리에 부합하는 제한에 의하여만 구속된다.

제11조 1. 당사국은 아동의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을 퇴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양자 또는 다자협정의 체결이나 기존협정에의 가입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2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하한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상 절차규칙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제13조 1. 아동은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가.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

나.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제14조 1.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 및,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 후견인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를 감독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여야 한다.

3.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권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제15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제16조 1.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2.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17조 당사국은 대중매체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인정하며, 아동이 다양한 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 특히 아동의 사회적, 정신적, 도덕적 복지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가짐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가. 대중매체가 아동에게 사회적, 문화적으로 유익하고 제29조의 정신에 부합되

는 정보와 자료를 보급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나. 다양한 문화적, 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를 제작, 교환 및 보급하는데 있어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다. 아동도서의 제작과 보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라. 대중매체로 하여금 소수집단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의 언어상의 곤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마. 제13조와 제18조의 규정을 유념하며 아동복지에 해로운 정보와 자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지침의 개발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8조 1. 당사국은 부모 쌍방이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공동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법정 후견인은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그들의 기본적 관심이 된다.

2.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당사국은 아동의 양육 책임 이행에 있어서 부모와 법정 후견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아동보호를 위한 기관, 시설 및 편의의 개발을 보장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취업부모의 아동들이 이용할 자격이 있는 아동보호를 위한 편의 및 시설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은 물론, 상기된 바와 같은 아동학대 사례를 여타형태로 방지하거나 확인, 보고, 조회, 조사, 처리 및 추적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 1.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족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족환경에 있는 것이 스스로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 받을 권리가 있다.

2.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러한 아동을 위한 대체적 보호를 확보하여야 한다.

3. 이러한 보호는 특히 양육위탁, 회교법의 카팔라, 입양, 또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아동 양육기관에 두는 것을 포함한다.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우에는 아동 양육에 있어 계속성 보장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아동의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및 언어적 배경에 대하여 정당한 고려가 배풀어져야 한다.

제21조 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국은

가. 아동의 입양은, 적용가능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적절하고 신빙성있는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입양이 부모, 친척 및 법정 후견인에 대한 아동의

신분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음을, 그리고 요구되는 경우 관계자들이 필요한 협의에 기하여 입양에 대한 분별있는 승락을 하였음을 결정하는 관계당국에 의하여만 허가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나. 국제입양은, 아동의 위탁양육자나 입양가족에 두어질 수 없거나 또는 어떠한 적절한 방법으로도 출신국에서 양육되어질 수 없는 경우, 아동 양육의 대체 수단으로서 고려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다. 국제입양에 관계되는 아동이 국내입양의 경우와 대등한 보장장치와 기준을 향유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라. 국제입양에 있어서 양육지정이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적절한 경우에는 양자 또는 다자약정이나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본 조의 목적을 촉진시키며, 이러한 테두리 내에서 아동의 타국내 양육지정이 관계당국이나 기관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1. 당사국은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구하거나 또는, 적용가능한 국제법 및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난민으로 취급되는 아동이, 부모나 기타 다른 사람과의 동반 여부에 관계없이, 이 협약 및 당해 국가가 당사국인 다른 국제 인권 또는 인도주의 관련 문서에 규정된 적용가능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국제연합 및 국제연합과 협력하는 여타의 권한 있는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기구들이 그러한 아동을 보호, 원조하고 가족 재결함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난민 아동의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을 추적하는데 기울이는 여하한 노력에 대하여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그 아동은 여하한 이유로 인하여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가족환경을 박탈당한 다른 아동과 마찬가지로 이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은 보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제23조 1. 당사국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아동이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며 적극적 사회참여가 조장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품위있는 생활을 누려야 함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며, 신청에 의하여 그리고 아동의 여건과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사정에 적합한 지원이, 활용가능한 재원의 범위내에서, 이를 받을 만한 아동과 그의 양육책임자에게 제공될 것을 장려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3. 장애아동의 특별한 곤란을 인식하며, 본조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지원은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재원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장애아동의 가능한 한 전면적인 사회동참과 문화적, 정신적 발전을 포함한 개인적 발전의 달성에 공헌하는 방법으로 그 아동이 교육, 훈련, 건강관리지원, 재활지원, 취업준비 및 오락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4. 당사국은 국제협력의 정신에 입각하여, 그리고 다음 분야에서의 능력과 기술

을 향상시키고 경험을 확대하기 위하여, 재활, 교육 및 직업보도 방법에 관한 정보의 보급 및 이용을 포함하여, 예방의학분야 및 장애아동에 대한 의학적, 심리적, 기능적 처치분야에 있어서의 적절한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배풀어져야 한다.

제24조 1. 당사국은 도달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건강관리지원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유아와 아동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

나. 기초건강관리의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관리의 제공을 보장하는 조치,

다. 환경오염의 위험과 손해를 감안하면서, 기초건강관리 체계 내에서 무엇보다도 용이하게 이용가능한 기술의 적용과 충분한 영양식 및 깨끗한 음료수의 제공 등을 통하여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하기 위한 조치,

라. 산모를 위하여 출산 전후의 적절한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조치,

마. 모든 사회구성원, 특히 부모와 아동은 아동의 건강과 영양, 모유 수유의 이익, 위생 및 환경정화 그리고 사고예방에 관한 기초지식의 활용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받고, 교육을 받으며, 지원을 받을 것을 확보하는 조치,

바. 예방적 건강관리, 부모를 위한 지도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과 편의를 발전시키는 조치

3. 당사국은 아동의 건강을 해치는 전통관습을 폐지하기 위하여 모든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본 조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배풀어져야 한다.

제25조 당사국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관리, 보호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관계 당국에 의하여 양육지정 조치된 아동이, 제공되는 치료 및 양육지정과 관련된 여타 모든 사정을 정기적으로 심사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제26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자국 국내법에 따라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혜택은 아동 및 아동에 대한 부양책임자의 제력과 상황은 물론 아동에 의하여 직접 행하여지거나 또는 아동을 대신하여 행하여지는 혜택의 신청과 관련된 여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한 경우에 부여되어야 한다.

제27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는 능력과 재정의 범위내에서 아동 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확보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3. 당사국은 국내 여건과 재원의 범위내에서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가 이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 영양, 의복 및 주거에 대하여 물질적 보조 및 지원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자로부터 아동양육비의 회수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있는 자가 아동이 거주하는 국가와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당사국은 국제협약의 가입이나 그러한 협약의 체결은 물론 다른 적절한 조치의 강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28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 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나.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료교육의 도입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학교에의 정기적 출석과 탈락률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특히 전세계의 무지와 문맹의 퇴치에 기여하고, 과학적, 기술적 지식과 현대적 교육방법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에 관련되는 사항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배워져야 한다.

제29조 1.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 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개발

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헌장에 내포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개발

다. 자신의 부모, 문화적 정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개발

라. 아동이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마.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개발

2. 본조 또는 제28조의 여하한 부분도 개인 및 단체가, 언제나 본조 제1항에 규정된 원칙들을 준수하고 당해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이 국가에 의하여 설정

된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조건하에,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0조 인종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자나 원주민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이러한 소수자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은, 자기 집단의 다른 구성원과 함께, 고유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의 종교를 신앙하고 실천하며,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 한다.

제31조 1. 당사국은 휴식이나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32조 1. 당사국은 경제적 착취 및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본 조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여타 국제문서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단일 또는 복수의 최저 고용연령의 규정

나. 고용시간 및 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의 마련

다. 본 조의 효과적인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처벌 또는 기타 제재수단의 규정

제33조 당사국은 관련 국제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사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이러한 물질의 불법적 생산과 거래에 아동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간, 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아동을 여하한 위법한 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나. 아동을 매음이나 기타 위법한 성적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다. 아동을 외설스러운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제35조 당사국은 여하한 목적과 형태의 아동의 약취유인이나 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간, 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 당사국은 아동복지의 어떠한 측면에 대하여라도 해가 되는 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37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하는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나. 어떠한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아동의 체포, 억류 또는 구금은 법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또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인도주의와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입각하여 그리고 그들의 연령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처우되어야 한다. 특히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합치한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과 방문을 통하여 자기 가족과 접촉을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

라.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법률적 및 기타 적절한 구조에 신속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짐은 물론 법원이나 기타 권한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앞에서 자신에 대한 자유박탈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신속한 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38조 1. 당사국은, 아동에게 관련이 있는 무력분쟁에 있어서, 당사국에 적용가능한 국제인도법의 규칙을 존중하고 동 존중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의 징병을 삼가하여야 한다. 15세에 달하였으나 18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징병하는 경우, 당사국은 최연장자에게 우선순위를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무력분쟁에 있어서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인도법상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무력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의 보호 및 배려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9조 당사국은 여하한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여하한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희생이 된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0조 1. 당사국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연령 그리고 아동의 사회복귀 및 사회에서의 건설적인 역할 담당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점을 고려하고, 인권과 타인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아동의 존중심을 강화시키며, 존엄과 가치에 대한 아동의 자각을 촉진시키는데 부합하도록 처우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국제문서의 관련규정을 고려하며,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모든 아동은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하여 형사피의자가 되거나 형사기소되거나 유죄로 인정받지 아니한다.

나.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은 최소한 다음사항을 보장받는다.

(1)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받는다.

- (2) 피의사실을 신속하게 그리고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 부모나 법정 후견인을 통하여 통지받으며, 변론의 준비 및 제출시 법률적 또는 기타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
 - (3) 권한있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의하여 법률적 또는 기타 적당한 지원하에 법률에 따른 공정한 심리를 받아 지체없이 사건이 판결되어야 하며,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특히 그의 연령이나 주변환경, 부모 또는 법정후견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4)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받도록 하며, 대등한 조건하에 자신을 위한 증인의 출석과 신문을 확보한다.
 - (5) 형법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결정 및 그에 따라 부과된 여하한 조치는 법률에 따라 권한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한다.
 - (6) 아동이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우, 무료로 통역원의 지원을 받는다.
 - (7)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사생활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아동에게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법률, 절차, 기관 및 기구의 설립을 촉진하도록 노력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 가. 형법위반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 연령의 설정
 - 나. 적절하고 바람직스러운 경우, 인권과 법적 보장이 완전히 존중된다는 조건하에 이러한 아동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루기 위한 조치
4. 아동이 그들의 복지에 적절하고 그들의 여건 및 범행에 비례하여 취급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 지도 및 감독명령, 상담, 보호관찰, 보호양육, 교육과 직업훈련계획 및 제도적 보호에 대한 여타 대체방안 등 여러가지 처분이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 제41조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권리의 실현에 보다 공헌할 수 있는 여하한 규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가. 당사국의 법 또는,
 - 나.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 국제법

제 2 부

제42조 당사국은 이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

제43조 1. 이 협약상의 의무이행을 달성함에 있어서 당사국이 이룩한 진전상황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하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위원회를 설립한다.

2. 위원회는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 능력이 인

정된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형평한 지리적 배분과 주요 법체계를 고려하여 당사국의 국민 중에서 선출되며, 개인적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에 의하여 지명된 자의 명단 중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각 당사국은 자국민 중에서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최초의 선거는 이 협약 발효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되며, 그 이후는 매2년마다 실시된다. 각 선거일의 최소 4월 이전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당사국에 대하여 2월 이내에 후보자 지명을 제출하라는 서한을 발송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지명한 당사국의 표시와 함께 알파벳 순으로 지명된 후보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이를 이 협약의 당사국에서 제시하여야 한다.

5. 선거는 국제연합 본부에서 사무총장에 의하여 소집된 당사국 회의에서 실시된다. 이 회의는 당사국의 3분의 2를 의사정족수로 하고, 출석하고 투표한 당사국 대표의 최대다수표 및 절대다수표를 획득하는 자가 위원으로 선출된다.

6.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위원은 재지명된 경우에 재선될 수 있다.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5인의 임기는 2년후에 종료된다. 이들 5인 위원의 명단은 최초선거 후 즉시 동 회의의 의장에 의하여 추천으로 선정된다.

7. 위원회 위원이 사망, 사퇴 또는 본인이 여하한 이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경우, 그 위원을 지명한 당사국은 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자국민 중에서 잔여 임기를 수행할 다른 전문가를 임명한다.

8. 위원회는 자체의 절차규정을 제정한다.

9. 위원회는 2년 임기의 임원을 선출한다.

10. 위원회의 회의는 통상 국제연합 본부나 위원회가 결정하는 여타의 편리한 장소에서 개최된다. 위원회는 통상 매년 회의를 한다. 위원회의 회의 기간은, 필요한 경우, 총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이 협약 당사국 회의에 의하여 결정되고 재검토된다.

1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설립된 위원회의 효과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과 편의를 제공한다.

12. 이 협약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은 총회의 승인을 얻고, 총회가 결정하는 기간과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의 재원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제44조 1.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들이 채택한 조치와 동 권리의 향유와 관련하여 이룩한 진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가. 관계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한 후 2년 이내

나. 그후 매 5년마다

2. 본 조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는 이 협약상 의무의 이행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가 있을 경우 이를 적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또한 관계국에서의 협약이행에 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위원회에 포괄적인 최초의 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본조 제1항 나호에 따

라서 제출하는 후속보고서에 이미 제출된 기초적 정보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4. 위원회는 당사국으로부터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매2년마다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6. 당사국은 자국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자국 내 일반에게 널리 활용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 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가. 전문기구, 국제연합 아동기금 및 국제연합의 여타 기관은 이 협약 중 그들의 권한 범위내에 속하는 규정의 이행에 관한 논의에 대표를 파견할 권리를 갖는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국제연합 아동기금 및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여타의 권한 있는 기구에 대하여 각 기구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있어서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국제연합 아동기금 및 국제연합의 여타 기관에게 그들의 활동범위에 속하는 분야에서의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적 자문이나 지원을 요청하거나 그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당사국의 모든 보고서를 그러한 요청이나 지적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면 동 의견이나 제안과 함께, 전문기구, 국제연합 아동기금 및 여타 권한있는 기구에 전달하여야 한다.

다. 위원회는 사무총장이 위원회를 대신하여 아동권리와 관련이 있는 특정문제를 조사하도록 요청할 것을 총회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라. 위원회는 이 협약 제44조와 제45조에 따라 접수한 정보에 기초하여 제안과 일반적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과 일반적 권고는 당사국의 논평이 있으면 그 논평과 함께 모든 당사국에 전달되고 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 3 부

제46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47조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48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49조 1. 이 협약은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이후에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제50조 1. 모든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동 제출에 기하여 사무총장은,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붙이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대한 찬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당사국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보일로부터 4월 이내에 당사국 중 최소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 주관하에 동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동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된다.

2. 본 조 제1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승인되고, 당사국의 3분의 2의 다수가 수락하는 때에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한 때에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며, 여타의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협약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의하여 구속된다.

제51조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비준 또는 가입시 각국이 행한 유보문을 접수하고 모든 국가에게 이를 배포하여야 한다.

2. 이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유보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발송된 통고를 통하여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국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고는 사무총장에게 접수된 날로부터 발효한다.

제52조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를 통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후에 발효한다.

제53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수탁자로 지명된다.

제54조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히 정본인 이 협약의 원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 전권대표들은 각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